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총5권중 제3권

2008. 12.

일 러 두 기

1. 이 지침서는 총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변경사항 및 농림수산사업 대출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을, 제5권에서는 균특회계사업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업기술센터, 농협·수협·산림조합, 한국농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2009년도 사업비는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나 기금사업의 계획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및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 제2권 : 식량·원예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수산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faff.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별적으로 지침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 구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문의

- 문의기관명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경영지원실
- 연락처 : 전화 031-460-8816~7, fax 031-460-8819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2009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주요골자	4
3. 주요 변경사항	8
4. 해설	9
제1장 총칙	9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13
제3장 전문가위원회	14
제4장 농림수산사업	15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23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4
제7장 보칙	27
II.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29
III.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해설	81
1. 배경	83
2. 주요골자	86
3. 주요 변경사항	90
4. 해설	95
IV.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115
V. 농림수산사업별 주요변경사항	145
VI. 기타 주요사항	261
1. 농림수산사업자금 대출안내	263

제2권 식량·원예분야

【식량분야】

I. 생산기반 확충	269
1. 농지은행사업	271
① 영농규모화사업	272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98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08
3. 중규모 용수개발사업	325
4. 농업용수 수질조사개선사업	348
5. 개인육종가 활성화 지원사업	359
6.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370
II. 농업기계화	385
7.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387
8. 농기계 임대사업	409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422
III. 생산 및 유통개선	433
10.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435
①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	435
②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454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464
11.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477
12.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494

【원예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501
13.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03

14.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517
15. 시군유통회사설립·운영지원	530
16. 농식품 소비지·산지상생협력	540
17.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	558
① 산지유통활성화사업	560
② 원예작물수급안정사업	569
③ 수매지원(저장용·산지가공)사업	580
1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590
19. 인삼계열화사업	600
20.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609
21. 농산물 자조금지원	622
22. 소비지유통활성화	633
23.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651
24.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662
25.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676
26.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688
27.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692
28.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사업	696
29. 농식품시설현대화	702
30. 생산자용·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지원사업	710
31. 우수농산물관리(GAP)제도 운영	714
32. 천일염산업육성지원	735
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설치사업	735
② 염전생산시설개선사업	746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753
33.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755
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771
②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784

③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799
④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821
34. 과원영농규모화사업	835
35. 과수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853
36. 과수원정비지원사업	862

제3권 농촌개발 및 임업·산촌분야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883
37.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사업	885
38.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906
39.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921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929
41. 농업종합자금지원	957
II. 기술개발	981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983
43. 농림기술개발	994
44. 신기술보급사업	1002
III. 인력육성	1011
45.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1013
①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1013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1027
③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1043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55
47.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1079
48.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1090

IV. 소득보전	1107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1109
50.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19
5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137
52.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154
53. 농업인 재해공제사업	1174
54.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1180
5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1195
V. 소득원개발	1207
5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1209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1209
② 관광농원	1224
③ 농어촌민박사업	1240
57. 한계농지정비사업	1249
58.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1260
59. 농축산경영자금지원	1271
VI. 생활환경개선	1279
6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281
61.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1298
【임업·산촌분야】	
I. 경영기반 확충	1315
62. 산림경영계획	1317
II. 생산 및 유통개선	1327
63.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1329
64. 산림소득증대사업	1348
65. 임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1369

66. 산림바이오매스사업	1414
67. 별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	1420
68. 사립수목원지원사업	1429
6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1435

Ⅲ. 산림자원 조성 1447

70. 조림·숲가꾸기	1449
-------------------	------

제4권 축산·수산분야

【축산분야】

I. 사육기반확충 1465

71.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467
①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및 유통비지원	1468
② 조사료용 기계·장비지원	1470
③ 볏짚 등 부존자원활용지원	1473
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지원	1474
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지원	1476
⑥ 조사료가공 시설지원	1478
72. 사료산업종합지원	1495
7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504
74. 마필산업육성	1529
75. 송아지생산안정사업	1538
76.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1546
77. 양봉산업육성사업	1561
78. 낙농체험 관광사업	1565

Ⅱ. 생산 및 유통개선 1577

79. 축산물도축 가공업체지원사업	1579
80. 브랜드육 타운조성	1611

81.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	1617
82.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626
83.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1643
① 가축계열화사업	1643
② 브랜드 경영체지원사업	1657
③ 축산물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1680
84.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1694
85. 축산공제사업	1705
86.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	1713

【수산분야】

I. 생산기반 확충	1729
87.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1731
88. 수산자원 보호구역관리	1741
89. 소규모바다목장사업	1749
II. 생산 및 유통개선	1755
90. 수산물소비촉진사업	1757
91. 환경친화형 양어용 배합사료지원사업	1766
92.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공급	1775
93. 고밀도부표보급지원사업	1781
94. 양식장HACCP적용지원	1789
95.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1803
III. 기계화	1811
9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	1813
97.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1822
98. 양식장비 임대사업	1832
99.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1845

IV. 인력육성	1857
100.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1859
101.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1887
V. 소득보전	1911
10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	1913
103.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924
104.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1940
105. 수산인 안전공제지원사업	1949

제5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배수개선사업	1957
107. 방조제 개보수사업	1968
10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978
109. 소규모용수개발사업	1987
1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006
111. 농업생산기반조성	2023
112.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	2038
11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2053
114.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2070
115.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82
116.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2093
117. 전원마을조성사업	2110
118.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127
119.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2139
1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154
121. 농공단지조성사업	2170
122. 농촌활력증진사업	2182
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2182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2187
③ 특화품목육성사업	2199
123.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사업	2209
124. 산촌생태마을 조성	2221
12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2231
126. 수산식품 거점단지조성사업	2239
127. 양식어장정화사업	2245
12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2253
129. 어항기반시설조성	2261
130. 어촌·어항 관광조성	2273

【농촌개발분야】

I.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과장 오병석 사무관 윤승우	02-500-1951 02-500-1955

I. 사업개요

1. 목 적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을 7%(저농약제외)로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친환경농산물생산비 중(% , 주지표)	11.0	6.2	9.7	10.5(p)	2010.1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전체 농산물 전체 농산물 생 산량 × 100
▪ 사업목표량달성(개소)	42	78	59	69	2010.1	사업조성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58,300	20,000	30,000	22,000	278,500
보 조	98,820	8,000	12,000	8,800	111,400
용 자	29,500	-	-	-	-
지방비	75,920	8,000	12,000	8,800	111,400
자부담	54,060	4,000	6,000	4,400	55,7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
- 사업대상지구 평가(붙임6) 점수가 60점 이상인 지역

3. 지원대상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이라도 지역단위로 친환경 농업 실천이 가능한 지역
- '95~'08 기간중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탁월하고 지역여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지역도 선정 가능
- 1 읍·면·동에 가급적 1개 지구가 조성되도록 추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가.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목재파쇄기(톱밥제조기 포함), 왕겨 자원화 시설 및 장비 등 .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제조 시설·장비 ○토양개량제 및 퇴비 살포장비, 심토파쇄기 등 토양관리시설·장비 ○INM·IPM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타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범위는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사용이 가능한 자재(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1)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구 분	세 부 사 업 메 뉴	비 고
나.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쌀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친환경 유기 농축산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조사료 생산시설·장비 ○기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다.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산지직판장 등 판매시설은 제외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친환경농업 교육시설·장비	○교육장, 교육용 기자재(PC 등) 등 친환경농업 기술 교육·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시설·장비 -이용자 수요가 다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되 는 지구에 한함 -마을회관 신축, 휴·폐교 임대료는 제외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마.기 타	○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사업시행요령>

- ① 사업자는 지역여건, 영농규모, 작목 등을 감안하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역실정과 면적, 참여 농가수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②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유기~무농약)에 적합하게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투자하여야 함.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시설·장비가 지원조직의 면적, 농가수, 품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사업계획을 지도
- ④ 토양개량과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 농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축분퇴비·액비화, 푸른들 가꾸기를 비롯한 조사료 생산 등
- ⑤ 앞 4.항 지원대상 사업메뉴 중 가~다항목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되, 전체 사업비의 80%이상을 투자하며 투자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 (i)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함
 - (ii) 사업메뉴 나.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와 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

설·장비는 사업메뉴 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투자

(iii) 사업메뉴 라. 친환경농업 기술지도·교육 관련 시설·장비는 시·군 등 기존 교육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사업메뉴 가~다항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투자

(iv) 나~다항목 중 1개 항목이 전체 사업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나, 가항 항목과 나항목을 갖추고 유기·무농약농산물을 50ha이상 인증 받아 생산·유통하는 사업지구는 다항목의 시설·장비를 70%까지 지원가능(대상지구의 인근지역에 기 설치된 미생물배양시설 등을 공동활용 약정한 경우에는 갖추어진 것으로 간주)

⑥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포함)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가능

- 유기축산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
- 유기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지구 또는 농가는 시설 설치·관리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도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받을 수 있음

⑦ 퇴비·액비화 시설은 지구내 경지면적을 고려하여 필요량을 산출하고,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함

- 액비화시설 설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퇴비, 액비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음

⑧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사업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구입비
-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및 트럭 등 일반 농기계
- 음식점, 숙박시설, 가공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유기질 비료 등 소모성 자재, 1회성 자재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00~1,000백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하우스, 축사 등 개별 생산시설·장비는 총 사업비의 20% 범위 이내에서만 투자가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개별시설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이 가능한 조직에 대해 사업을 안내하고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전년도 1. 31일한)
- 시·군은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 후 평가하여 2월 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의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도 자체평가 후 사업지구별 순위를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3. 31일까지 제출

유관기관 협조사항

- 시·군 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 지역농협,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사업신청지구의 사업계획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붙임 5) 작성에 협조

사업신청자

- 신청조직은 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관련 “별지1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별지3호서식」,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전년도 1. 31까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에 따라 신청조직의 지자체 적정평가 여부를 검토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조직에 대하여 조직원과 면적에 대비한 적정 사업여부를 검토(전년도 9월)
- 시·도의 경지면적,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사업비의 이월·불용액 발생여부, 이행보고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을 가내시(전년도 10월)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도의 사업지구 선정 원칙을 수립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를 가내시(10월)
 - 시·군별 지역특성과 기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 개소수를 고려
- 친환경농업육성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 행정·지도기관 및 농관원, 농협관계자 등 관계전문가
 - 임무 : 사업자 선정 심의 세부사업계획 심사·확정, 사후관리 지도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가내시된 예산액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 작성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최종확정하고 시·도에 통보(12월)

시·도/시·군

- 농림수산식품부의 확정된 예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1월)
- 시장·군수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시 시설별 관리와 이용자를 명시하고 지구 내 참여농가의 합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 농업환경 기초조사
 - 시장·군수(지도기관)는 사업 실시전 아래 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농업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환경변동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토양기초조사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 농업용수 수질검사 : 도 농업기술원
 - 기타사항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거나 고난도 시설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 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예냉시설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설계도를 이용(한국식품연구원 등)

○ 공사 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공사 또는 유자격 감리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규격이 명확한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은 감리 생략가능
- 시공업체가 공사 감리를 할 수 없음.

○ 준공 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 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장·군수는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자는 사업내용 중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준공검사 신청

- “지구(지역)” 개념에 충실하기 위하여 지구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시설·장비의 설치는 지구(사업지)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예산소요 시기를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받아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

시·도/시·군

- 시·도에서는 시·군 사업비 지출시기를 파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
- 사업비 검정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짐.
 -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즉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검정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 (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지구 대표자 및 시공업체로부터 거래할 은행계좌를 신고받아 정산시 통장거래 내용과 입금표를 대조하여 정산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산물인증 실적·농가·면적 등의 변동실태를 “친환경 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 서식)에 따라 매년도 2. 28일까지 제출받아 사업 목적 달성을 점검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자료로 활용
 -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 인 10년 동안 관리
- 시·도별 연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지원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현지 점검
 - 전담책임자 지정,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록·유지 등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반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 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지도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 설비	준공일	10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기계 및 장비 (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	구입일 또는 준공일	5년간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상기 중요재산 관리는 동 사업시행지침 이전에 추진한 사업에도 소급적용함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사업대표자는 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지구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 약관”을 만들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구조성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대상에 포함,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도록 추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분석하여 친환경 농업 이행보고서를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지구를 친환경농업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전파시켜 나가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친환경농업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현지확인을 거쳐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단체에서 사업추진협의회 및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참여토록 적극 조치하여야 함.

<행정사항>

- 반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별지 제1호 서식)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매반기 익월 5일까지)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친환경농업 이행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31.까지) (2.15.까지) (2.28.까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익년 3.15.까지) (익년 3.30.까지)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농업환경변동실태(토양, 수질 등 성분분석)를 조사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직원을 기술지도 전담자로 지정하여 농약안전사용, 작물별 시비추천량 준수,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개선, 종합농토배양 및 농산부산물 이용방법 등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추진년도부터 3년간 지구내 생산물(벼 등 대표작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수확시기에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출장소장)은 사업참여 농가에서 재배조건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야 함

참여농가

- 참여농가는 사업계획서의 지구내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계획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참여농가는 친환경농산물인증기준(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3)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평가지표 측정>

- 지구별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평가
 - 평가지표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평가일정 : 매년 1월중
 - 평가방법 :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 비중
 - 평가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활용

<만족도 조사>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농업인의 의견 수렴 정도, 지역실정 반영여부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농업인이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농업인 300명 내외
 - 조사방법 : 시·군에서 조사
 - 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별지 2호서식)의 집계결과에 따라 성과분석(상반기)
 - 시·도별 사업지구의 인증면적 등을 관리하여 예산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지구조성사업 추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원
- 친환경농업대상 “우수지구” 부문에 추천하여 포상
-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사례에 소개하여 홍보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예산배정시 감액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함.(2009. 1. 31)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현장확인 포함)한 다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 사업계획서 검토시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 생산계획 등
 - 아울러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검토하고 사업대상지구평가표(붙임⑥)를 작성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 평가표와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붙임⑤)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2009. 2월말한)하고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2009. 3. 31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부터 접수된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서와 평가순위표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 다음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신청
-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시·도별 사업심사결과에 따라 예산통지(안) 범위내에서 대상사업지구 선정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하는 공통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3호 서식)
 -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지자체 포함)현황 (붙임①)
 - 사업참여농가 영농상황 (붙임②)
 -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붙임③)
 - 부지사용 승인서 (붙임④)
 - 사업대상지구 참여농경지 지적도(지번으로 집단화 여부를 판별이 가능한 것)

(별지 제1호서식)

(상·하반기)사업 추진상황 보고

□ 지구명 : (주소 : 전화 :)

조직명	대표자	사업 규모	참여 농가	주작목	자금집행상황		
					예산	집행	진도
		ha	명		천원		%

□ 세부사업계획 내역

구분	사업계획 및 내용	추진실적	진도 (%)	향후추진계획 (일정별)
합	계			
농업환경오염 경감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소 계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소 계			
기술지도 및 교육사업	소 계			
기타사업	소 계			

□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사업 시행 전		사업 시행 후 현재	
	농가수	면적(ha)	농가수	면적(ha)
유기 인증				
무농약인증				
저농약인증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농업이행보고서

1. 사업추진 현황

지구명(소재지)	(시·도 시·군 읍·면 리·동)		
사업추진년도	사업추진년도 참여 농가수		
조직명	주요 재배작물(가축)		
대표자 성명	대표자 연락처(전화)		
총 사업비	백만원[국고(융자포함) , 지방비 , 자부담]		
사업추진내역	* 시설·장비명 및 사업량 모두 기재 (예시) 미생물배양시설 1식, 미생물배양기 2대, 퇴비사 300평/2동, 집하장 50평/1동, 퇴비살포기 1대		

2. 친환경농업이행 내역

구분	참여농가 변동주이		적용농법	주요 관매처	호 당 평균소득	친환경인증	
	농가	경지 면적				농가	면적
단위	호	ha			백만원	호	ha
사업추진년도			우렁이				계: (유기 , 무농약 , 저농약)
사업후 1년차			기계제초				
2년차(년)			오리				
3년차(년)							
4년차(년)							
5년차(년)							
6년차(년)							
7년차(년)							
8년차(년)							
9년차(년)							
10년차(년)							

- * 주) 1. 적용농법은 지구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초방법을 기재(우렁이, 쌀겨 등)
 2. 참여농가, 축산분뇨, 친환경농산물인증(전환기유기는 유기에 포함) 란은 해당년도 말 기준 증감된 농가를 기준으로 작성
 3. 친환경농업시범마을사업은 사업추진 1년차를 사업추진 년도로 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직 명 :

- 설립연도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

합계 :

· 품목별 인증면적 :

합계 :

- 사무실 소재지 :

- 전화 :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 주요경력 :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생산품목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라. 친환경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소유·수혜·이용자
1.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 ○ 소 계		
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4. 친환경농업기술 지도·교육 관련시설 및 장비	○ ○ 소 계		
5.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 마. 기술지도 및 교육장 활용계획
- 바.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 사. 투자 예상효과
- 아.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시·군, 시·도에서 작성)
- ⑥ 사업대상지구 평가보고표 (시·군/시·도에서 작성)
-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집계표 (시·도에서 작성)

(붙임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 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소 유· 수혜자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부담	

(붙임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세) (H·P, ㉠)	지번	경작 규모	친 환 경 인증현황	작 목 입 식 현 황				판매방식
				벼	※재배	품목	기재-	
홍길동(○○ 세) (010-0500-1 811)	○○리 ○ ○	ha	※없음,유 기,,무농 약,저농 약으로 구 분 기재					※ 직 거 래, 도 매 시 장, 인 터 넷, 등
계 (인증종류별 계 및 총계)								

* 축산은 참여농가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축사면적(평)을 기재

(붙임 ③)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ha
- 사업대표자 :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붙임 ④)

부지사용 승인서

지 번 :

지 적 :

상기 토지 m² 중 m²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
시설·장비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주 소 :

주민번호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년 월 일

○ ○ 시장·군 수 귀하

(붙임 ⑤)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소 재 지 :
- 경지면적 :
- 대표농가 : (참여농가 : 호)
- 투자계획 :

2. 검토의견

- * 시장·군수는 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 각기관·단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아 종합 검토의견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 지역농업여건, 참여농업인의 기술정도, 친환경농업실천정도 및 사업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 표시인증 참여상황, 친환경농산물 생산여건 및 사업성
 - 농협 : 유통·판매사업 수행능력 및 시설·장비 보유상황, 참여농가 채무상황 등
 -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 축산분뇨퇴비·액비화계획, 유기축산물(전환기유기축산물 포함)생산계획 등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유관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검토의견서 작성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

직인

(붙임 ⑥)

사업대상지구평가표

구 분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비 고	배점
①지역농업여건 및 사업참여상황 등 (40점)	㉔사업예정지 위치 (10점)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지역 : 10 ○일반지역 : 5		
	㉕참여농가수 및 농경지 면적(10점)	○50호이상, 50ha이상 : 10 ○30호이상, 30ha이상 : 5 ○10호이상, 10ha이상 : 1		
	㉖여성농업인 참여비율 (5점)	○30%이상 5점 ○15%이상 3점 ○5%이상 1점	○여성농업인 우대	
	㉗사업참여 형태 (5점)	○법인화된 조직 : 5 ○작목반 등 영농조직 : 3 ○개별농가(비조직화) : 1		
	㉘사업참여 농경지 집단화 정도(10점)	○90%이상 : 10 ○70%이상 : 5 ○70%이하 : 0	○벼는 인접마을, 과수는 인접읍면기준 (지적도 참조)	
②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5점)	㉔세부메뉴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10점) ○친환경 인증기준(유기~무농약)을 고려한 투자 계획 수립여부	○우수:10 ○보통:7 ○미흡:3	○친환경농업실천능력을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	
	㉕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 이용률, 퇴비·액비화 사업 계획의 적정성(10점)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실천계획 ○축산분뇨 발생량과 처리량을 고려한 적정규모 설치 여부	○적 정 : 10 ○미 흡 : 5 ○미설치 : 0	○토양개량과 화학비료 감축 위한 자연순환농업, 축산분뇨자원화 시설의 적정규모 설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㉖농약·화학비료 감감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적정성(5점) ○미생물 배양시설,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의 적정여부	○우수:5 ○보통:3 ○미흡:0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의 적정규모평가	
③사업 수행능력 (35점)	㉔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계획의 적정성(25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보(직거래 등) 여부(5점) ○참여농경지의 무농약, 유기재배농산물 인증면적 비율(20점)	○우수:5,보통:3,미흡:0 ○30%이상 : 20 ○20%이상 : 10 ○10%이상 : 5 ○10%미만 : 0	○자체브랜드 여부등 ○유기, 무농약 인증면적을 합산하여 계산	
	㉕사업수행관련사항(5점) ○사업장 부지 확보 여부(부지사 용 승락 포함)	○확보:5, 미확보:0		
	㉖조직리더 열의도(5점) ○조직리더의 친환경농업 관련 활동실적	○높음:5, 보통:3, 낮음:0	○언론보도, 포상, 강연 활동, 직책 등	
④가 점(10)	○신청 시·군이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국고지원받은 실적 여부	○전혀없음 : 10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없음 : 5	○중소농고품질, 지구조성, 마을조성사업 지원여부	
⑤감 점(-10)	○최근 2년간 사업부진지구 발생시·군 ○동일 읍·면·동에 지원사업지구가 있는 곳	○1회발생 : 10점 ○5년내 지원실적 : 5점 ○10년내 지원실적 : 3점	○민원, 조직내 불화 등으로 변경·이월된곳 ○해당지구만 감점 *감점은 최대 10점	
합 계				

(붙임 ⑦)

사업대상지구 평가 집계표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용 >

순위	지구명	평 가 점 수					비고	
		계 (100점)	①지역영농 여건 등 (40)	②사업계획 수립적정성 (25)	③사업수 행능력 (35)	④가 점 (10)		⑤감 점 (-1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과장 오병석 사무관 윤승우	02-500-1951 02-500-1955

I. 사업개요

1. 목 적

- 시설원예작물의 합성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 충족,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노동력절감 및 농약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천적을 활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농가에 천적구입비 지원을 통해 2010년까지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을 5%로 높임
 - 사업대상 시설원예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사업목표량 달성도(%)	5.0	2.0	2.0	4.0	2010.2	천적활용 농산물 생산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	2009년이후
합 계	9,490	7,300	14,600	18,250	104,483
보 조	4,745	3,650	4,380	3,650	33,170
지방비	2,847	2,190	4,380	5,475	31,345
자부담	1,898	1,460	5,840	9,125	39,968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딸기, 토마토 등 지원대상작물을 시설온실에서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천적활용 해충방제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제어를 할 수 있는 3,000m² 이상의 시설에서 지원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다만, 집단화된 원예단지에 속해 있는 다수농가가 천적활용 해충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00m² 미만의 시설재배농가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피망),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등 9작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물의 해충방제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증식·보급되는 천적 구입비 일부 지원
 - 농가에서 천적을 사용한 만큼 시·군·구에서 천적업체에 사업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국고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작물별 지원한도액은 ha당 딸기 6,000천원, 토마토 7,000천원, 파프리카 13,000천원, 고추 7,300천원, 오이 7,200천원, 멜론 6,500천원, 포도 5,100천원, 수박 6,100천원, 참외 6,700천원임
 - * 국고보조금은 상기 지원한도액의 20%이내에서 실비 지원
- 농업인의 천적활용 해충방제기술 부족과 방제방법 전환 초기의 천적사용 비용이 농약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방제초기에만 한시적(3년)으로 지원하고 이후 농업인의 자체 방제 유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 수요를 감안한 시·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생물적 병해충방제(천적)사업 수요조사(전년도 10월)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 계상 신청(전년도 4월)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전년도 10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서를 받은 후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자를 평가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 후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신청서 사본과 함께 시·도에 제출
- * 사업신청자 평가시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를 거쳐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결정
 - ① 수출원예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지역(유기·무농약) ③ 원예재배단지로 규모화된 지역 ④ 개별 원예수출 농가 ⑤ 개별 원예·과수재배 농가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사업신청서 사본과 사업신청자 평가집계표를 제출받아 평가의 적정 여부 및 신청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천적방제사업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예산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시·도

별 국고보조금 예산(안) 통지(전년도 11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각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통지한 예산(안)을 기초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배정방법과 우선배정 내역을 참고하여 시·군·구별 예산(안) 통지
- 각 시·군·구는 통지받은 보조금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1년 단위로 선정하되 지원대상자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 지원받은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한 경우 자발적 방제확산을 위해 추가 방제면적에 대해 익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 선정
- *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지원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방제하였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 외에 자체 재원으로 천적방제를 추진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익년도 시·도별 예산 배정시 해당 면적에 대하여 예산 우선 배정 계획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확정통지(1월)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적공급업체로부터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받아 대상작목의 방제면적과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대상자별 보조금액을 확정
-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별 예산액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 교체 선정 등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농가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천적공급업체와 천적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천적공급업체가 동 계약서 사본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시·군·구별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배정

시·도(지자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농가별 재배기간을 감안 분기별 자금 소요액을 산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도에 자금배정 요구서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금배정 요구액을 집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사업비는 천적공급업체의 공급증명서와 농가의 확인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의 별지 제6-1호서식의 천적공급 및 컨설팅관리대장을 확인한 후 천적공급업체에 직접 지급(농가에 사전 통지)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서류(무통장 입금확인서 등)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사업비는 작물의 한 작기 단위로 산출하여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비 산출 지원
 - 작물의 재배기간이 사업전년도에 증식하여 사업년도 중에 끝나는 경우에도 그 한 작기를 1년으로 간주하여 사업비 지원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실시 후 사업비잔액을 집행

하고 집행실적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천적방제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2회이상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가나 천적공급업체가 천적방제사업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사업자 변경 또는 공급업체 변경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농가 또는 공급업체에 관련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사업대상 시설원에 재배면적 중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면적 비율로 측정
 - 조사는 익년 2월까지
-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및 천적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시·도별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실적을 제출받아 시·도별 평가실시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도 미집행 사유를 조사하고 자금집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환 류》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추진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수요 조사시 자체추진 사업실적 자료를 받아 자체추진 실적에 상응하는 사업비 추가 지원

○ 전년도 사업추진시 발생한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시 미집행액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페널티 부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의 생물적병해충방제(천적)사업 계획 제출('09.4월)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사업대상자 평가표

<시·군·구 작성 → 시·도 제출용>

신청농가 또는 법인명 : 0 0 0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점수
계		
① 온습도 등 환경제어 가능성	양호(10), 보통(8), 미흡(5)	
② 방제대상 시설현황	유리온실(10), 비닐온실(8), 비가림시설 등(6)	
③ 방제신청면적	10,000㎡이상(10), 6,000㎡이상(8), 3,000㎡이상(6)	
④ 사업지역의 단지화, 규모화 여부	수출단지(10), 원예단지(8), 개별수출농가(6), 개별원예농가(4)	
⑤ 친환경농산물인증여부	유기(10), 무농약(8), 저농약·품질인증·관행(6)	
⑥ 기천적방제실적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상(3) 10,000㎡이상(5), 6,000㎡이상(4), 3,000㎡이상(3)	
⑦ 천적교육 이수실적	3회이상(10), 2회(8), 1회(6)	
⑧ 판매처	수출 (10), 내수 판매 (8)	
⑨ 천적방제기술의 수용능력과 실천의지	양호 (20), 보통 (16), 미흡 (10)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청자평가집계표

<시·군·구 → 시·도 제출용>

순위	신청인	평가점수	재배작물	재배면적	천적방제신청면적 (m ²)
1					
2					
3					
4					
.					
.					
.					
.					

[별지 제4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예산 신청서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제출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호, ha, 천원)

	구분	계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멜론	포도	수박	참외
시·도	농가수										
	면적										
	금액										
시군명	농가수										
	면적										
	금액										
“											

2. '09년 지자체 자체재원 천적방제 추진실적

구분	사업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계	딸기 ○○ha 토마토 ○○ha 고추 ○○ha	○○○천원 ○○○천원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군비○○○천원
시·군명	딸기 ○○ha 토마토 ○○ha	○○○천원 ○○○천원	군비○○○천원 군비○○○천원, 자부담○○○천원
시·군명	고추 ○○ha	○○○천원	도비○○○천원, 군비○○○천원

[별지 제5호 서식]

천적방제사업자 선정통지서

<시·군 → 사업대상자 통보용 >

수신 : ○ ○ ○ 귀하

년 월 일

발신 : ○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농가	성명	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e-메일		홈페이지	
재배작목		품종	
재배기간	정식시기 :		수확종료시기 :
재배 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지원면적	총 m ² (총 동수 : 동)
방제지원 시설면적	동별 : 1동 m ² , 2동 m ² , 3동 m ² , 4동 m ² , 5동 m ² , 6동 m ²		
방제지원액	총 지원액 : 원 (보조금 : 원, 농가부담금 : 원)		
시설유형	<input type="checkbox"/> 비닐하우스 <input type="checkbox"/> 유리온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증여부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 <input type="checkbox"/> 관행		
재배유형	<input type="checkbox"/> 토경 <input type="checkbox"/> 양액 <input type="checkbox"/> 수경 <input type="checkbox"/> 암면 <input type="checkbox"/> 베드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문제해충	<input type="checkbox"/> 진딧물 <input type="checkbox"/> 응애 <input type="checkbox"/> 온실가루이 <input type="checkbox"/> 총채벌레 <input type="checkbox"/> 앞굴파리 <input type="checkbox"/> 나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		
기존방제방식	<input type="checkbox"/> 사용농약 : <input type="checkbox"/> 천적사용 : 기간 년, 작목 :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사용자재 :		
천적교육	○ 이수실적 :		
판매처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백화점·대형할인점 <input type="checkbox"/> 전문매장 <input type="checkbox"/>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농협 <input type="checkbox"/> 직거래 <input type="checkbox"/> 생협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귀하를 2009년도 천적방제 사업자로 선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급업체가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천적공급계약 및 의무이행신고서

방제사업자 자 (“갑”)	농가 성명(법인일 경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회사 (“을”)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 :																																										
천적공급 계약내용	재배 작물명 :		품종명 :																																								
	총 재배면적(m ²) :		사업대상(천적방제) 면적(m ²) :																																								
	시설유형(비닐, 유리 등) :		재배유형(토경, 양액, 수경 등) :																																								
	재배기간(정식시기~수확종료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사업비 : 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액 이상)																																										
	주요 방제대상 해충 : <input type="checkbox"/> 진딧물 <input type="checkbox"/> 응애 <input type="checkbox"/> 온실가루이 <input type="checkbox"/> 총채벌레 <input type="checkbox"/> 잎굴파리 <input type="checkbox"/> 나방 <input type="checkbox"/> 기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15%;">천적명</th> <th style="width: 15%;">예상공급수량</th> <th style="width: 15%;">공급단가(원)</th> <th style="width: 25%;">총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천적 공급 계획</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 </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천적 공급 계획	계	-	-																													
		천적명	예상공급수량	공급단가(원)	총액(원)																																						
	천적 공급 계획	계	-	-																																							
친환경농산물 인증여부 :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전환기유기 <input type="checkbox"/> 무농약 <input type="checkbox"/> 저농약 <input type="checkbox"/> 관행 천적사용 경험 작물 및 기간 : 작물 년, 작물 년 천적교육 이수유무 및 횟수 : <input type="checkbox"/> 이수 <input type="checkbox"/> 미이수, 이수횟수 회 판매처 : <input type="checkbox"/> 수출 <input type="checkbox"/> 백화점·대형할인점 <input type="checkbox"/> 전문매장 <input type="checkbox"/> 도매시장 <input type="checkbox"/> 농협 <input type="checkbox"/> 직거래 <input type="checkbox"/> 생협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갑”과 “을”간에 천적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대금지급의무를, “을”은 천적공급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갑”과 “을”간에 천적방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구의 사업자 선정취소, 보조금 회수조치 등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갑” : 방제사업자(농가, 영농조합 등) ○ ○ ○ (인)
 “을” : 천적회사 대표 ○ ○ ○ (인)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6-1호서식]

천적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 농가명 : (전화 :)

○ 주소 :

○ 작물명 :

○ 천적지원면적 : m²(재배면적 : m²)

○ 재배시기 : 년 월 ~ 년 월

○ 천적업체 명 :

□ 천적사업 계획 및 천적 공급대장

○ 천적업체의 예찰결과 천적활용 해충방제계획

-

○ 천적 공급 및 컨설팅 관리대장

천적공급 일자	천적명	공급량	공급단가 (원)	발생 해충	컨설팅 내용	확 인(서명)		
						공급자	농업인	지자체

- ※ 1. 현장 점검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농가포장에 비치하여 관리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시·군에 제출
 2. 사업기간중 지자체 담당자 2회 이상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컨설팅 내용 등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별지 제7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자금배정 요구서

수신 :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 군, 구)의 천적방제사업 자금을 아래와 같이 배정 요구합니다.

(단 위 : 천 원)

사업자 선정결과			ha당 단가	분기별 자금요구액			
작목	농가수	면적(ha)		계	1/4	2/4	3/4
계							

[별지 제8호서식]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보고서

수신: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시장, 군수, 구청장(시·도지사)

우리 시·도(시·군·구)의 천적방제사업 집행결과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 위 : 천 원)

사업집행실적			ha당 단가	사업비 정산 결과		
작목	농가수	면적(ha)		예산액(A+B)	집행액(A)	잔액(B)
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팀 장 오병석 사무관 김수일	02-500-1951 02-500-1957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팀장 임병교 차장 임규원	02-2080-6401 02-2080-6408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향 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
- ※ 본 사업의 녹비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줄기나 잎을 비료 대용으로 사용하여 유리 질소의 고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작물을 가리키나, 토양유기물 함량증대 등 토양구조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사료용 작물도 포함함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제1항,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농경지내 유기물함량을 3.0%까지 확대
- '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농경지내 유기물 함량 비중(%), 주지표)	2.37	2.3	2.4	2.42	매년 3월	논토양 kg당 유기물 함량 비중
▪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96	257	340	290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 비료 사용량

* 지표산출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치 실적을 적용하여 계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3,184	11,284	15,720	26,942	146,324
- 보조	21,592	5,642	7,860	13,471	73,162
- 지방비	21,592	5,642	7,860	13,471	73,162

* 2008년까지 균특회계지원, 2010년이후 금액은 '10~'13년까지 합계 금액임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유희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자
- 재배대상농지
 - 동계작물 재배 논, 시설재배 논, 염해·습답 논 등을 제외한 모든 논
 - 고랭지채소 재배지역, 과수원 등 녹비작물 재배가 요구되는 밭
 - 대단위 들녘과 도로변 등 경관효과가 큰 농지

3. 지원대상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클로버, 수단글라스, 들묵새, 녹체보리 등 녹비효과가 있는 지자체 수요 녹비용 작물 종자
 - ※ 클로버는 초종이 매우 다양하므로 과거 국내 도입사례가 있는 초종에 한정
 - ※ 다만, 수요가 적은 클로버, 수단글라스, 들묵새 등은 '10년이후 계속공급 여부를 향후 검토
 - ※ 필요시 호밀 대신 녹체보리 공급도 가능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구입한 녹비용 작물종자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예정공급단가
 - 자운영 2,424원/kg (50kg/ha), 호밀 1,630원/kg (180kg/ha)
 - 헤어리벳치 3,740원/kg (50kg/ha), 클로버 8,462원/kg(25kg/ha)
 - 수단그라스 5,304원/kg (50kg/ha), 들묵새 20,600원/kg(20kg/ha)
- ※ 위 예정공급단가는 환율 1,100원/\$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사업종료시 최종 공급단가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 향후 환율, 국내외 곡물가격 등에 따라 당초 공급예상량보다 적게 공급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익년도 수요조사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사업전년도 10월중)
 - 수요조사로 각 시도별 녹비종자 초종, 수요량(톤), 재배면적(ha)을 파악
- 익년도 사업예산 각 시도 가내시 통보 (사업전년도 11월중)
-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마련 (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수요조사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수요조사를 시군구를 통해 실시한 후 보고(사업전년도 11월중) 【별지 제1호 서식】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보고 (사업전년도 11월초)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익년도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산출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사업전년도 11월중) : 【별지 제2호 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녹비종자 초종간 공급비율을 조정한 최종 사업량을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 통보(사업전년도 12월중)
 - 수요조사결과를 기초로 하되 가급적 최종예산 한도내에서 녹비효과가 적은 호밀재배면적은 줄이고 자운영과 헤어리벳치 등 기타 녹비재배면적 확대 검토
- 최종 조정사업량에 필요한 최종 예산을 각 시도로 내시(사업전년도 12월중)

시·도(지자체)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된 최종 조정 사업량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수요량 조정 지시(사업년도 12월중)

- 각 시군구는 읍면별 최종 수요를 조정후 그 결과를 각 지역조합 및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사업년도 1월중)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최종 사업량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 (사업전년도 12월중)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예상량 및 가격동향 등
- 각 시군구의 읍면별 최종 수요 통보를 받은 즉시 농협 일선조합은 조합별 대상농가 해당물량을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사업년도 2월중)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협중앙회로부터 보고받은 공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농협중앙회에 결정 통보(사업년도 1월중)
 - 안정적 물량확보를 위한 사전구매계약여부, 입찰 및 직구매 비율 등

시·도(지자체)

- 시·군·구에 사업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당 녹비용 작물 효용성, 재배방법 등을 농가대상으로 홍보·교육·지도토록 지시
- 시·군·구는 농진청, 농협과 협조하여 농가대상 홍보·교육·지도 실시

농촌진흥청

- 지자체, 농협과 협조하여 파종 및 월동관리요령 교육 및 홍보
 - 파종기 이전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 시용 후 파종토록 권장
 - 적종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지자체, 농협과 협조하여 적기수확 및 퇴액비 시용방법 등 기술지도
 - 녹비시용량에 따른 적정시비 지도
- 녹비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홍보 확대
 - 녹비작물 재배 시범포 운영 및 재배기술 보급
 - 녹비작물 재배 필요성 및 효과 홍보(영농교육, 리후렛, 언론보도 등 활용)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국내외 조사를 통한 녹비용 작물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 및 보고(사업년도 1월중)
 - 녹비용 작물 종자별 수입국가, 수입물량, 수입시기, 사전구매계약여부, 입찰 및 직구매비율, 문제점 및 대책 등

-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승인 받은 확보공급계획에 따라 사업 실시 및 사업추진현황 수시 보고(사업년도 2~11월중)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물식품부

- 각 시도의 자금배정 요구에 따라 연 1회 배정
 - 사업연도 11. 20일까지

시·도(지자체)

- 각 시도는 각 시군구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연 1회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을 하고 자금배정시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배정 및 송금
 - 자금배정요청 : 사업년도 11.30일까지
- 각 시도는 최종 정산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사업년도 12.10일까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에는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는 농협전산시스템의 녹비종자 공급내역(녹비종자공급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자금지급신청 : 사업년도 11.10일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적기에 해당 녹비용작물 종자를 농가에 공급되는 지에 대해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조합에 대하여 년 2회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필요시 수출국 조사를 통해 정선, 소독 및 선적사항 등을 점검하여 적기에 안정적 공급토록 조치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년 2회이상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과종상황 및 자금 집행사항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에 보고

- 농업인의 실제 녹비작물 재배여부 확인 및 생육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등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에 대해 녹비용작물 종자 공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점검시기 : 년 2회 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녹비용작물종자 공급과중·상황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녹비용 작물 종자 공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종자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자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현지점검결과 공급받은 종자를 파종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외부에 판매하거나, 파종 후 다 생육전에 벗짚과 같이 소각하는 등 사업목적 달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주지표인 농경지내 유기물함량 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농촌진흥청의 논토양 유기물함량 조사자료를 근거로 함량비중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결정
 - 유기물함량 비중(%) = (유기물 함량 g/ 논토양 1000g) × 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경지이용면적
-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향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대상 : 지원대상자,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및 각 조합담당
- 내용 : 만족정도,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당해연도 사업 종료후 각 시도를 통해 사업추진성과가 우수한 시군구를 추천받아 평가를 통해 장관시상 실시
 - 평가항목 : 과종실적, 지자체 관심도, 홍보실적 등
-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유공자를 각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서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연말 장관표창 수여
 - 대상 : 해당분야 5년이상 근무자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유공이 있는자

《환 류》

-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 표창실시
-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시 예산총괄부서는 차년도 예산확대 우선 반영검토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09년 10월중 각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수요조사를 실시
 - 해당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일선농협조합과 협조하여 서면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각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시군구는 '09년 11월 초까지 해당 시도에 보고

성명 (단체명)	경작지 주소 (지번)	과종희망 경작면적 (m ² (평))	녹비작물 종자 과종희망 면적(m ² (평))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치	녹채보리	기 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0년부터는 수입 호밀의 공급량을 줄이고 국내 녹채보리등을 공급할 예정
- 공급받은 녹비용 작물종자 과종 및 관리가 불량한 농가 등은 '10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 익년도 시도별 수요조사 양식

시도별	구 분	녹비용 작물 종자 종류					비 고
		자운영	호밀	헤어리 벧치	클로버	기타 (품종명)	
계	재배면적(ha)						
	물량(톤)						

<별지 제2호 서식>

□ 녹비용작물 종자별 예정공급단가 산출내역

시도별	구 분	단가	산출근기	비고
자운영	○			
	○			
	○			
	○최종공급가			
호밀				
헤어리벧치				
클로버				
기타 (초종명)				

40	친환경비료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팀 장 오병석 사무관 조정래	02-500-1951 02-500-1961
시·도	친환경농업과, 농정과, 농산·유통과		
농협중앙회	자재부	차장 이충규 차장 임규원	02-2080-6407 02-2080-6408

<① 유기질비료지원>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2.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저농약 제외)을 10%로 확대
-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40% 감축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 주지표)	11.0	6.2	9.7	10.5	매년 3월	전체 농산물생산량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생산량 비중
▪ 화학비료 사용량 (kg/ha, 부지표)	275	257	340	290	매년 3월	경지이용면적당 화학비 료 사용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톤,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물량	3,300	1,200	1,350	2,000	2,100
- 보조(국고)	115,500	42,000	47,250	116,000	121,800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유기질비료(퇴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산물비료(2종) : 퇴비·그린(1급)퇴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축산업종조합은 제외)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 (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지원)
 - 살포를 대행코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공급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살포대행 공급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지방비+농협지원금 등) 80%이내, 자부담 20%이상
- 지원단가(국고기준) : 1,160원/20kg(58원/kg), 정액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비료가격의 80% 내에서 정액지원(국고만 지원가능)
 - * '10년부터는 지방비 정액부담 계획('09년도 검토후 반영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익년도 사업계획을 시·도,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초
- 사업계획에는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예산 배정방법, 사업추진 체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단가 등을 명시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익년도 사업 계획을 수립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에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이하 “시·군지부”라 함)와 엽연초조합에 통보 : 사업전년도 12월말까지
- 사업계획에는 사업비(자부담액 제외), 지원대상, 지원단가, 농가당 지원한도, 비종별 신청내역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농가 신청 등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중앙회(엽연초조합중앙회 포함)로부터 통보받은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별 생산비중·제형·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
- 농업인이 유기질비료의 구입희망 업체별, 비종별 수량을 조합에 신청
- 신청조합은 농협(엽연초 조합) 조합원인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조합에,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에 신청
- 각 조합은 신청내역을 시·군지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품목농협은 신청내역을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군지부에 제출하고, 엽연초조합은 신청내역을 직접 관할 시·군·구에 제출

- 시·군지부는 각 조합의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1월 20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에서는 시·군지부와 영업초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업연도 1월말까지 지원대상 비종별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영업초조합에 통보하고 시·도에 보고 : **【별지 제2호서식】**
 - 신청내역 취합결과 보조금 소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원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별로 공평하게 조정하여야 함
 - 국고지원 대상 농가가 타지역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지방비를 지원할 경우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비료에 대한 지원과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 *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유기질비료 우선지원
- 각 시·도는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집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연도 2월 15일까지

농협중앙회(조합)

- 시·군지부는 시·군·구로부터 지원계획 확정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지원계획 확정내역에 기초하여 농가별 지원물량 (지원한도)을 확정된 후 농업인에게 공지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 농가별 지원물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실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조합 이사회 또는 영농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확정
 - 농가별 신청결과를 반영하여 1월초부터 우선 공급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종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 또는 영업초조합이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 제 외 대 상 >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업체
- 최근 3년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 되도록 한 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별표1의 사업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유기질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대상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은 보조대상 유기질비료(부산물비료 포함) 공급 업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보조대상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 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유기질비료 공급》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공급시기 : 1~12월
- 공급단위 : 10kg, 15kg, 20kg 포대, 500~1,000kg 톤백, 벌크(트럭 등)
- 공급방법
 -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아 농가에 공급하거나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공급업체가 농가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에 주문내역을 통지한 후 공급하여야 함(조합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실적으로 불인정)
 - 공급업체가 직접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완료 후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또는 벌크공급시 계량 확인서 첨부)
 - * 톤백 또는 벌크로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체내에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구획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연1회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조합은 농가별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비종별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유의사항

- 업체별 총 공급량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10%이상 초과하여 공급한 업체에 대하여는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및 한국부산물비료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각 시·도별 분기별 사업비 배정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시·도별 배정계획 시달)

시·도(시·군·구)

○ 각 시·군·구의 자금배정 신청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자금 배정 및 송금

○ 시·군·구는 조합별 공급실적을 확인한 후 매 분기 익월 말까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를 통해 조합별로 보조금 지급

○ 각 시·도는 9월말 기준으로 시·군·구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시·군·구간 사업예산 전배가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전배 조치하고,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배 요청 :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예산의 전배로 사업량이 증가되는 시·군·구에서는 2. 사업자선정단계에 따라 추가지원대상 수량 및 지원금액을 확정된 후 관할 시·군지부 및 업연초조합에 통보

농협중앙회(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유기질비료 공급내역을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일정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이상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재》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는 유기질비료 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유기질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주지표인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은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 실적에 의거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 = (친환경농산물생산량/전체 농산물생산량)×100
- 사업성과 부지표인 화학비료 사용량은 한국비료공업협회를 통해 산출된 화학비료 출하(사용)량과 경지이용면적을 활용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 화학비료사용량(kg/ha) = 화학비료 총 출하량 / 경지이용면적

《만족도조사》

- 농업인 등 사업대상자, 사업시행기관인 각 조합 등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농림정책 및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 조사대상 : 지원대상자(농업인 등), 지방자치단체, 각 조합담당 등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
 - 조사내용 : 만족 정도, 제도개선사항 등 조사

7. 행정사항

가. 품질관리

(1)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 대상업체 : 지원대상 비종의 비료 생산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등 적합 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이상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군·구에서 관내 생산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농촌진흥청은 검사성적을 시·도(시·군·구) 및 농협중앙회에 즉시 통보
 - * 농협중앙회에 통보시에는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만 통보 가능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2) 농협 자체 품질검사
 - 농협중앙회는 비료 구매자로서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되는 비료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료채취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납품중단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기관별 보고사항

- (1) 시·도
 - 시·군별 유기질비료 지원계획(확정내역)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2. 15까지
 - 예산 전배 요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10. 31까지
 - 사업추진실적(별지 제4호 서식) 및 보조금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 7. 31까지, 하반기 : 익년 1. 31까지
- (2) 농협중앙회 및 읍연초조합중앙회
 - 보조사업 비료공급업체 선정기준 : 사업개시 전년말까지
 -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추진계획 보고 : 계획수립 즉시
 - 유기질비료 공급실적(농협 시·군지부는 각 시·군·구 보고 포함) 보고
 - 상반기 : 7. 20까지, 하반기 : 익년 1. 20까지
- (2)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검사업체수, 기준 미달업체 등 품질검사 실적을 종합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 즉시 보고
 - 동 실적은 시·도에도 통보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통보

다. 기 타

-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선정, 공급계약 체결, 품질검사방법,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및 판매관리 실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공급업체 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후 시행(다만, '08년까지 선정된 업체는 협의 한 것으로 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명단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시·도 및 농촌진흥청에 통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품질검사 결과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지역농협 등 비료 공급기관에 즉시 배포하고 불량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
- 각 시·군·구에서는 불량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퇴비가 농가에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조원료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유기질비료 편법공급 및 보조금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 1회 이상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점검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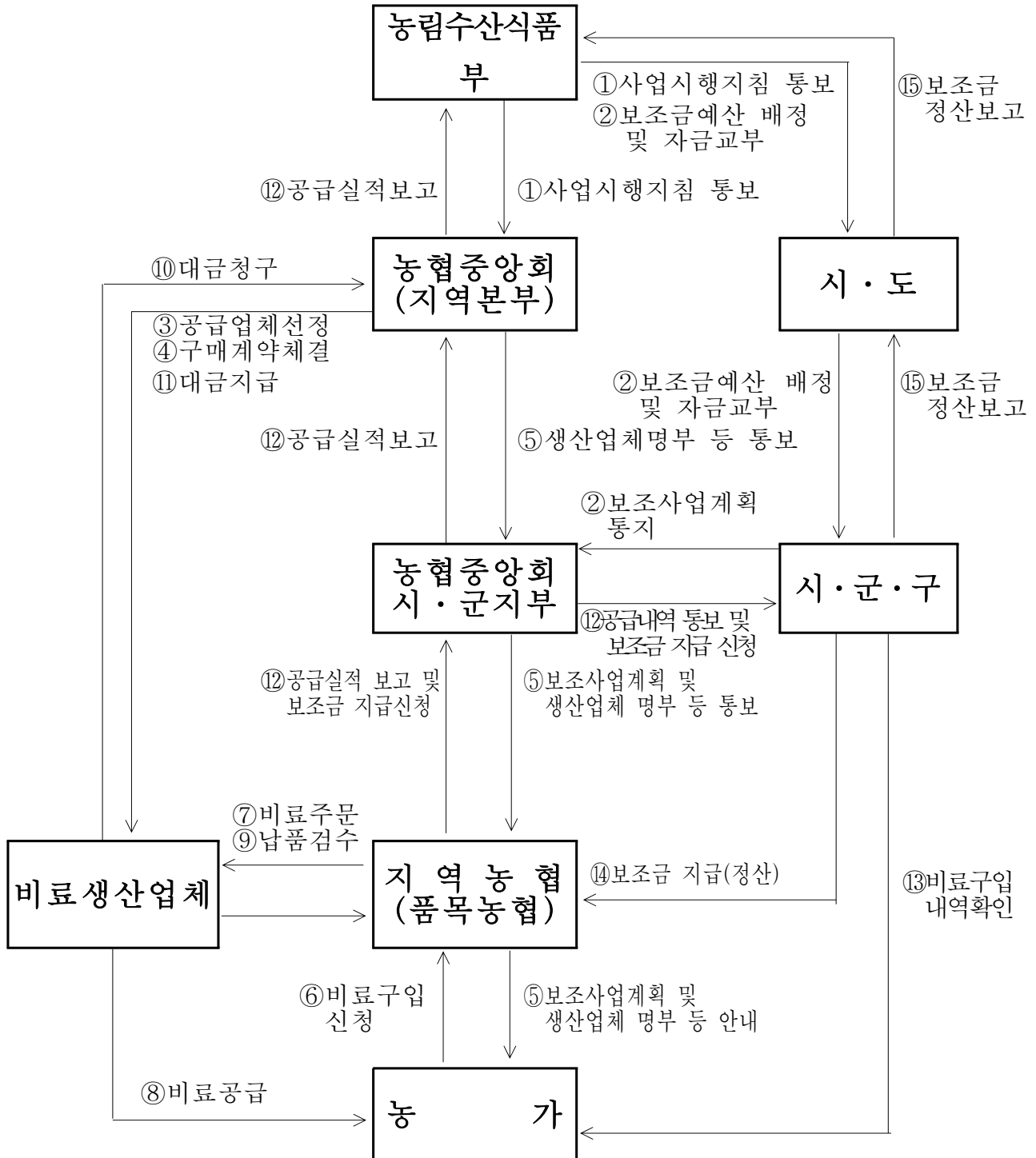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시료 채취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3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3.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기타 규격 포함) 기준미달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월 : 1년 - 영업정지 2월 이상 : 3년	"
4.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
5. 등록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1년	"
7. 유해성분·주성분 및 기타규격외의 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때	- 1년	"
8.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9. 최근 1년간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10. 퇴비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퇴비를 공급한 때	- 1년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별표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체계



※ 담배경작용 퇴비 공급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중앙회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의 기능은 엽연초조합이 수행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구입 신청내역

○○시(군)지부

(단위 : 포)

조 합 명	구 입 회 망 수 량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농협						

[별지 제2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시·군

(단위 : 포, 천원)

조합명	구분	계	퇴비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계	사업량						
	사업비						
○○농협	사업량						
	사업비						

- 주) 1. 지방비 부담으로 사업량을 확대할 경우 총 사업량을 기재
 2.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도비+시·군비)를 합한 총 지원금액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변경 및 예산전배 요청

○○시·도

(단위 : 톤, 천원)

당 초		변 경		사 유
사업량	사업비(국고)	사업량	사업비(국고)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배정한 물량 및 금액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실적(반기보)

○○시·도

(단위 : 톤, 천원, %)

시·군별	사업계획(A)		추진실적(B)				집행율(B/A)	
			당 기		누 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								
○○군								

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지원계획으로 확정된 물량·금액과 실제 지원한 물량·금액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시·도

(단위 : 원)

시·군별	사업계획			국고보조금 교부액(A)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계								
○○시								
○○군								

- 주) 1. 사업계획의 국고는 예산배정액을 기재
 2. 국고보조금 교부액은 예산액중 실제 자금교부액을 기재

<② 토양개량제보조>

I. 사업개요

1. 목 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년까지 전국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을 130ppm으로 높이고, 밭토양의 산도를 pH6.5으로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논토양의 유효규산 함량(ppm, 주지표)	125.2	118.0	118.0	124.0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정결과 활용
▪ 밭토양의 토양산도 (pH, 부지표)	6.1	5.9	6.0	6.1	2009.2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토양검정결과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천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 계	52,730	50,091	50,445	79,355	111,299
보 조	42,182	40,073	40,354	63,380	89,039
지방비	10,548	10,018	10,091	15,475	22,260
물 량	644	547	491	605	837

* '09년 사업비에 제주 균특사업계정 2,174백만원(국고 1,739) 포함

* 농가의 살포편의를 위해 전량 알갱이 형태의 입상으로 공급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
 - * 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자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법정리 단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여 공급

3. 지원대상

- 토양개량제로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30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pH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및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 공급한 규산 및 석회질비료는 신청 농경지에 전량 살포

5.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정한 법정리·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적용하여 농가신청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급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 전국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서 3년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며, 공급주기에 포함된 년도의 사업시행 전년도 3~4월중에는 변동사항을 접수 받아 익년도 사업량 조정

-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작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음)

* 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가 신청 가능

농림수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신청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2월)

시·도(지자체)

- 읍·면·동에서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접수받아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
- 시·군·구에서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 검정결과를 제출받아 Agrix에 입력
- 시·군·구에서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3년1주기 공급대상지역 선정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가 사업신청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확보(전년도 5~10월)
- 예산(안)을 반영하여 시·도 및 농협중앙회에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전년도 10월)

* 각 지자체별 지방비 확보를 감안하여 예산(안)을 우선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안) 통보
- 시·군·구에서 예산(안) 및 Agrix를 통한 농가신청물량을 감안하여 읍·면·동별 공급대상물량 및 금액 확정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에서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전년도 11월)
 - 구매계약을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 결정 결과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 석회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패화석은 GR인증제품, 석회고토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을 우선 구매·공급(단, 보훈단체는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09년은 유예)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구매 및 공급계약 결과에 따른 시·도별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 보고
- 각 시·도별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시기를 제출받아 월별 사업비 배정계획 마련(당해년 1월)

시·도(지자체)

- 시·도에서 시·군·구별 및 시기별 공급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구에서는 Agrix신청에 따른 읍·면·동별 공급계획 및 농가별 공급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통보
- * 읍·면·동에서는 Agrix를 통한 신청결과를 반영한 농가별 공급계획에 따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적기에 공급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중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중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함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받아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 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증을 징구하여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농협장에게 인도, 지역농협장이 책임지고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살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비 배정계획을 마련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 시·군·구의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매 분기 익월 25일까지 사업비 배정
- 시·군·구에서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와 협의하여 토양개량제를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대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 교부시 농협에서 제출한 공급자료(인수증)와 읍·면·동장의 살포확인서를 징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토양개량제 살포>

- 시장·군수·구청장,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를 위한 인력동원, 기술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적기에 살포가 되도록 함
- 토양개량제 살포는 지역농협장 주관하에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농협·농업기술센터 및 작목반 등의 보유농기계를 활용하여 원칙적으로 공동 살포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에서는 살포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수혜농업인은 해포 및 살포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특히,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지역농협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 석회는 공급지역이 분산되고 작물생육시기가 달라 공동살포가 어려울 경우 농업인이 개별살포 가능
 - 공동살포로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부여
- 미 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인수증)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 및 자금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 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실시
 - *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는 농가의 토양개량제 살포지도 및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가 집중되는 시기에 점검 실시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급받은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미살포 방치물량은 없는지 확인
 - * 신청농지에 살포를 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토양개량제 미살포 방치농가는 다음주기 공급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 토양개량효과는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의 주요농경지 토양검정결과(익년 2월까지 조사)에 의한 논은 유효규산함량, 밭은 산성도로 측정
-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논토양의 유효규산함량 및 밭토양의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자료 활용)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시·도별로 농지면적대비 토양개량제 신청비율이 높은 지역 및 토양개량제 공급면적이 많은 지역의 토양검정 유공자를 선발하여 시상 실시
 -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및 농협중앙회 토양검정센터
- 공급받은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지 않고 방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3년후 다음 차례 배정대상에서 제외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지역 : ○○시·군·구 ○○읍·면·동 ○○마을

규산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신방리	122	답	10,085	10,085	논벼	2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석회질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주민등록번호	-		E-mail			
신 청 농 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 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월별공급 희망시기
성환읍	왕림리	127	전	23,085	23,085	배	10월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읍·면·동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 집계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 희망시기 (월)⑦	농가 서명 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 ⑤ 신청량 : (③×④)÷1,000
-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 (m ²)③	기준소요량 (kg)④	신청량 (kg)⑤	확정량 (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 (월)⑦	농가서명 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성명 : 농지 경작자는 농지원부로 확인하고, 농지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대장으로 확인
- ②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③ 신청면적 :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
- ④ 기준소요량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을단위별로 기준소요량(10a당) 산정
- ⑤ 신청량 : (③×④)÷1,000
- ⑥ 확정량 : 예산배정 시 시·군에서 확정
- ⑦ 월별공급희망시기 : 리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음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군·구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청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m ²	4,000m ²	300m ²	3,700m ²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청량 ⑤
읍·면·동					
합 계	12,000m ²	4,000m ²	300m ²	3,700m ²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경지면적 : 읍·면·동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 ⑤ 신청량 : 읍면동에서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으로 산출한 신청량을 확인
-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4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서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시·도

<규산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청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m ²	4,000m ²	300m ²	3,700m ²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석회질 비료>

구분	경지면적 ①	당해년도 공급대상 면적②	미신청면적 ③	신청면적 ④	신청량 ⑤
시·군·구					
합 계	12,000m ²	4,000m ²	300m ²	3,700m ²	740kg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경지면적 : 시·군·구별 농지원부상의 경지면적으로 확인
- ② 당해년도 공급대상면적 : 시·군·구별 연차별 공급대상면적
- ③ 미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면적
- ④ 신청면적 : 농지 실경작자 및 소유자가 신청한 면적
- ⑤ 신청량 : 기준소요량 × 신청면적

※ 월별 공급희망시기는 리 단위로 확정하여 제출(별첨)

[별지 제5호 서식]

'09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 보고

(단 위 : 톤)

구 분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규 산	석 회
계									
시·군·구									

[별지 제6호 서식]

'09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실적 보고

〈합계 · 규산 · 석회로 구분하여 작성〉

(단위 : 톤)

시·도명	공급계획 (년 간) (A)	공 급 실 적			살 포 실 적		
		당분기	누계 (B)	비율 (B/A)	당분기	누계 (C)	비율 (C/B)
계							
시·군·구							

41	농업종합자금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고경봉	02-500-1754 02-500-1757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팀장 김정식	02-2080-6816

I. 사업개요

1. 목 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 중에서 각각 600억 및 50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
 - 천적산업육성지원사업은 당 연도 예산 중에서 40억원 한도내 지원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당 연도 예산 중에서 60억원 한도내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사후관리 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가능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21조(식품산업의 육성), 24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26조(전업농업인의육성),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농지법 제21조 (토양의 개량·보전)
- 제165조 (중자산업의 육성)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 후 사후 관리까지 일괄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따라서 자금지원율을 통해 투자수요 지원율을, 지원 후 경영개선실적과 대출연체율을 통해 사업계획달성율과 대출건전성을 평가해 지원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으로 성과평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자금지원율(% , 주지표)	90	109.2	99.4	100	매년말	대출 추진실적
▪ 경영개선실적(% , 부지표)	70.0	80.6	78.0	76.0	매년말	경영실태조사
▪ 대출연체율(% , 부지표)	0.88	0.85	0.60	0.89	매년말	연체현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976,100	1,026,100	1,100,000	1,800,000	
농특자금(융자)	175,220	153,898	165,000		
농협자금(융자)	800,880	872,202	935,000	1,800,000	

-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쌀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 * 1조 8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추가자금 소요되는 점을 감안 2009년 예산 소진 시 2천억원 범위 내에서 농협자금으로 추가 집행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쌀가공식품생산업체

※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의 배정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한하여 지원
단,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 지원 가능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수산식품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 쌀가공산업은 쌀(정부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 다만, 농협임직원 이외 사실 확인자료 제출은 대출신청인의 자진신고서에 의함. 허위신고 시 자금회수 등에 따른 각서 제출)
-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저장업자·관광농원사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7억원 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농기계구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종의 구분없이 정부지원 기준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단, 각 구성원의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생산물의 저장,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생산기반을 근거로 종합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①농촌가공산업육성, ②시설농업 기자재생산지원, ③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지원, ④쌀가공산업육성지원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⑤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① 농촌가공산업육성

우리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농가소득증대와 고유식생활문화 계승발전 및 특산물생산단지 조성·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②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업용기계생산지원, 농업용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지원
(다만, 부지구입비는 제외)

③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농기계의 이용율을 증진(부지구입비는 제외)

④ 쌀가공산업육성

쌀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가공산업육성을 통한 쌀 소비 촉진 확대에 기여하는 산업(부지구입비는 제외)

⑤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지원

농기계 사전 생산비축에 소요되는 원자재 구입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집중수요에 필요한 농기계를 원활하게 공급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농기계 개발보급 등 우량농기계 생산지원

○ 지원조건

- 금 리 : 연리 3.0%
- 상환 조건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천적산업육성지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억원 이상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 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 이내 상환)

<농기계구입자금> :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3. 지원대상

《원예·특작분야》

가. 지원대상사업(예시)

○ 채소·화훼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예냉시설, 조직배양시설,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시설 등 시설장비
- 발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 과 수

- 키낮은 사과원 등 과원조성, 우량품종갱신, 오디생산, 단감·감귤 등 밀식원 간벌
- 관·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지주·덕시설 설치 및 개·보수자금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 특 작

- 머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또는 판매장, 저온저장고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잡엽 : 빵발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빵수확기등), 양잠산물 가공기자재(건조기 등), 노후잠실 보수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지원, 우량묘삼 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영농기반 현대화사업지원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저온저장시설은 331m² 이내에서 농가의 자가생산규모를 감안한 범위내에서 지원(타인 생산물 저장을 위한 시설은 지원 불가)
- 기계장비 지원은 농기계분야 참조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하우스병 예방 등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온실부근에 일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관리실 또는 작업장 설치 권장
- 원예·특작분야의 시설물 설치시 일정규격 이상의 자재 이용시 지원(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1 참고)
- 시설원예분야의 시설 설계, 시공업체 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단에서 정하는 별도 지침에 따름. 다만, 2,314m² 이하 자동화비닐온실은 별도지침 적용을 배제함

《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자,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 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고시 제 2006-57호)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축사등 사육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기계분야》

가. 지원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
 -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인 농기계와 그 부속작업기, 선택품 등을 함께 구입할 때에는 일괄지원하되 기종별 용자 지원한도액, 상환조건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 농기계보관창고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나. 유의사항

- 정부지원대상 농기계 이외의 기계장비 또는 시설의 일부분인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
 - 기계장비중 시설의 일부분으로 설치될 때에는 해당분야 시설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그 이외의 기계장비는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 농기계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10백만원이상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및 행정 사항중 본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 준용

《농촌가공분야》

가. 지원대상

- 농산물가공산업 : 국내산 농산물로서 원료조달이 용이하고, 경쟁력이 있는 품목, 대규모 판매처 등 판로확보가 용이한 품목, 주세법에 의거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품목
- 농촌특산단지육성사업 : 민속공예품, 농산자재, 섬유식품, 석재분야
 -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품목으로 지역대표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 선정
- 지원대상자 : 사업 경영체별(개인, 법인)로 자금지원하고, 운영자금은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

나. 유의사항

- 공업화에 의해 다른 일반공장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고 원료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농촌인력 활용도가 낮은 일반공산품, 식료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외대상(예시) : 비닐제품, 종이상자, PP포대, 어망, 차광막, 면장갑, 타월, 건축용 석재, 타일 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육·채종시설, 장비 :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첨단유전공학장비(고속원심분리기, 전기영동기 등), 종자품질관리장비(종자소독, 종자정선 및 가공기자재 등)
- 신품종 육종 : 고품질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인건비, 시험비 등)

나. 유의 사항

- 최근 1년간 종자분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

《천적산업 분야》

가. 지원대상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생산공급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

- 천적업체의 천적생산시설, 연구개발기자재 설치비용
- 나. 유의사항

- 업체당 지원한도는 8억원이내,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 생산·재배시설, 저장·유통·가공시설 및 증축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시설, 토지매입,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첨단농업기자재의 국산화에 필요한 시설,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지원 등
 - 저장·유통·가공시설은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자금은 예외)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기존 시설물 구입시 지원제외
 - 토지매입자금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지원
(세부사항은 부록 : 토지매입자금 지원관련 세부지침 참고)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고)
-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경작중인 농지이외의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
(토지에 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사료생산기반은 사료포의 경우만 지원
- 노지 992㎡미만, 시설부지 331㎡미만 지원제외
- 관광농원사업, 농촌민박사업,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촌가공사업, 농기계보관창고지원,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객토(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경과시 추가 시설지원 가능)

-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농산물 매취 및 수입농산물 수입(구매)소요액은 지원제외하고, 농촌가공 사업 운영자금은 업체당 10억원까지 지원
 - * 토지임차자금은 임대차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운영자금으로 지원
 - *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시에는 지원가능
 - *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의 생산원자재구입자금을 지원
 -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재사용 가능(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농기계자금 : 대당 공급가격 10백만원 이상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방법 : 금융기관(농협)에서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 지원
- 지원형태 : 융자
-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18,000억원 (농협자금 18,000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시설·개보수자금은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지원 가능
 -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소액 시설설치자금(에너지 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시설 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 가능
 - * 토지매입자금은 토지가격에 관계없이 평(3.305㎡)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관인계약서상 거래가격이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 가능

Ⅲ. 수출 및 규모화 사업(시범사업)

1. 사업 목표

- 농업자금의 대출방식을 물적 담보에 두지 않고 투자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 주로 수출활성화를 위한 농업법인·농가의 시설 투자에 지원하여 수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사업 개요

- 추진 주체 : 농협중앙회
- 시범사업 추진 기간 : 2009년~2010년 (본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
- 지원 대상자 : 수출확대, 생산·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농가·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농협 여신규정상 지원적격업체
 - 대출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업체 (재무제표가 없는 개인은 대출 불가)

3. 지원 조건

- 대출 금액 : 5억~42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사업성 평가 및 현금흐름분석을 통해 기간 결정
 - 거치기간과 분할상환기간을 합쳐 최대 15년 이내에서 결정
 - 3~5년 거치, 5~10년 분할상환 등
- 대출 용도 : 시설 자금(운전자금은 최소화(20%이내))
- 지원 규모 : 1천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3.8~2.3%를 차감한 금리 (농가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 대출금액이 10억원 미만 3.8%,
 - 10억이상에서 30억미만까지는 3.3%,
 - 30억원 이상은 2.3% 적용

4. 대출심사 및 채권 보전

- 대출심사는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름
- 채권보전은 농신보 또는 신용대출로 취급
 - 신용대출시 임원 연대보증 입보, 당해 완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 본 사업에 대하여 특례조치로 농신보 보증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 지원
 - 농신보 부분보증 비율 7:3 적용
 - 기타 대출기관 여신규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가능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5. 기타

- 지원업체는 대출기관과 추가 약정(MOU)체결
 -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대출사무소 사전 고지의무 등
- 경영체 영업활동 관련 주거래계좌는 대출기관 계좌 이용

IV.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1)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이하 “취급사무소”)
 - 농협 시·군 지부 중앙회 소속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
 - 농협중앙회장이 지정한 농업종합자금 취급 지역조합, 품목조합(이하 회원조합)
 - * 각 취급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원예특작, 축산을 구분하지 않고 대출업무를 취급함
- 3) 자금운용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02) 500-1757
- 4)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2) 500-1729~35
 - 식량정책단 농생명산업팀 (02) 500-1945
 -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02) 500-1952~63
 - 식량정책단 식량정책팀 (02) 500-1912~27
 - 유통정책단 식량정책팀 (02) 500-1912~27
 - 유통정책단 채소특작팀 (02) 500-2035~47
 - 유통정책단 과수화훼팀 (02) 500-2048~58
 - 축산정책단 축산정책팀 (02) 500-2062~72
 - 축산정책단 축산경영팀 (02) 500-2076~85
 - 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02) 500-1797

1. 사업신청단계

사업희망자

- 사업희망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취급사무소에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취급사무소

- 취급사무소가 아닌 농·축·삼협은 신청서류를 해당 취급사무소로 이첩

- 투자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영체가 희망하는 경우 지도기관에서 자문·상담을 실시(시설자금에 한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등은 취급사무소에서 안내하되 행정·지도기관에도 비치·안내하여 농업인 편의 도모
 - 사후관리 및 점검·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신청이나 대출약정 체결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 관광농원·농촌가공사업(추가시설 설치 포함)의 시설자금 신청자는 행정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취급사무소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취급사무소

- 종합자금취급사무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수익성 등 경영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금지원 결정
 - 농·축·삼협은 사전에 지역농업발전계획이나 지역특화시책, 권장품목 등 종합자금제 실시에 대해 시·군과 사전 협의
 - 사업계획서에 대한 대출적격여부, 대출금액 및 대출방법을 결정한 후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해당 시·군의 의견을 요청
 - * 운영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구입·생산지원자금, 객토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에 의견 조회를 하지 않음
- 토지매입자금의 경우는 전체 사업계획에 비추어 토지매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회
- 사업계획서 심사시에는 이 지침과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을 검토 분석(재무·경영평가 포함)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

< 중점평가 항목 >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점 평가시 우대 혹은 가점 부여 고려사항 >

-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가입농가
 - 친환경농산물 표시농가(품질인증 등)
 - 쌀생산 품질인증 농가 및 법인은 가점 특별우대
 - 신지식농업인, 새농민상 수상자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한 회원농가
 -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
 - 농업인안전공제 또는 농기계종합공제 가입 농가
 - 우량품종경진대회 수상경력 농가
 - 우량종자개발사업자(업체별 전문작물 및 채소, 화훼류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 취급대상 사업자)
 - 방역차원에서 종돈시설과 정액시설을 분리 또는 이전하는 축산경영체에 대한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주관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농업경영체
 - 가축질병예방활동 참여 우수농가(종돈장을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이전지원 포함) 및 회계관련자격증 보유자
 - 품질개선노력 : 규격돈 생산,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생산, 우수축 출하, 1등급 원유생산 등
 - 기타 : 집유일원화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처리, 객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 농업경영정보제공자, 신규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사업신청자가 희망하거나, 대상품목(축종) 또는 경영기술등이 농·축·삼협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신청자와 협의하여 농촌지도 기관이나 기타 전문기관의 경영컨설팅을 받도록 함
-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탈락사유(신용평가표 공개 포함)를 설명하고 보완사항이나 추가준비사항 등을 안내 및 지도
- 취급사무소는 종합자금 지원상황을 수시로 해당 시·군청에 통지
- 시·군청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존 정책자금지원상황과 사업취소, 추가 지원

등 변경사항을 농·축·삼협에 통지

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 연구소

-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기타 농업기술관련 정부연구소는 농·축·삼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경영능력 및 사업계획서상의 기술사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제공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상황 >

-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지도계통 컨설팅, 농촌진흥청 주관)
 -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초컨설팅팀과 9개 도농업기술원의 광역컨설팅팀 운영중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민간컨설팅, 농림수산식품부·9개도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각 시·도는 소관 컨설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농업인과 일선취급사무소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각개인·기관·회사별로 전문분야, 컨설팅실적, 주요 경력 등

시·군(지자체)

-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지원적격여부 의뢰가 있는 경우 인허가 등 행정사항, 기술검토사항, 기타 해당 경영체의 평판·신망 등에 관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회신
 - 지방자치단체 등이 농림사업에 대한 보조금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농가의 보조금 지급여부를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초에 운용계획에 의거 농특자금을 대출취급기관에 대여

취급사무소

- 대출취급기관은 정부로부터 차입한 농특자금과 농협중앙회자금(이차보전자금)을 활용하여 대출
 - 종합자금 회원조합 취급분의 경우, 희망조합에 한해 농협중앙회 이차보전

기준금리로 상호금융자금 사용을 허용

-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등 정책여신 관련규정과 각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규정에 따라 자금대출
- 사업대상자가 소요하는 시기 및 금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출
- 이자는 1년 후취원칙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대출취급기관과 행정·지도기관이 각각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분야나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언, 관련정보 제공, 교육이나 컨설팅 알선 등을 통해 농업인의 사업준비에 노력
 - 행정·지도기관은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등에 전담상담인력을 지정
- 시·군은 대출취급기관의 자금집행실태 등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취급사무소

- 사업검정과 사업비 정산
 - 시설·개보수·농기계자금 중 용자지원금의 검정·정산은 농업종합자금운용규정에 따름(가축입식비의 검정·정산시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종축등록을 하는 등 구입대상가축의 개체관리에 입각한 증빙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토지매입자금의 정산은 관인계약서와 토지취득관련 납세자료에 의함
 - 제주도의 경우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시에 축협에서 한우암소에 대해 발급한 매매증명서도 검정·정산의 증빙으로 인정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농협중앙회는 농업종합자금취급사무소의 농업종합자금지원 추진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협의 감사지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종합자금 3억원이상(금차 지원금 포함) 지원경영체는 매년 1회 농업경영 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가자금지원 중단
- 농협중앙회에서 승인지원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승인부서가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 대출취급기관은 이상징후가 있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도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 민간경영컨설팅을 우선 지원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1억원이상 지원농가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농가는 간이경영실태조사 실시
 -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대출취급기관의 경영상태 분석·평가결과 자료를 해당 농업경영체에 제공함과 동시에 동 자료를 축적하여 농업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에 활용
- 농협중앙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정산 결과를 서식 1호에 따라 다음 회계 연도 3월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중앙회장은 농기계구입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농협중앙회의 농업종합자금 세부시행지침에 규정해야 함
 - 대출심사 완료 후 농기계를 선택토록 하여 농업인의 농기계선택권을 보장
 - 특정공급자 또는 특정제품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대출심사의 부당한 지연, 불필요한 자료요구 등 특정공급자를 차별대우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대출 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농업기술센터 및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도 농업기술원은 농·축·삼협 지도업무담당부서 및 민간컨설팅전문가들과 협조, 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농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지원대상 농가 선정시 컨설팅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 대해 경영능력 평가 우대

《제재》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지원으로 증당한 토지·시설·설비·장비등을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때
-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부도, 폐업, 사업 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지가 농지법 제10조에 의한 처분통지를 받은 때
 - *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지원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시·도지사)의 조사·확인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당초 상환조건대로 상환하게 할 수 있음
 - * 대출금의 회수와 대여금의 반납 및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름
 - * 취급사무소는 대출약정체결시에 상기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약정서에 첨부해야 함

5.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종합자금지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매년 자금지원율, 경영개선실적, 대출연체율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대출제도 장단점, 애로 및 건의사항, 대출불편사항 등 현장 농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추진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대출만족도를 제고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실태파악, 현장점검,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농업종합자금 사업수요조사

- 조사대상
 - 농업종합자금 취급조합당 3~5개 농가(본소 기준)
 - 조합의 농업종합자금대출 중 주요 대출품목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각각 1~2개 농가 직접 선정
- 조사내용
 - 향후 농가소득 전망
 - 2009~2010년 영농규모 확대 또는 축소 의향
 - 2009~2010년 시설 및 운전자금 조달 규모
 - 2009~2010년 신규 농기계 구입희망 규모(1천만원 이상)
 - 농업종합자금 수요 전망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연초 농업관련 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안내

<서식1호>

종합자금지원 정산실적 보고

(농협중앙회)

(단위 : 천원)

품목 추종	성명 (법인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세부 사업명	계획 (A)	실적 (B)	대비 (B/A)	지원 계획	집행 실적 (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미집행	착공일	준공일
합계					%						

- (주) 1. “사업량”은 개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계획 대비 실적을, “단위”는 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ha, 종, m² 등으로 기재
2. “세부사업명”은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 구입 또는 개발지원하는 유리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예냉시설 등을 기재
3.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4. 각 사업성격에 따라 본 총괄표외에 품목별, 시군별, 성별, 사업주체별(개별농가, 농업법인)로 위 양식에 맞추어 세부정산실적을 별지로 작성, 첨부
5. 제출기한 : 사업연도 익년 3.20일까지 농업금융과에 보고

[별지1]

파이프비닐온실 설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파이프 비닐온실>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강설량, 풍속 자료조사분석을 통해 작성된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이상임을 입증하거나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지정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으로 설치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지역별 내재해 기준 및 규격은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 세부추진방안”으로 별도로 시행 계획)
- 시공업체나 농가가 KS품 또는 KS품에 상당한(공인검사기관 합격 기종 등) 파이프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협계통공급자재 사용(* 「'06농업용파이프 공급계약서」에 의거 KS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추가 품질검사 합격자재공급, 품질검사 연2회 이상)
 - 비농협계통 자재일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품 또는 국가공인 검사기관 농업용파이프 기준 합격품

※국가공인 품질검사 방법

- 기관 : 중소기업청,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 전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 검사기간 : 15~30일 소요(시공업체, 자재공급업체 등이 사전검사 신청가능)
- 의뢰방법 : 시료를 50cm 4개로 절단하여 검사(*비용 7만원/1회 수준)
- 농업용파이프 검사결과 합격기준

(외경)±0.5, (두께) 1.6t미만 : +0.13~ -0.03mm, 1.6t이상 +0.17~-0.05mm

(굽힘시험)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내가 떨어지지 않음

(인장강도) 400N/mm²이상, (아연부착량)양면시험기준 300g/m²이상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992m²)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온실 시공 능력평가 공시업체 등)을 통해 시공 권장
- 내하중 강화를 위해 철재파이프 대신 구조용 강관사용 권장

참고 : 지원대상제외토지 및 관련 법령

《 지원대상제외토지(예시)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내 토지(다만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림수산물부고시제 1995-86호에 의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
-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내의 토지
- ④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내의 토지
-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토지
- ⑥ 농지 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되는 지역내의 토지(다만, 축사, 간이양축시설, 건조/보관시설, 잠실, 애누에사육장, 앞담배건조실, 농기자재보관시설 등 종합자금지원대상인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는 지원가능)
-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

《 관련 법령(예시)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0조
- 同法 제117조(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고시)
2. 건축법 제8조 내지 제9조(건축허가·신고)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및 제5항(공장설립승인)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사업계획 승인)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8. 관광진흥법 제15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계획 승인, 관광숙박업 등 사업계획 승인)
9. 자연공원법 제10조제2항, 제47조(공원계획결정 또는 변경결정)
1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제4항, 제6조(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11. 골재채취법 제23조(골재채취 허가)
12. 도로법 제25조의2의제1항 및 제2항(도로구역의 결정·변경)
1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2항(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7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 계획승인)
15.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6. 청소년기본법 제38조의제1항 및 제3항, 제45조의제1항 및 제2항(청소년 수련시설허가 및 조성계획 승인)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 제8조(과학관설립계획 승인)
1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 제11조, 제13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
19.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
2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승인)
21. 중소기업진흥법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9조제1항 및 제2항(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22. 광업법 제47조의2의제1항 및 제2항(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조(송유관시설 등 공사계획 인가)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공사 계획 승인)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의제2항 및 3(가스사업실시계획 승인)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1항 및 2항(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마을하수도 사업 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2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개발 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28. 수도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일반수도사업인가)
29. 한국토지공사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토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 제18조제1항(실시계획의 승인)
31.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 승인)
32.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3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4.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2항, 제37조제1항(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
35. 항공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36. 항만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항만공사 시행 및 시행허가)
37.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
38.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및 제6항(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설치 사업계획 승인)
39.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승인)
4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41. 농어촌정비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 계획의 수립, 생활환경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42. 소하천정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소하천정비시행계획 승인 및 소하천공사 허가)
43.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
44.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5조, 제6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의 확정)
4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9조, 제10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6.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개발사업의 시행승인)
47.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제18조 및 제33조, 제34조(시범도매센터 및 공동집배송단지 지정) 등

【농촌개발분야】

Ⅱ. 기술개발

42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팀 장 김덕호 사무관 이우철	02-500-1965 02-500-1969
지방자치단체	해당과	해당과 담당자	

I.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원 및 겨울철 농가소득원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생산 확대 가능성 점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 종자보급체계, 농기계 보급(파종기, 수확기), 농업기반 시설 등 생산기반
 - 유채의 생산성, 품질, 생력화가능성 및 작부체계 등 생산체계와 공급체계
- 유채 재배시의 경제성 및 환경성, 정책비용 절감효과 등 사회적 편익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국 비	-	1,835	585.5	1,124.55	-
- 지방비	-	765	229.5	481.95	-

* '09년 예산은 '08년 수확기분 보조금(전체보조금의 70%)이며 '09년 파종기분 보조금(전체보조금의 30%)은 '09. 6월 2차년도('08.10~'09.6)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별도 확보 추진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를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사업대상자의 의무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작물의 적기파종 및 성실한 재배관리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사업대상지역 제외대상 >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었거나 고시되는 등 사업기간 중에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지. 다만, 개발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유채씨 수확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생산하는 바이오디젤용 유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 보리 재배소득과의 차액(170만원/ha) 보전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08년 12월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바이오디젤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시행지침의 내용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추진협의회

○ 「참여신청서」 작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고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 구성에 참여

<참여신청서 첨부서류>

-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 경작확인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중 하나)
- ※ 첨부서류 중 전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 서명으로 갈음

○ 「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작성

- 농업인단체(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별지 제7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7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신청서(참여신청서·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검토

- 지적도, 농지원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농지의 사업적격성 확인
 -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

○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 [별지 제4호] 작성
 - ※ 시범사업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5호], 추진협의회와의 협약서[별지 제7호], 사업신청 토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8월초)

지방자치단체(시·도)

○ 「시·군·구 사업신청서」 접수 및 제출(8월중)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시·도 사업신청서」 [별지 제4호]를 작성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량 확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및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9월초)
 -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 확정 결과를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추진협의회장에게 통지

3.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참여농가별로 보조금 지급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요건】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 대상면적에 단가(㎡당 170원)를 곱하여 산출(10원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파종확인 후 30%, 수매확인 후 70% 지급

□ 보조금 지급요건

- 사업참여자는 사업기간 중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용 유채작물 파종, 재배관리, 평균생산량 수준의 생산과 판매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 바이오디젤용 유채씨 일부를 타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수매 불이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 부정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

- 생산된 유채 수매
 - 시·군·구에서 주관하여 ‘추진협의회, 농협, 업체’간 사전 수매공급계약 체결 및 수매
- 유채를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계측 협조(관련자료 협조 등)
- 사업대상자 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청 내용 확인 후 변경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지
 - 사업대상이 변경된 경우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의무조건 승계

협조기관

- 농촌진흥청
 - 유채재배기술 및 농기계 교육 등 유채생산 제반사항 협조
 -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재배 확대를 위한 사회적 편익 계측
-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협 수매검사원 교육
- 농협 : 유채의 수매·검사·저장·운송
- 바이오디젤 관련업체 : 유채 인수
 - ※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협의회, 농협, 업체’간 수매공급계약에 의해 추진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업인이 성실한 유채재배 여부를 실정에 맞게 점검 실시
 -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의 적기파종여부, 재배관리 점검
 - 시범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의견청취

《 제 재 》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원료용 유채의 재배 및 수매	면적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조치
	기준수확량* ¹ 미달	▪ 수확기분 보조금(70%) 감액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이상~50%미만 미달: 10~4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50%이상~60%미만 미달: 5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60% 이상 미달 : 보조금 미지급
	수매 불이행	▪ 지급보조금 회수

*¹ 기준수확량 : 관할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 단, 천재지변 또는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공급체계 구축여부 평가
 - 지자체의 유채생산량 및 수매결과 등 생산량 확인서류를 통해 성과지표 측정
 - 유채생산량 : '10년 7월 측정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산원료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점검
 - 지자체, 관련 연구기관과 협조하여 계측사항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유채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협의를 거쳐 '10년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확대 방안'을 마련

[별지 제1호 서식]

추진협의회 사업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 · 군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논	m ² 밭 m ² , 기타 m ²
3. 농촌관광 등 사업연계계획	별지 작성 가능		
우리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임과 같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추진협의회장 주 소 :		(전화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불임 : 개인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토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m ²)			⑤구비서류 전산확인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기 타		
									주민등록 등(초)본	
									농지원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토지에 대하여 유채를 재배하여 양질의 바이오디젤 원료가 생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본 시범사업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하면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참여신청서 ○ 거주지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경작확인 서류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실경작확인서(별지 제3호) 중 하나 2. 변경신청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실 경 작 확인서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사업 신청토지의 실경작자 확인용>

대 상 토 지				경 작 자			기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공부)	면적(m ²)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기타란에는 임차토지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기간을 표시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마을대표 (인)

마을대표 전화번호 :

※ 이 확인서는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사업을 신청하는 토지 및 실경작자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2. 지역현황	신청자수	명	
	면 적	계	m ²
3. 생산기반시설 여건(과종기, 수확기, 건조 시설 등)	논	m ² , 밭	m ² , 기타 m ²
4. 보조금 및 생 산기반 조성 추가지원 계획	별지 작성 가능		
3. 농촌관광 등 사업연계 계획	“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붙임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변경) 확인결과[별지 제5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서[별지 제7호]			

[별지 제5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읍면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	확인면적(㎡)				경작 확인서류	지급예상 액(원)
						합계	논	밭	기타		
		소계	○○ 명 신청								
합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 경작확인서류는 농지원부, 실경작확인서 등을 기재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6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년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군(추진협의회) 현황

시·군명		추진협의회장	
------	--	--------	--

2. 선정자(변경) 명단

연 번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대 상 면 적 (㎡)				보 조 금 예 상 액(원)	○○ 시·군·구
				합계	논	밭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협약(안)

○ ○ 시장·군수·구청장

○ ○ ○시·군·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의 국내재배 기반 확보와 새로운 농가소득작물 및 신에너지 지원 개발 가능성 모색하기 위하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시·군·구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추진협의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대상 : 총 m²(논 밭 기타) · 명(자연인 , 법인)
※ 세부내역 별첨
3.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

② “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유채의 파종·식재 및 관리 등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원료용 유채작물의 파종
2. 성실한 재배관리
 - 가.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 가.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 다.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작업
 - 라.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관개 및 배수작업
3. 유채 재배기술 교육 필히 이수
4. 원료용 유채씨 생산·판매
 - 가. 유채씨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한 해당지역 평균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생산된 유채씨는 바이오디젤 원료로 판매되어야 함
 - 나. 천재지변 및 “갑”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5. “갑”의 지도·관리에 적극 협조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시행지침

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유채의 재배 관리에 있어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2. 기준수확량 미달 : 수확기분(전체보조금의 70%) 보조금 감액조치
 - 기준수확량보다 30%이상~50%미만 미달: 10~4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50%이상~60%미만 미달: 50% 감액
 - 기준수확량보다 60% 이상 미달 : 보조금 미지급

※ 관할 지자체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수확량으로 한다.

3. 수매 불이행 : 지급보조금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범사업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협 의 회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 시범사업대상 확정(보조금지급) 결과 보고

읍·면별 (시·군별)	대상확정결과(* 보조금지급결과)					지급예정금액 (*지급금액) (원)	비 고
	농가수 (호)	면 적 (m ²)					
		합 계	논	밭	기 타		
합 계							

- “*” 표시된 란은 보조금지급결과 보고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농가수 및 면적과 지급금액을 기재(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 시장·군수는 읍·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

년 월 일

보고자 : ○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수산물부 장관)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정책과	과장 장승진 사무관 서정아	02-500-1738 02-500-1743
농림기술관리센터	사업평가 1팀 기획예산팀	최양석 팀장 신완식 팀장	02-2041-7532~7 02-2041-7513~7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업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농림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력을 성장 동력원으로 하는 농산업 육성하기 위해 농림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 등을 응용하여 농림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추진

2. 근거법령 및 규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기술개발 성과활 용율(%)	64.2	64.8	54.9	63.8	12월 중	(활용 과제 수/완료 과제 수) *100
▪ 기술이전율(%)	21	18	19	20	12월 중	완료과제 중 산업체에 기 술이전된 과제의 비율
▪ 기술료 납입실적 (백만원)	324	327	281	319	12월 중	기술실시계약한 과제에 대 한 기술료 납입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37,859	42,574	73,523	88,523	
○ 보조	537,589	42,574	73,523	88,523	-

* 연구과제에 기업체가 참여할 경우, 대기업은 연구비의 50%, 중소기업은 연구비의 25% 대응 투자(Matching Fund) 의무 적용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협동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영리법인 10인)을 늘 확보하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과제 공모 유형

- 기획과제 (지정 공모형)
 -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수출유망 농산품(분야) 수출전략기술 등
- 일반과제 (자유 응모형)
 -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사업단의 연구수행능력 등
- 참여기업 부담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부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9년 1월
 -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수산식품부·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게시
 - 신청양식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 농림기술관리센터(www.arpc.re.kr) 홈페이지에 게재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 2009년 2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arpc.re.kr)접수
 - 과제관련 3P분석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화
 - * 3P : Product(산업제품), Patent(특허), Paper(논문)의 동향분석
 - 참여산업체가 중소기업(농업경영체)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첨부
 - * 농림기술관리센터 : 02-2041-7513~6 (FAX. 02-2058-0068)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기술관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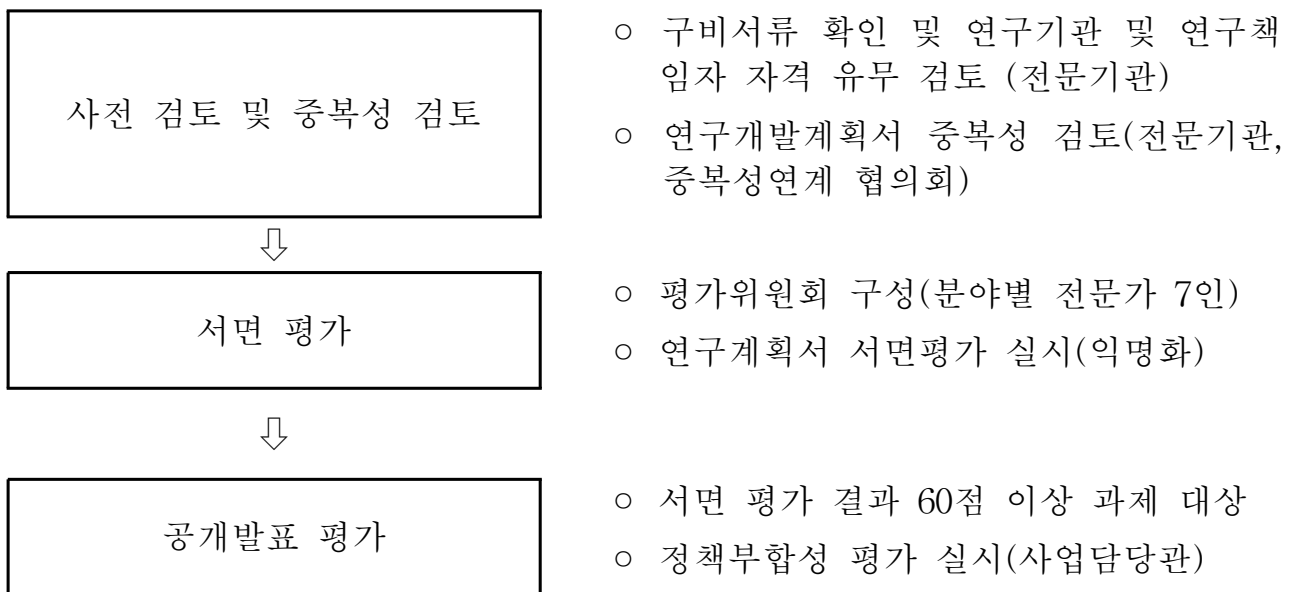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

- 연구개발목표의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 기대되는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대되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우선순위

- 고부가가치, 수출촉진,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
- 실용화, 산업화가 가능하여 영농현장에 과급효과가 큰 과제

○ 과제 선정평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공개발표평가 후 농림기술개발과제 최종 선정 : ~ 2009년 4월
 - 농림기술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2009년 5월
 -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주관연구기관

- 연구협약서 제출 : ~ 2009년 5월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사업단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

- 연구협약 체결 : 2009년 5월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술개발 출연금을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배정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협약서와 연구개발비 청구에 의거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자금을 지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후 연구결과·연구성과 등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보고
- 주관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세부 또는 협동, 위탁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

- 중간평가 실시
 - 평가시기 : 당해연도 협약종료 전
 - 평가사항 : 연간 연구수행 현황 및 연구수행 결과 등
 - 평가 결과에 따라 하위 10%의 과제에 대해 과제중단 등의 조치 시행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개발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관 사업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기술실용화기업 등
 - 점검시기 : 당해년도 협약 종료 시점 실시
 - 점검사항 : 연구수행 실적 및 계획, 산업화노력, 기업채무, 애로사항 등
 - 점검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농림기술관리센터 사업담당관이 공동으로 연구 및 사업화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 및 실사

《제재》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정산) 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집행잔액)을 회수

농림수산식품부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분야 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
 -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 기술실시 계약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 및 실시하고 있는 경우 : 3년 이내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감사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 : 1년
 - 그 밖에 사업관련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1년
- 위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

6. 성과측정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수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시점 이전까지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연구성과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각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종료와 함께 제출된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활용계획서’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연구성과활용실적 사후추적평가》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

- 농림기술관리센터는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매년 각 과제별 연구성과를 측정
-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항목 및 기준을 참고하여 사후추적평가
 - 평가대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의 과제 중 연구종료 후 3년 경과 과제
 - 평가사항 : 연구성과 도출 및 산업화실적, 농림업 연계효과 등
 - 평가방법 : 농림기술관리센터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평가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신규과제 제안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종 정부포상대상자로 추천하며, 불성실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사업(R&D프로그램) 성과평가》

- ※ 농림기술개발사업(R&D사업) 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농림수산물부품평가로 구분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정부 R&D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와 연동하여 사업 성과평가 실시

《환 류》

- 매년 실시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에 반영
- 중간평가결과 “계속”과제의 경우 차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하위 10%는 중단과제로 분류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간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체결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조사목적 : 농림기술개발사업 정부지정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
- 조사시기 : 2009년 7월경
- 조사기관 : 농림기술관리센터 기획예산팀(02-2041-7515)
- 조사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 산·학·연 전문가 10,000여명(농림기술관리센터 인명DB등록 전문가) 및 관련기관 소속 연구자
- 조사방법 : 수요조사서를 첨부한 E-mail 발송 및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작성·접수토록 함
- 결과활용 : 접수된 수요조사내용은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분석하여 농림기술개발사업 신규기획과제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농촌자원과·작목기술과입니다.

구 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식량작물시범사업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	과 장 최경주 지도관 김완석	031-299-2700 031-299-2701
소득작목시범사업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	과 장 최경주 지도관 김완석	031-299-2700 031-299-2701
환경보전농업기술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	과 장 최경주 지도관 김완석	031-299-2700 031-299-2701
농촌 생활기술시범 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 장 이명숙 지도관 박경숙	031-299-2670 031-299-2671
도시 생활농업지원 시범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 장 이명숙 지도관 박경숙	031-299-2670 031-299-2671
농산물 품질고급화 시범사업				
- 탐라이스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과	과 장 최경주 지도관 김완석	031-299-2700 031-299-2701
- 탐프루트	농촌진흥청	작목기술과	과 장 김영철 지도관 지용주	031-299-2870 031-299-2876

I. 사업개요

1. 목 적

- 새로운 기술·품종·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
-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소득작목의 주년생산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시용량 절감 기술보급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과 가축분뇨
정화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촌생활의 질 향상

2.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1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시범사업을 통한 새기술의 보급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보급기술 건수(건)	92	92	90	90	익년 1월	사업예산 및 인력 등의 투입에 비하여 목표한 최종산출이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최종 과제수
▪ 새기술 보급 만족도 (%)	72	71	72	72	익년 1월	시범사업 참여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결과와 농진청 설문시스템(PCRM) 이용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
합 계	213,810	26,532	37,010	37,036	121,209
보 조	106,905	13,266	18,505	18,518	60,604
용 자	-	-	-	-	-
지방비	106,905	13,266	18,505	18,518	60,604
자부담	-	-	-	-	-

II.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농가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회원,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
-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생산자 단체 및 농가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 할 수 있는 지역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농가 또는 단체
 - ※ 본 사업은 새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확산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09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시군농업기술센터 등)로 선정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09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비 등
 - ※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09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5백만원 ~ 200백만원(세부사업별로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 참고)
 - ※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대상 농가의 자부담금은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규모 : 세부사업별로 금액이 다름(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참고)
 - ※ 세부사업내역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요령,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 시달(전년도 12월 말)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홈페이지 등에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등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사업대상 품목의 생산현황, 영농규모, 사업 여건), 사업목표(추진방향, 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심사를 하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실사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의 평가에 의하여 사업대상자 선발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현장평가 실시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현장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
 - ※ 사업특성상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판단에 따라 선정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추후 산학협동심의회에 통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산학협동심의회 등에 상정하여 사업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확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 대상 농업인에서 통보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통지
- 사업대상 농가는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시행계획서 승인 후, 사업 대상자가 영농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할 수 있음

※ 세부추진계획과 지원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지원대상 사업자는 사업 신청서와 최종 확정 지원액 등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완·시행

4. 자금배정단계

사업 시행자(농업인 등)

- 사업 시행자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사업비 교부요청서 및 지출 요청서 제출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지자체)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절차에 의거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가 교육 및 현지 기술지원을 실시
- 사업 추진성과를 주변 농가에 확산하기 위하여 사업평가회, 홍보 등을 실시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확인

《제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장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6. 성과측정단계

<기술수용율 조사>

- 사업 대상농가의 시범사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새기술 수용율 조사
 - 평가기관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3월)
 - 주요평가지표 : 기술수준 향상률, 농가 소득증대를, 노동력 절감률 등
 - 성과측정(11월~익년도 1월) : 세부시범별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성과를 비교하여 측정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시범사업 추진실태, 기술지도 서비스, 지원자금의 적정성 등 사업운영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농정현장 중심으로 시범사업 수혜농가 등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1월 중(10일간)
 - 조사대상 :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등 세부사업별로 100명
 -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를 통한 설문조사
 - 주 최 : 농촌진흥청 사업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세부사업별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 등 지원 확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등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세부사업간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 평가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하여 평가 실시
- ####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촌진흥청 세부사업별 담당부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협조)

- 평가기간 : 11월~12월 중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선정된 시범사업 중 일정 비율을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
- 평가기준 :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

《환 류》

- 농촌진흥청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 평가에 의하여 새기술 수용율이 낮거나 사업대상자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사업은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 구조조정 실시
- 특히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은 새기술 수용율 또는 사업 대상농가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 차년도 지원대상사업에서 폐지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거주지역 농업기술 센터에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문의하시기 바람
- ※ 문의시기 및 신청방법 : 1~2월 중(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시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연중 문의 바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역 농업기술센터로 문의 바람

2009년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별	사업량	지원단가	담당부서
식량작물 시범사업	-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	16	100	현장기술지원과
	- 쌀품질관리 기술보급	10	200	현장기술지원과
	- 벼 수확후 관리 기술보급	10	30	현장기술지원과
	-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12	200	현장기술지원과
	- 벼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시범	15	30	현장기술지원과
	- 토종씨앗 증식포 운영	10	4	현장기술지원과
	-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시범	10	25	현장기술지원과
	- 내재해성 철재해가림 시설보급	15	20	현장기술지원과
소득작목 시범사업	- 딸기로알티 대응 우리품종 우량묘 생산	40	20	현장기술지원과
	-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 시범	16	50	현장기술지원과
	- 로알티 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 시범	30	16	현장기술지원과
	-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	7	80	현장기술지원과
	-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 기술보급	20	15	현장기술지원과
	- 지하수 저감형 수막재배 시범	20	20	현장기술지원과
	-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20	50	현장기술지원과
	- 시설과채류 저온기 무가온 및 생력재배 패키지	10	50	현장기술지원과
	- 파프리카용 고축고 1-2W형 비닐하우스 구조보강	10	36	현장기술지원과
	- 감귤류 고품질생산 종합기술투입	20	20	현장기술지원과
	- 과수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20	20	현장기술지원과
	- 과수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	10	120	현장기술지원과
	- 과실 수확 후 관리 종합기술 투입	16	15	현장기술지원과
	-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40	15	현장기술지원과
	- 안정화 음원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14	25	현장기술지원과
	-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20	15	현장기술지원과
	- 친환경 흑염소 생산 시범	10	50	현장기술지원과
	- 안전 고품질 축산물 종합생산 시범	12	200	현장기술지원과
-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10	20	현장기술지원과	
- 사료비 절감 가금류 생산성 향상 시범	10	50	현장기술지원과	
- 양질 자급 조사료 공동생산 이용 시범	20	35	현장기술지원과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	- 친환경농업 종합시범단지	4	937.5	현장기술지원과
	- 가축분뇨처리 효율 개선	30	30	현장기술지원과
	- 가축분뇨처리활용자연순환농업시범단지육성	10	120	현장기술지원과
	-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시범	10	30	현장기술지원과
농촌생활기 술시범사업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6	100	농촌자원과
	-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20	20	농촌자원과
도시생활농업 지원시범사업	- 가정원예활동 생활화 시범	20	39	농촌자원과
	-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	20	50	농촌자원과
	- 도시민 농촌생활지원(소비자의 방)	8	50	농촌자원과
	-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 시범	10	38	농촌자원과
농산물품질고 급화시범사업	- 탐라이스 생산기술 시범	42	100	현장기술지원과
	- 탐프루트 생산기술 시범	55	50	작목기술과

【농촌개발분야】

Ⅲ. 인력육성

① 창업농업경영인육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승환 사무관 조강제	02-500-1730~1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과 장 노순현	02-2080-6785
시·도, 시·군·구	농정 담당 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을 발굴·육성하여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유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600명 수준의 창업농업경영인을 선발 육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창업농업경영인 선정 자수	1,600	1,543	1,507	1,705	익년도 3월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437,630	83,000	88,000	88,000	772,000
용 자	2,437,630	83,000	88,000	88,000	772,000
○ 창업농업경영인 - 용 자	2,437,630	83,000	88,000	88,000	772,0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확정한 자
- * 단, 이미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 낙농분야의 납유처 미확보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는 자
 - 다만, '09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 이하인 자 중 영농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자
 -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군인 중 전역희망자와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판단 하에 선정 조건 변경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귀농정착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 영농승계라 함은 신청자가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부모 또는 형제의 영농기반을 상속, 증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계획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확인)를 말함(단, 창업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로부터의 영농승계 제외)

3.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농업창업비용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정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농업창업 비용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 단, 한(육)우 구입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 금융기관자금 70%
- 금리 및 용자기간 :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단가 :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0~12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하되, 35세 이하는 20~120백만원을, 35세이상~45세 이하는 20~50백만원을 지원
 -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농산업인턴제 10개월 이상 참여자, 해외농산업인턴 참여자, 도시민 농업창업과정, 농과대 영농정착과정 이수자 또는 농고 현장체험 이수자에 대해서는 최고 2억원까지 차등지원 가능
 - * 단, 교육이수 결과와 예산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하며, 낙농분야는 5천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5. 3년 자금대출제 및 자금Pool제

- '07년부터 창업농업인으로 선정된 후 개인별 지원한도액 중 1차 년도에 사업비 40%이상 대출시, 잔액은 2년간 대출할 수 있는 3년 자금대출제 시행

- * 1차년도에 사업비 40%이상을 대출받지 않은 자는 잔액도 대출 불가
- 창업농업인이 원하는 시점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수준의 자금을 확보하는 「자금 Pool제」 동시 추진
- '07~'08년도 선정된 창업 및 신규후계농업경영인중 사업비의 40%이상을 1차년도에 대출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지원

6. 용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m², 밭은 15,125원/m²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2009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지침 수립 시달
- 2009년도 시·도별 예산배정, 대출기관별 대출한도 배정

시·도, 시·군·구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9. 1월
 - 농업관련 전문지,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사업신청서 접수 : 2009.1.1~2.10까지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로 관리하여야 함

융자금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농협의 경우, 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

- 신청시기 : '09년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2월 10일까지, '10년도 창업농업인은 사업시행전년도 2월 10일까지 신청
 - 접수처 : 영농정착(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가족관계등록부 1부,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함) 1부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자금한도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10년 창업농업경영인('09년 추가선발 창업농업인 포함) 후보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합계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 등의 장이 추천한 자(평가점수 30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 후보자(사전교육을 이수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정의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조치
 - 다만, '09년도에 추가로 선발하는 창업농업경영인은 '09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09년 2월말까지 지원대상 후보자 결정 없이 지원대상자 선정 추진
 -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는 사업시행 전년도부터 시행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중인 경우에는 농정심의회 이전에 융자취급기관을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별도 지침에 의거 교육이수실적을 반영한 창업농업경영인 선발을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
 - 지역 농업여건과 품목별 전업농가 육성대상자수·농가호수 등을 감안하

여 품목 간 균형 있게 창업농업경영인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함(이 경우 품목간 순위부여 등 객관적 근거 마련)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공통기본교육 및 공통전문교육 미이수 포함)를 제외하고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선정예정인원의 20%수준 내외를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농·공(중)고 자영농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순수 농업 전문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각 대학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에 배정하여 동학교 출신자를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함. 단, 상기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가 20%에 미달할 경우 일반 농대 및 농업전문대, 농고 출신으로 충원(농업계학교 출신 우선선발 원칙)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11) : 여주자영농고, 춘천농공고, 강원도 주천종합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는 창업농업경영인 선발대상에서 제외.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
-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전 세대 이주가 확인된 자, 여성, 농업계학교 출신자, 관련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정
- 시장·군수는 시·군·구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배정되면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확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출신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교육의무 미준수 포함)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확정

- 한국농업대학 졸업자(사업시행년도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평가기준으로 300 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지원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장·군수는 시·군별 선정예정인원의 20%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부부가 모두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자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의 주사업 품목이 각각 다를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 시장·군수는 교육을 이수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신청자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시·군 농정심의회(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에서 대체
- * 사업주관기관은 창업농업경영인의 선정전에 용자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필요시 대상자교체 혹은 신속한 자금집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시의 계획 변경신청시 타당성을 검토하여 농업여건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변경을 승인

용자취급기관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창업농업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융자취급기관에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 pool제에 의하여 대출한도를 총괄하여 관리하되 대출이 필요한 경우 계통조직에 자금 배정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창업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의함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 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업경영인이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자금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의 기성률에 의한 분할인출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공정률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 받아 대출
- *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용자금)을 당해연도 내에 용자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됨. 다만, 한국농업대학 졸업자는 제외

5. 이행점검단계

시·군·구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용자금 지원 연도부터 용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용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제재》

- 시장·군수는 창업농업경영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단,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창업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영농승계를 위하여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영농승계 계획에 의한 영농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2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허용 가능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작목의 특성,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 영농에 종사할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편입 후 6년 이내에 영농을 중단할 목적으로 자금을 상환할 경우 기 납부한 이자 등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토록 조치

《사업장소의 이전》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시·도, 융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및 보고

-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용자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전 관할 용자취급기관과 이전 후 관할 용자취급기관은 행정기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

《창업농업인 교체·승계》

- 시장·군수는 9월말까지 대출실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시 예비대상자 중 우선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용자취급기관에 통보
 - 이 경우, 최근 1년 이내 당초 사업계획보다 자금을 적게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아울러, 6개월 이상 창업농멘토제에 참여한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자금 용자 후 창업농업경영인의 사망·신병 또는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키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는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 결정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반드시 창업농업경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와 보증인을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
 -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승계시킨 경우 그 결과를 관계기관(용자취급기관 등)에 통보

《보고》

- 시·도지사는 '09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선발결과(별지 제3호 서식)와 '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09. 3. 20일까지 Agrix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제 제6호 서식)을 반기익월 20일까지 Agrix로보고
- 용자취급기관장은 용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과 지원자금 회수 불가능한 사업취소자 현황(별지 제9호 서식) 등을 반기 익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시·군의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점검 실시
 -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창업농업경영자수(명), 영농정착률
- 창업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하반기,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0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실시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실시

《환 류》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반영

8. 기타사항

- 사업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지침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추진요령에 의함
- 각종 서식(별지 제1~12호 서식 및 별표 제1호 서식)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영농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지역(읍·면지역 제외)과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시, 광역시 등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2.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 ※ 2010년도 창업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10년도 창업 농업경영인 신청을 하여야 함

3. 신청절차

- 2010년 2월10일까지 신청서 제출기관에 신청

4. 구비서류

-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 영농승계 확인서 및 영농승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직업 확인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신청일 기준 재직중인 자에 한함) 1부
 - ※ 단,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기타사항

- 창업농업경영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계획은 별도 통보 예정)

② 농산업인턴제 및 창업농멘토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경영인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경영인력과	과장 김승환 서기관 조강제	02-500-1730~1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 농산업인턴제

I.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잠재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를 통해 농업 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산업인턴 250명을 확보하여 신규인력 유입 촉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 지	'07	'08		
▪ 농산업인턴제 확보수	250	217	111	200	익년도 3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소 계		1,000	600	1,200	1,507	13,800
농산업인턴제	보 조	700	420	840	1,055	9,660
	지방비	300	180	360	452	4,14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산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 18~44세 이하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시행년도 3월31일 현재 농고(3학년)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자
-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2)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6백만원까지, 예산이 허용되면 7.2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월보수로 지급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인턴 희망시 예산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간 사업물량 배분 및 사업홍보
- 시·군 : 사업시행주체
 -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 신청접수 및 선정, 인턴 선정대상자·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 및 사업 사후관리
 - 읍·면·동이 인턴 및 선도농가 대상자 추천 가능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2008.1.9~2.25(기간 연장 또는 단축가능)
- 신청시 제출서류 : AgriX시스템에 등록된 신청서 출력 활용
 - 농산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시·도, 시·군·구

가. 농산업인턴 대상자 선정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인턴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 대상자 선정 추진
- 시장·군수는 인턴대상자 선정시 농과계 출신자, 연령 낮은 자, 후계농업인 자녀 순으로 선정
- 인턴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별지 제4호 서식)을 통해 최종 선정
* 약정체결시 인턴대상자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담 연수를 위하여 가급적 선도농가당 5인 이내의 인턴을 배정

나. 선도농가 선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선도농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장·군수는 선정된 선도농가 중 인턴 희망자와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업인턴제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에 지침 시달

가. 약정 체결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개 선도농가는 가급적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 채용 가능
- 선도농가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인턴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인턴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인턴약정 시 선도농가가 전액 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후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턴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선도농가와 인턴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관내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교육·연수 제공 및 인턴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함
- 선도농가는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업주관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및 사업비집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가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에서 인턴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1/2를 한도로 월 60만원까지 지원하되, (별지 제5-1호 서식)의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 선도농가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농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의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토록 한 후 선도농가의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혹은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AgriX을 통해 보고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농산업인턴제,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인턴과 선도농가의 약정체결 적정여부, 농업인턴 대상자·선도농가 선정기준 적정여부 및 안전공제 가입여부 등 확인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및 인턴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선도농가 pool를 구축해야 하며, 인턴대상자가 창업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장·군수는 선도농가 지정결과를 2008.2월말까지, 시·도지사는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농산업인턴제 추진현황(결과)보고를 Agrix를 통해 전산보고
 -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약정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제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농산업인턴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농업인턴 확보수 등

《만족도 조사》

- 인턴제 대상자 집합교육을 통해 년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기관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8. 기타사항

- 동 지침관련 서식(별지 제1~5호 서식과 별표 1)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접수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 주 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 접수기간 : 2010.1.1~2.25

나.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추진절차 개요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이 인턴대상자와 선도농가를 연계
- * 선정절차 : 시·도로 인턴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시·군으로 사업량 재배정(시·도) → 선도농가 및 인턴 희망자 신청 접수(시·군) → 필요시 사업량 조정(농식품부, 시·도) → 인턴대상자 및 선도농가 확정·시행(시·군)

라. 구비서류

- 인턴대상자 : 농산업인턴제 연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제 인턴 채용자(선도농가)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농산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 신청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출력하여 활용

2. 기타사항 : '0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0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㉔ 창업농멘토제

I. 사업개요

1. 목적 및 방향

- 창업농업인의 영농시 문제해결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영혁신 유도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00명씩의 창업농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까지	'07	'08		
창업농 선정	100	208	121	100	익년도 3월말	확보수/목표치 (시도 선정결과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1,000	500	500	500	7,350
창업농멘토제	보 조	700	350	350	350	5,145
	지방비	300	150	150	150	2,205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창업농 및 멘토(후견인)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 창업농멘토제 지원대상자는 2005년도~2009년도에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예정인) 자
 -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 정부의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받고 있는(예정인) 자는 제외
- 멘토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 및 농학계 대학교수 등 농업전문가

3. 지원대상 및 조건

- 창업농업인은 멘토를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 받음
- 창업농업인을 돕는 멘토에 대해서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로 창업농 1인당 월50만원 한도로 자금 지원
 - 단, 시장·군수는 약정체결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농의 희망시 예산과 일정을 고려하여 12개월까지 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 최대 24개월까지 허용(다만, 12개월 초과분은 익년도 예산으로 약정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 립 부

- 농림부는 사업별 신청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 전달

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군·구간 사업물량 배분 및 홍보
- 시·군은 사업시행주체로서 지원대상 창업농·멘토 신청접수
 - 읍·면·동에서 지원대상 창업농 및 멘토 대상자 추천 가능

신 청 자

- 시·군(읍·면)의 담당과에 사업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1.1 ~ 2.25
- 신청서류 : 접수처 시·군(읍·면) 사무소에 비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되 각 시·도의 약정체결 절차 1차 완료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 농림수산식품부는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시·도, 시·군·구

가. 창업농

- 대상자수의 배정
 - 시·도지사는 시·군별 지원 예산 배정 및 조정
 -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여부와 연수 기간 및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하여 사업량 조정
- 선정 방법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별 후보자 목록을 작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창업농 자금지원 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창업농업경영인의 자녀 순으로 선정
 - 대상자 선정은 선도농가와의 약정 체결을 통해 최종 선정
 - * 창업농과 멘토를 연계할 때에는 창업농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농과 멘토를 일대일로 약정 추진

나. 창업농 멘토 선정

- 선정기준
 -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 중에 해당되는 자
 -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경영체)로서 5년 이상 영농경력자과 전문적 기술을 갖추었거나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신지식농업인, 전통식품 명인
 -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 농과대학(산학협력단). 단, 해당 기관(대학)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 가능

○ 선정 방법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받은 창업농 멘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
- 시·도지사는 창업농 멘토 목록을 (별지 제3-2호 서식) Agrix에 등록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창업농멘토 기본지침을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시·도에 지침 전달

시·도, 시·군·구, 사업대상자

가. 약정체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창업농멘토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도록 함
 - 약정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1명의 멘토는 가급적 3인 이내의 범위에서 창업농 멘토 유도
- 창업농 멘토는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약정승인 요청

나. 지원금액 결정 및 약정의 효력

-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 운영계획서 및 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약정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창업농 멘토, 창업농과 약정을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1차 약정 승인결과를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창업농을 추가 선정 가능한 경우 추가 약정 추진
- * 시장·군수는 지원결정 및 지원금액 통보시 본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창업농가와 창업농멘토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다.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등

- 중대한 허위 사실로 약정체결시 약정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변경하고 필요시 추가 약정 체결 추진
- 약정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혹은 약정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약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체결 및 지원금액 결정의 예에 따름
- * 창업농과 및 창업농멘토는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 약정이 가능하며, 이때 최소 1개월전에 시장·군수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 타 창업농 및 창업농멘토와 약정체결을 추진
- 약정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후순위자 등에 대해 신규 약정 체결 가능

라. 약정이행

- 멘토는 약정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후견을 이행하되, 창업농에 대한 후견내용을 일지 형식(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작성하고, 사업집행 1개월 단위로 추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멘토는 월 6회 이상 멘토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멘토활동의 방식은 최소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멘토를 실시하여야 함
- 창업농은 멘토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자유양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멘토의 멘토내용이 당초 계획에 미달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약정 변경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멘토가 제출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창업농의 의견을 들어, 약정 변경·해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

시·도, 시·군·구

-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지원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현장확인 후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5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현장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위점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재작성 혹은 약정의 이행을 촉구
 - 1차 시정 촉구 후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 * 멘토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시 창업농멘토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사업대상자

- 멘토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추진결과를 사업추진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
- 멘토는 창업농멘토제 추진결과보고서(상황보고서) 제출시 시장·군수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이행여부, 관리현황 등을 파악
-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사후관리 및 점검(6월, 11월)
 - 멘토의 매월 최소 6회이상 멘토활동과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 여부 등

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창업멘토 지정결과를 Agrix를 통해 2009.2월말까지 전산보고 (별지 제3-2호 서식)
- 시장·군수는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창업농멘토제 추진현황(결과)을 Agrix를 통해 전산보고(별지 제3-2호 서식)

사업대상자

- 약정사항의 성실한 이행
- 멘토는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 수행
 - 후견활동의 방식은 3회이상 창업농을 방문하여 후견 실시
- 창업농은 멘토의 후견내용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일지 작성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연말에 사업목표치 대비 각 시·도의 창업농, 창업농멘토 확보 인원수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창업농 및 창업농멘토 확보 인원수 등

《만족도 조사》

- 창업농과 창업농멘토 대상 년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시기 및 기관 : 매년 11월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우리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반영
- 우리부 평가 전담부서의 농림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8. 기타사항

- 동 지침관련 서식(별지 제1~5호 서식과 별표 1)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창업농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읍·면)의 담당과

- 접수기간 : 2010. 1. 1 ~ 2. 25

※ 사업신청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나. 신청자격 : '09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창업농업경영인이 후견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후견인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 받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장·군수가 최종 선정하면 사업시행
- 시장·군수는 선정된 후견인중 창업농과 연계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라. 구비서류

- 창업농 : 창업농 지원대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창업농멘토 : 창업농멘토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창업농멘토제 운영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 * 신청서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서 출력하여 활용

2. 기타사항

- '0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0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③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승환 서기관 조강제	02-500-1730~1731
시·도/시·군		농정관련부서 농업기술센터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총무국장 김휘승	02-3401-6543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자금지원팀	과 장 노순현	02-2080-6784
금융기관	신용사업부		

I. 사업개요

1. 목적 및 추진방향

-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1,500명 수준의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전문인력의 확보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추가지원대상자 선정자 수	1,450	1,829	1,772	1,670	매년 3월말	선정자수/목표치 (시도 선정 결과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20,000	120,000	120,000	116,000	580,000
보 조	-	-	-	-	-
용 자	120,000	120,000	120,000	116,000	580,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된 창업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 단,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60% 이내로 함)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원예(채소·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영농 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의 설치
 - * 지원 제외대상(예시)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 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시설의 설치
 - *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 분야 후계 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만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

3.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재원 : 금융기관자금 100%
- 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 융자 10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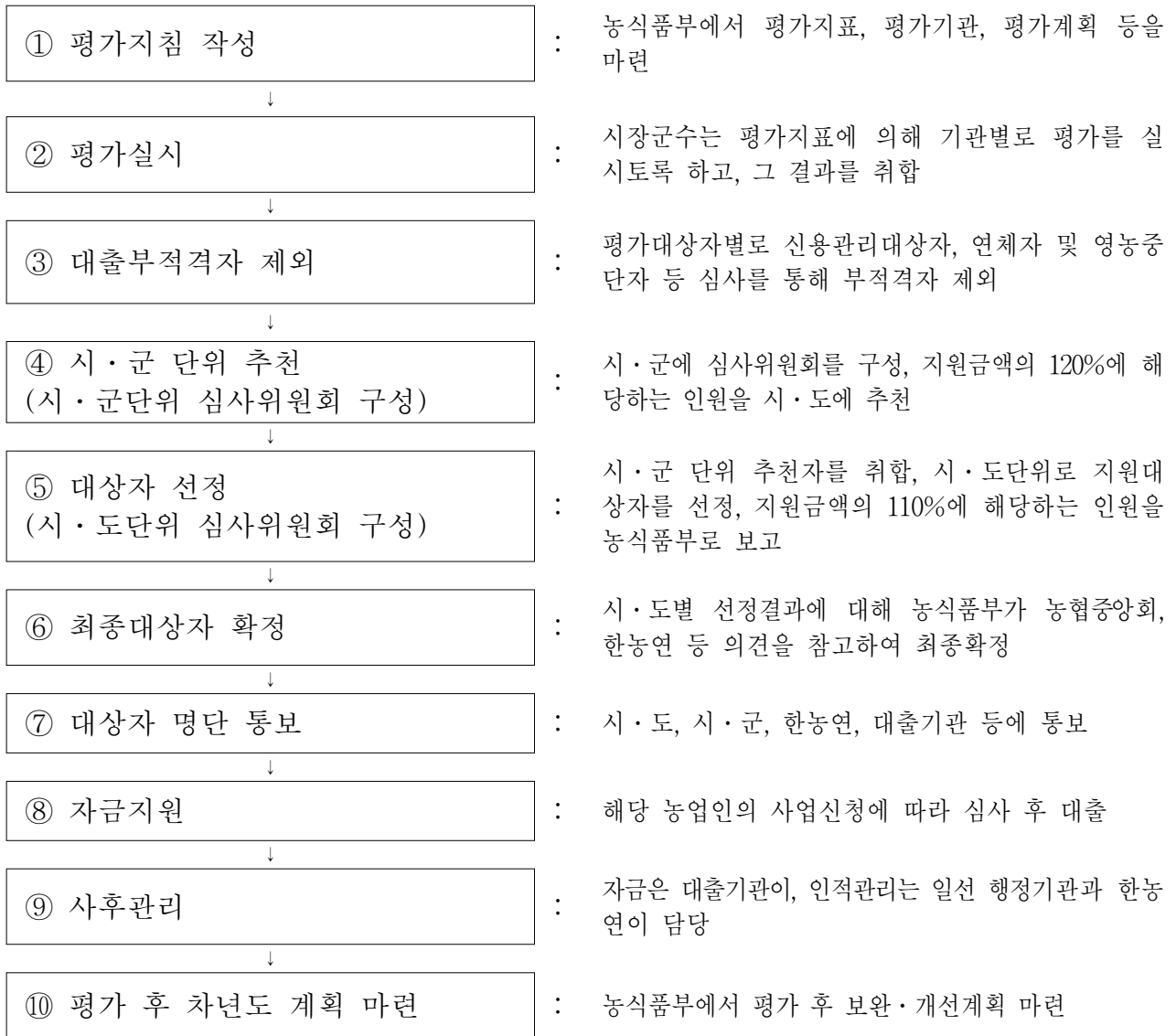
4. 용자시 기타 유의사항

- 경종분야 농지구입자금은 지목상 논·밭·과수원에 한하며, 논은 12,100원/m², 밭은 15,125원/m²까지 지원(기 식재된 과수·묘목 등은 제외)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할 경우 지원)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등 기존의 영농시설물(중고농기계 제외)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신고가격 검증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신고가격을 확인(행정기관이 확인, 금융기관이 재확인)하여 당초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회수 등의 조치 강구

5.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시·군·자치구 또는 농업기술센터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평가, 시·군단위 심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후관리 총괄
- 시·도 : 지원대상자 선정,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대상자(후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용자취급기관 : 사전 신용조사, 사업비 지원, 지원용자금 관리
- 외부 평가전문기관 : 지원대상자 평가 및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 협조
- 한국농업경영인증연합회 : 지원대상자 평가, 심사위원회 참가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대상자 등을 반영한 농림사업시행 지침서를 수립하여 각 시·도에 시달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배정, 대출한도를 배정

시·도, 시·군·구

-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9. 1월
 -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하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을 통해 공지
- 사업신청접수 : '09. 2. 15일까지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전산(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단계별 추진현황을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함
 - * 추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AgriX에 신규 입력방식이 아니라 기 선정된 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DB 조회방식이므로 반드시 사전 입력 필요

융자 취급 기관

- 농협중앙회(지역조합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중앙회)은 사업비 확보 및 대출시행 준비
 - 융자취급기관의 장은 융자금 지급 및 회수와 이자 징수에 관한 업무를 자금지원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선조합(지점 등)으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농협의 경우, 경종 농업분야는 농협, 축산분야는 축협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함

신청자

- '09년 2월 15일까지 영농종사지역의 시·군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준비하여 사업신청
 - 신청자격은 2003년 12월말까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자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선정결과를 취합한 후 융자금 취급기관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① 평가 및 시·군의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별표1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평가지표별 점수 환산 등을 거쳐 그 결과를 취합
 - 한농연과 외부 평가기관은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표와 평가결과를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평가결과 총점이 50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
 - 시장·군수 및 농협은 심사위원회에 상정에 앞서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0조 내지 제23조에 따라 사전 신용조사실시 등을 통해 대출부적격자 제외 조치
 - 시장·군수는 전문가, 농협, 농신보,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15명 이내의 시·군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의 평가의 적정성, 자금지원 시 결격사유 검토 및 추가지원 후보자 선정
- 시장·군수는 평가기관별 평가결과를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 우수한 우수농업경영인을 시·군별 지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별지 제2호 양식으로 시·도에 보고
 - 다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군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② 시·도의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군의 결과를 취합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군, 전문가, 농협, 한농연 등이 참여하는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시·도지사는 시·군단위 추천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시·도별

지원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숫자의 후보자를 순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 보고

- 다만, 지원대상 후보자의 지원예상금액의 합이 당초 해당 시·도에 배정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도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 가능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대상자 승인 및 통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및 한농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 농협, 한농연 등에 통보
- 각 시·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시·군·구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할 경우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후에는 동 신청서의 사업추진계획을 확인·관리
- 사업추진확인서의 발급(별지 제4호 서식)

융자취급기관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및 집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년도 자금지원액이 확정되면 시·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배정

시·도, 시·군·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에게 융자금을 통보하고 사업추진 독려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따라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융자취급기관에 통지

융자취급기관

- 융자취급기관은 해당 우수농업경영인 사업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시행
- 융자취급기관은 융자금대출실적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 융자취급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과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에 의하며, 지원대상자인 우수농업경영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선도농 우대보증을 받을 수 있음
 - ※ 이자는 연 1회 후취(대출일 기준 만 1년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대상자가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이자납부 시기 조정 가능

사업대상자

- 자금지원대상자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 가능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초 금융기관에서 확인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실제 자금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축사신축 등 상당한 날짜(2개월 이상)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계획(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분할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함(기반시설 등 사업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금 일시 전액 인출 가능)

5. 이행점검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용자금의 목적외 사용방지를 위한 사업자 선정 적정여부 등 점검
 -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반기별 1회 이상(11월)

시·도, 시·군·구 및 한농연

①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용자금 지원 연도부터 용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확인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용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 등은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자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한농연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지원자금의 타용도 전·유용 및 사업장 이탈시 시·군 등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

② 제재

- 시장·군수는 우수농업경영인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기타 시장·군수 등이 우수농업경영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단, 농업계 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창업농업경영인 자격을 유지하고 재학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재학증명서 징구)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이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겸직 허용 가능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시정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융자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단, 무단이주 또는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경우 15일 이내)
 - 융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융자취급기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
 -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 회수를 통보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지원자금을 회수

③ 지원대상자의 교체

- 시장·군수는 '09년 11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없는 자는 당초 평가결과 예비대상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교체하고, 그 결과를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 한농연 시군지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이 당초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지원자금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군에 협조하여 예비대상자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④ 보고

- 시·도지사사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09년 7월 30일까지 Agrix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Agrix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장은 융자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09. 7월 이후 매달 익월 20일까지 Agrix 보고
- 주요일정 등 행정사항
 - 시·군, 한농연 및 외부전문기관의 평가(2.20~4.20) ⇒ 시·군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도 보고(5.15일한) ⇒ 시·도의 심의위원회 심의 및 농림부로 보고(5.30일한) ⇒ 농림부의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및 대상자 확정·통보(6.15일한)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6.30일한) ⇒ 자금지원(7.1~익년도 6.30)
 -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농업경영인육성 등 실시 및 자금운용 특례규정에 따라 자금 대출기한을 익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 가능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및 만족도 조사》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 비율(선정자수/목표치)로 평가
 - 성과지표 : 우수농업경영인수(명)
- 우수농업경영인(최근 5년)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및 조사방법 : 12월중,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평가 계획에 따라 사업평가 시행 예정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 결과 예정

《환 류》

-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반영
 - 성과평가결과 경영우수 창업농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9. 기타사항

- 각종 서식(별지 제1~9호 서식, 별표 제1호 서식 및 붙임 1서식)은 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Agrix)시스템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

IV. 201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 각 시·군은 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각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등을 통해 공지

나. 신청자격 : '09년 대상자와 동일함

다. 신청절차

- 2010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기관에 신청
- 신청자격 : 2004년 12월말까지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2004년도 후계농 사업대상자)중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라. 구비서류

-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다만, 평가에 필요한 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 등)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 추가 요구 가능

2. 홍보

- 창업농업경영인 자금대출 관련 팜플렛 제작·배포('09. 6월)
- 연찬회개최 : 사업담당자, 관련기관·단체 200명('09. 12월)

3. 기타사항

- '09년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2010년도 사업지침 확정 예정

46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수산정책과	과장 김승환, 사무관 박영근 과장 서재연, 사무관 김동욱	02-500-1729, 1733 02-500-2302, 2358
시·도	농어업담당부서(농업정책과, 농정유통과, 수산진흥과 등)		
시·군	농어업담당부서(농산과, 산업과, 수산과 등)		

I. 사업개요

1. 목 적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인증)의 컨설팅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능력 향상
 - 경영일반, 특수한 경영문제, 양식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기술(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2.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컨설팅 전·후의 소득증가율	7%	-	-	7%	2010. 1	▪ 컨설팅 대상농가 중 10% 샘플 조사 - 당해 연도농업소득/전 년도 농업소득 * 조사대상 : 지역, 품목 고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3,984	8,640	9,600	11,040	45,840
보 조	17,064	4,320	4,800	5,520	22,920
지방비	8,526	1,728	1,920	2,208	9,168
자부담	18,394	2,592	2,880	3,312	13,752

* 제주균특 480백만원, 수용비 80백만원 미 포함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 : ①원예·특작농가 ②축산농가 ③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자) ④쌀 전업농 ⑤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⑥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⑦농촌관광 ⑧친환경농업
- 어업 : ① 어선어업(내수면 어업 등 포함) ② 양식어업(내수면 포함) ③ 종묘생산업 ④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⑤ 어촌계

2.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 농업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여성농업인 : 1억원 이상) ③한우·젓소 : 50두 이상 ④돼지 : 1천두 이상 ⑤양계 2만수 이상 ⑥꿀벌 200군 이상 ⑦쌀전업농 ⑧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이상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 RPC(미곡종합처리장) ⑨농촌관광 ⑩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⑪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를 인증받은 농가

* 다만, ⑧의 조직은 농식품부에서 업체평가 결과 상위 업체를 선정

- 어업 : ①어선어업(10톤이상, 정치망어업 10ha, 정치성 구획 7ha. 이동성 구획 3톤, 내수면 0.9톤 이상) ②양식어업(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해조류는 10ha이상, 패류양식 중 수하식은 5ha, 바닥식은 7ha, 가두리식은 1.5ha이상, 어류양식 중 축제식은 2.5ha, 가두리식은 1.5ha이상, 어류양식 중 가두리식은 1.5ha, 축제식은 2.5ha이상, 우렁쟁이 5ha이상, 복합양식 중 수하식·바닥식·혼합식은 10ha, 축제식은 2.5ha이상, 내수면양식 중 가두리식은 2,000㎡, 수조식은 250평, 지수식은 450평 이상 ③종묘생산업(육상수조식은 어류 250평, 패류 200평, 해조류 5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해상은 2.5ha이상) ④수산물 유통·가공업체 ⑤어촌계
- 공통 필수사항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창업농어가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우선순위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우선 선정하고, 다음 각호의

적용으로도 순위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계획(평가표 등)을 마련하여 선정

- 농업 : ①컨설팅 교육 이수 농가(농업인 정책교육 포함), 고품질 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농업경영인 MBA 등) 이수 여성농업인 ②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③ 자원순환농업 농가 ④ 지역농업클러스터 참여 농가
- 어업 : ①어촌계 ②친환경 수산물 생산 경영체 ③컨설팅교육(수산정책 교육 포함) 이수 경영체 ④여성어업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컨설팅 업체의 자문비용(시설·장비구입자금,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1, 2년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3년차 :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 4년차 이후 : 전액 자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기준 개별농어가 8백만원, 법인·업체 : 10백만원
 - 공동마케팅 조직·산지유통전문조직·APC, RPC, 어촌계 : 3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군(기초 지자체) : 농정담당부서에서 총괄

- 컨설팅 희망농어가로부터 컨설팅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를 접수받아 업종별 수요를 구분하여 도에 제출

시·도(지자체) : 농정담당부서에서 총괄

- 시·도는 시·군의 컨설팅 수요를 토대로 컨설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 내용 : 컨설팅 사업추진 방향, 수요 농어가수 및 소요 사업비 등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는 농식품부에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계획과 지역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 배분

2. 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 통보(연도초)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사업대상자, 어촌계 선정·통보

시·도(지자체)

- 시·군의 컨설팅 수요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
 - * 특정품목 등에 50%(사업비 기준)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유의

시·군(기초자치단체)

- 배정된 사업비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APC, RPC, 어촌계 등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하여 통지)
 - * 지원대상 규모이하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에서 지원토록 유도
 - 선정된 농어가에 대한 컨설팅 자문업체가 없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가능한 여성농어업인이 25% 이상 선정되도록 우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기초자치단체)

쿠폰지급 : 시·군 → 농어가

- 시·군은 선정된 농어가에 컨설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알리고 쿠폰 지급 [쿠폰은 농식품부에서 배부, 견양 붙임]

계약체결 : 농어가 ↔ 컨설팅 업체

- 농어가는 시·군에서 받은 쿠폰과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업체에 지급하고

컨설팅 요청 및 가계약 체결

- 농어가는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업체pool(에그리에듀넷에 게시)에서 선택
 - ※ 컨설팅 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농어업인이 알기 쉽고 찾기 쉽게 구성하여 게시(에그리에듀넷에는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자사 홈페이지와 링크)
 - 업체의 일반현황(전문인력·협조 가능한 외부전문가 현황, 시설·장비보유현황, 이용 가능한 외부기관의 시설·장비현황 등 포함)
 - 제공 가능한 컨설팅서비스 내역과 기대효과, 기존 컨설팅 실적 및 효과
 - 컨설팅서비스 공급비용 관련 세부내역
 - 인터넷 및 농림수산정보망을 통한 컨설팅 제공계획 등
- 자부담(계약금)은 통장으로 입금하고 무통장 입금 증명서 사본 등을 업체에 제출
 - * 농어가는 쿠폰 이면에 자필로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결정
- 시장·군수는 원활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실시
- 가계약서에는 [별표 1]의 계약서필수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컨설팅 업체는 가계약서, 쿠폰, 농어가의 계약금 입금 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컨설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농어가경영진단서(업체에 별도 배부)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계약 승인 요청
- 업체당 계약건수는 100건 이내로 하고, 시장·군수는 업체 능력을 초과한 사업 수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지도(어업경영컨설팅 대상은 제외)

계약의 승인 및 약정체결 : 시장·군수 ↔ 컨설팅 업체

- 컨설팅업체로부터 가계약서, 쿠폰 및 첨부문서 등을 제출 받아 [별표 1]에 명시된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후 계약 승인
- 시장·군수는 컨설팅 업체와 [별표 2]의 ‘컨설팅 비용지원 약정’ 체결
 - * 시·군에서는 쿠폰 이외,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증거서류 제출 요구 금지

계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시장·군수

- 계약 무효가 확인된 경우 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대체계약은 계약일 이내에서 잔여기간을 체결
- 실비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비 지원조건에 따라 자부담과 보조금(국비, 지방비) 순으로 안배
- 지원농어가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계약변경은 계약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아래 중요한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시·군의 권고에 따라야 함
 - ①컨설팅 내용 및 기대효과에 관한 약정 변경 ②계약에 정해진 컨설팅인력의 구성 변경(참여인원을 늘리는 변경은 제외) ③기타 컨설팅 계약의 본질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업체는 계약서 변경(안) 및 농어업경영컨설팅일지 [별지 제3호 서식] 사본, 계약변경 사유서(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된 이후 중요사항 계약을 변경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농어나 업체는 각각 차년도 지원 제외 및 인증 취소
- 시장·군수는 계약의 무효·해지·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 조치하고,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

중도금 및 잔금 집행방법

- 컨설팅 업체가 농어가로부터 받은 쿠폰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중도금 : 농어가는 시·군에서 받은 중도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중도금 신청(시·군은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제출 후 3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5호 서식] 후 중도금 지급)
 - 잔금 : 농어가는 시·군에서 받은 잔금 쿠폰을 업체에게 지급하고 업체는 시·군에 쿠폰으로 잔금 신청(업체는 시·군에 컨설팅결과 요약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별표3)>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하고 시·군은 동 보고서 제출 이후 1주 이내 현장 확인[별지 제5호 서식] 후 잔금지급)
- 현장 확인 후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시장·군수가 시정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사업종료보고 : 시·도는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결과를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평가위원회>는 시·도의 품목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컨설팅 업체의 농어가별 사업수행 보고서에 대한 평가업무 수행

시·도(지자체)

- 시·군의 계약체결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받아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비 배분계획에 따라 연도초에 일괄 자금배정

시·도(지자체)

- 농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에 일괄 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담당 공무원(시·군공무원 포함)으로 점검반을 구성, 계약 쌍방의 계약 이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성과 수시 점검
 - 업체와 농어가는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각종 서류 열람,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컨설팅업체

- 방문·전화·서신·전자우편 기타 방법에 의해 컨설팅을 시행할 때마다 주요 내용을 컨설팅일지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 계약기간의 1/3 경과시점까지의 추진상황을 10일 이내에 컨설팅추진 상황 보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출
- 계약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 조사를 통해 계약기간 1/3 경과 시점까지의 컨설팅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 불이행시 귀책사유가 업체에 있는 경우 실비를 제외한 자금을 회수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하고
 - 귀책사유가 농어가에 있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업체로부터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농어가가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농어가가 자부담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컨설팅 지원 제외

컨설팅업체

- 업체 인증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업체 인증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어가는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인증 취소 조치
- * 농식품부에 신고하지 않은 전문 인력이 컨설팅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증에서 제외
- 업체가 ①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②농어가로부터 자부담을 받지 않거나 되돌려 준 경우, ③컨설팅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인증 배제
- 사료·기자재 회사 등의 계열사에 대한 참여 제한 : 별도법인으로 구성된 경우 인정하고, 컨설팅 업체로 인증된 후 당사 제품판매와 연계된 사항(선전, 컨설팅 비용 대체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취소

《사업비 정산》

시·군(기초자치단체)

-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의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의 사업비 집행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보고에 따라 컨설팅계약체결, 컨설팅사업 추진상황 및 컨설팅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원농어가 선정 결과 보고 : 2009.2월말[별지 제7호 서식](추가선정 : 월말)
 - 컨설팅계약 체결상황 보고 : 수시 [agrix에 입력]
 - 컨설팅추진실적 보고 : 사업완료 후(잔금 지급신청과 동시)[agrix에 입력]
- 업체는 컨설팅사업 추진 단계별로 컨설팅수행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추진상황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컨설팅결과요약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에 20페이지 이상의 컨설팅 자문결과 세부보고서(자유형식 : 필요적 기재사항 → [별표3])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
 - 업체는 컨설팅 결과 요약보고서 및 세부보고서를 농어가에 제공

6. 성과측정단계

- 농업경영컨설팅 대상 농어가 중 10% 수준을 지역·품목을 고려하여 선정, 컨설팅 전·후의 소득 증가율 산출(외부 전문가에 의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에서 시·도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실태점검 및 개선실적 파악
- 시·도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평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시·도에 대해 사업비 우대지원(실적에 따라 전년대비 10~20% 증액)

8. 컨설팅 업체 인증

가.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자격 요건

-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일정 전문인력(전속기준)을 보유한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농업 경영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전문인력 : ('08년) 6인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된 경우 우대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법령으로 공인된 자격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포함) 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가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석사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관 및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지식 농업인, 신지식 어업인 및 한국농업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인증절차 및 방법

- 절차 : 공개모집 → 적격여부 심사(서류) → 일정 점수 이상 업체 인증
-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의2 서식] 및 [별지 제8호의3 서식] 포함)에 따라 공모 기한 내 신청
-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 : 농식품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품목단체, 학계, 컨설팅 전문가 등 10여명(민간 50%이상)으로 구성
- 인증우대
 - 경영·마케팅, 브랜드까지 종합 경영컨설팅이 가능한 업체
 - 대학·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 지사(branch) 구성이 활발한 업체
- 농업컨설팅 분야 : ①회계·재무 ②경영(혁신) ③마케팅 ④ 브랜드 ⑤생산기술 ⑥방역(축산), 토양(경종), 전기(시설, 축산) ⑦세제, IR, 투자유치기법, 특허출원 ⑧자연순환농업 ⑨친환경(유기)농업 ⑩농촌관광 ⑪기타 품목별 필수
- 어업컨설팅 분야 : ①회계·재무 ②경영(혁신) ③마케팅 ④브랜드 ⑤생산기술 ⑥어선어업(내수면어업 등 포함) ⑦양식어업(내수면 및 종묘생산 포함) ⑧친환경 어업(품질인증 포함)
- 인증기준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업체로 하며, 인증

기준 점수는 컨설팅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증위원회에서 결정

-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 양식] 의 인증서 발급

* 컨설팅 인증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농식품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다. 인증업체 보고사항

○ 인증업체는 보유인력 변동사항 발생시 컨설팅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8호의2 서식] 을 사유발생 14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함

○ 인증업체는 지사의 명분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업체에 일괄 하청 금지

- 다만,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컨설턴트로 활용할 경우(외부 컨설턴트로 추가 등록) 자격기준 관련 증명서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운영

- 인증업체간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별도 승인절차 불필요

라. 재인증 등

○ 인증기간은 2년이며, 2년 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 결정

- 재인증은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조사(설문조사 등) 등 평가 후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여부 결정

- 재인증 평가결과 탈락업체 제외 하위 20% 이내 업체와 컨설팅 실적이 연간 6개 농어가(법인·업체 등) 미만인 업체는 1년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실적이 6개 농가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인증 제외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에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수요를 조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업경영컨설팅 수요농어가는 시·군에 2009년 11월 30일까지 제출

3. 농림사업통합시스템(agrix)에 게재한 별표 및 서식 현황

○ [별표 1] 농어업경영컨설팅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별표 2] 농어업경영 컨설팅 비용 지급 약정서
- [별표 3] 컨설팅 결과보고서 필요적 기재사항
-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수행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일지
- [별지 제4호 서식] 컨설팅 추진 상황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상황 확인
- [별지 제6호 서식] 컨설팅 결과 요약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어가 선정 결과

[별지 제8호의2 서식]

컨설팅전문인력 보유현황

(컨설팅업체 작성, 농식품부 제출용)

년 월 일 기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부인력 소속	자격및학위 (구체적으로)	컨설팅기능분야 (구체적으로)	컨설팅 경력	전담 지역
-	()				년 월	
-	()				년 월	

- 주) 1. '자격 및 학위'에는 해당 분야 기관·업체 근무경력 포함
 2. 전문인력 개인별 컨설팅실적기술서 첨부 가능, 전담 시·도를 기재
 3. 기관·업체의 경우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등 증빙첨부
 4. 소속 : 내부인력은 '내부'로, 외부인력은 '소속'을 기재
 5. 외부인력의 경우 본인이 작성한 '참가동의서'를 첨부

[별지 제8호의3 서식]

주요 컨설팅실적 기술서

(컨설팅업체 작성, 농식품부 제출용)

컨설팅 기간	경영체명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계약액 (백만원)	컨설팅내용	성 과 (구체적)	컨설팅팀	협력기관 및 협력 컨설턴트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전화				외부()명	
년 월 ~ 년 월	성명				내부()명	
	주소					
	전화				외부()명	

- ※ 1. 별첨 : 컨설팅계약서 사본 각 1부
 2. 진행중인 컨설팅계약도 포함

제 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 인증서

업 체 명 : (인증기간 : 년)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09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견양 제1호 서식]

발급번호: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계약금)	
<p style="text-align: center;">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p> <p style="text-align: center;">계약금용이며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어가(법인)가 시·군에서 지급받아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에게 지급하고 컨설팅 가계약 체결 후 자부담(총금액의 30%)을 입금해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유효기간: 20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p>			

발급번호: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중도금)	
<p style="text-align: center;">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p> <p style="text-align: center;">중도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3개월간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농어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추진상황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4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유효기간: 20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p>			

발급번호:	시·군-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 쿠폰		(잔 금)	
<p style="text-align: center;">이 농업경영컨설팅 바우처(Voucher) 쿠폰은</p> <p style="text-align: center;">잔금용이며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을 때 농어가(법인)가 업체에 지급하고, 업체는 이 쿠폰과 컨설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컨설팅 비용(총금액의 3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이 쿠폰은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유효기간: 200</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행기관 농림수산식품부</p>			

■ 컨설팅농어가·법인			
대표자성명	(주소: _____)		전화: _____)
재배작목/경영업종	사육축종/어획(양식)품목	_____	경영업종/겸업품종
발급금액	_____ 원 옆의 금액을 컨설팅 업체에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인)		
■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_____		
컨설팅분야	_____	계약기간	_____
■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_____도	_____시,군(전화: _____)	
담당자	_____ (인)		
발급일	200년 _____월 _____일		

쿠폰 사용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3, 1734)

■ 컨설팅농어가·법인			
대표자성명	(주소: _____)		전화: _____)
재배작목/경영업종	사육축종/어획(양식)품목	_____	경영업종/겸업품종
■ 컨설팅 업체가 3개월간 정상적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인)			
■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_____		
컨설팅분야	_____	계약기간	_____
■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_____도	_____시,군(전화: _____)	
발급금액	_____ 원		
담당자	_____ (인)		
발급일	200년 _____월 _____일		

쿠폰 사용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3, 1734)

■ 컨설팅농어가·법인			
대표자성명	(주소: _____)		전화: _____)
재배작목/경영업종	사육축종/어획(양식)품목	_____	경영업종/겸업품종
■ 컨설팅 업체가 컨설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인)			
■ 컨설팅 수행내용			
컨설팅업체명	_____		
컨설팅분야	_____	계약기간	_____
■ 쿠폰 발급기관			
시도(시군)명	_____도	_____시,군(전화: _____)	
발급금액	_____ 원		
담당자	_____ (인)		
발급일	200년 _____월 _____일		

쿠폰 사용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02-500-1733, 1734)

농업경영 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원예·특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치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시설구조 및 자동화 ○ 환경관리 ○ 작물관리	시설형태, 가온 및 냉방, 보온시설, 환기, 환경자동화, 관수 광관리, 온도관리, 탄산가스사용, 기비, 추비, 관수 토양조건, 품종선택, 병해충 예찰 활동, 병해충 방제, 출하 전처리
가 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치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 위생관리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 기계 및 장비관리 ○ 부적합품 관리 ○ 시정 및 예방조치 ○ 지속적 개선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원재료의 조달방법 검사기준 / 검사방법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 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제안제도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축 산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 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교육 및 훈련
	<한우> ○ 밀소선발 ○ 사양관리 ○ 사육시설	밀소선택 / 구입방법, 밀소구입월령 거세월령 / 비육기간(생후월령) / 송아지 입식관리 / 조사료확보 / 사료구입 / 육성기·비육전기·비육후기 사료급여 두당우사면적 / 우사위치·온도 / 사료급이·급수시설 / 분뇨혼합물처리 / 분뇨수거 운반
	<낙농> ○ 개량 및 종축관리 ○ 위생관리 ○ 사료급여관리 ○ 사육시설	혈통등록 / 정액구입방법 / 후보축종부 관리 / 착유우종부관리, 착유우관리 / 착유기세척방법 / 유방염 진단 / 질병예방접종, 청소 및 발굽손질 조사료생산 / 착유우·건유우·육성우 사료급여 / 송아지초유급여 착유시설 / 축사시설, 사료급이·급수 시설 / 분뇨처리
	<양돈> ○ 자돈생산 ○ 비돈육 생산 ○ 질병관리 ○ 사육시설	종돈구입 / 종돈품종수 / 인공수정 / 수간관리 / 포유기간 / 임신돈 사료급여 비돈육 사료급여 / 거세 / 압·수 분리사육 예방접종 / 위생 / 돈사내·외부소독 돈사구성 / 돈사간격 / 온·습도, 환기 관리 / 비육돈 평당사육두수 / 뇨 및 세척수 처리 / 돈분처리
	<양계> ○ 계사시설 ○ 환경 및 일반관리 ○ 사료급여관리 ○ 질병관리	계사환경 자동화시설 / 사료급이·급수 시설 / 계사바닥 및 깔집 계사환경관리(온도·습도·환기) / 초생추 구입 / 평당사육수 / 점등관리 사료선택 / 육성기별사료급여관리 / 휴약사료급여 방역 및 질병관리 / 초생추입추관리 / 계사입지조건(청정지역, 수송조건, 축산 공해, 계사방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쌀전업농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방법, 고객관리 교육 및 훈련
	<생산관리> ○ 생산기반 ○ 재배관리 ○ 친환경 재배 ○ 기계화 및 장비관리 ○ 수확 후 품질관리	경지정리 / 필지규모화 / 단지화 지력향상 / 우량품종 확보 및 관리 / 육묘 최적화 / 시비, 방제, 제초요령 / 물관리 / 수확, 건조 친환경 재배기술 및 친환경 농자재 교육, 지도 노동대체 기계화 방법 / 기계 및 장비관리 / 작동 및 운전능력 보관·저장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생산관리분야> ○ 산지관리 ○ 농가 출하관리 ○ 검품/검수관리 ○ 생산 계획 및 공정관리 -선별 -제품처리(세척, 가공) -포장 -창고보관 관리 ○ 기계 및 장비관리 ○ 부적합품 관리 ○ 상품 출하관리 ○ 위생관리 ○ 기본운영 계획 수립 ○ 업무 절차(Process)	산지 작목반 구성 / 계약재배 / 재배요령 출하요령 / 출하방법 / 출하시기 검사기준 / 검사항목 / 검사요령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부적합품 관리기준 / 부적합품 처리 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배송관리기준 / 배송요령 및 방법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 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조직형성 / 운영주체의 선정 / 기본 계획 수립 / 조직구성 등 업무 시스템 개발 / 업무 처리지침·기준·표준 등 개발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미곡종합처리장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 ○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 저온 저장 관리기술 ○ 품질관리 ○ RPC 경영분석 ○ 제품 마케팅 계획 ○ RPC 경영평가 ○ RPC 통합 ○ RPC 시설현대화	재배단지 조성 / 품종 단일화 / 건조, 저장시설 확충 / RPC 시설 현대화 저온 저장 기술지도 / 싸이로 운용 요령 미질의 개선, 미질의 시험·검사 경영지표에 의한 평가 / 경영개선 사항 / 통합요건 제품정책 / 가격정책 / 촉진정책 / 유통정책 RPC 경영성과분석 / 종합평가 통합추진계획수립 / 통합절차와 방법 시설교체 및 자동화 계획 수립
농촌관광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운영시스템분야> ○ 농촌관광 기반조성 및 계획수립 ○ 농촌관광 테마개발 ○ 농촌관광 추진방법 ○ 우수사례 벤치마킹 / SWOT 분석	향토자원(문화, 유산, 유적, 특산물 등)의 조사, 분석 / 관광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및 사업 계획수립 향토자원의 발굴 / 향토산업의 육성 / 특성화 및 차별화 사업선정(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 체험장, 정보화마을, 희망농촌 건설 사업 등) 및 사업추진 재원 확보 기본 사업계획 수립 / 운영주체의 선정 / 운영프로그램 개발 / 운영요원의 교육 및 훈련 우수 수범 지자체 견학 / SWOT 분석 등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농축산물 브랜드경영체</p>	<p><경영관리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p>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 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p>
	<p><운영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 ○ 농축산물 브랜드 관리 	<p>농축산물 생산주체 육성 / 산지 공동마케팅 조직 선정 /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 RPC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중심체 육성 /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 등록 / 브랜드 홍보 시중 유통 농축산물 브랜드 선호도 조사 / 농축산물 브랜드 파워 조사 /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품질평가 / 우수 브랜드 경영평가 / 농축산물 품질인증 / 농축산물 안정성 확보에 따른 제도 / 종합적인 경영평가</p>

어업 경영 컨설팅 항목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어선어업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 및 사양관리> ○ 기자재 관리 ○ 생산관리 ○ 품질관리	기자재 조달 및 구입/검수, 사용/보관관리, 수리·보수 어장환경, 어구·어법, 수산동식물 생태, 친환경 어구사용, 선박운항, 운반·양육, 선상가공, 원가절감 보관 및 운반, 냉동·냉장 시설, 신선도 유지, 손질
수산가공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계획 / 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 방법, 고객관리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복지후생
	<생산관리분야> ○ 원재료의 조달 ○ 반입 / 중간 / 최종 검사 ○ 위생관리 ○ 생산계획 및 공정관리 ○ 기계 및 장비관리 ○ 부적합품 관리 ○ 시정 및 예방조치 ○ 업무절차 개선	원재료의 검품·검수 / 원산지 / 조달방법 검사기준 / 검사방법 위생관리 일반 / 개인위생 / 시설위생 / 작업위생 / 공장청정활동 생산계획 / 생산공정 Flow / 공정 Lay Out 기계 및 장비관리 / 기계 및 장비 작동요령 부적합품 관리기준 / 처리방법 / 원인분석 / 재발방지 시정 및 예방조치 항목 / 조치방법 / 조치결과의 처리 표준 업무 시스템 개발, 업무 매뉴얼 개발

* 상기 항목을 기준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요구 등 필요에 따라 항목 대체가능

업 종	컨설팅 항목	세 부 항 목(예시)
양식어업 (종묘생산, 해면양식, 내수면양식)	<경영관리분야> ○ 방침 및 목표관리 ○ 재무관리 ○ 판매관리 ○ 조직 및 인사관리	최고 경영자 경영의지, 장·단기 사업 계획/결과, 경영 System 수립 경영장부 작성, 수지계획 및 이익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판매 및 유통계획, 유통조직, 유통방법, 고객관리, 가격정보 관련제도 등 교육 및 훈련,
	<종묘생산> ○ 품종선택 ○ 사양관리 ○ 사육시설	우량 어미 검사/확보, 우량 어미 운반 및 생존율, 생산량 및 수요량 예측 적지조사/수질검사, 품종별 사료확보/투여방법, 채묘/수정방법, 질병진단/관리, 질병별 약제 확보 및 투여방법, 출하량/출하시기 조절, 시장/가격 등 수급동향 관리, 사육수공급 등 양식장 관리 대책 시설형태 및 시설기준, 종묘장 면적/위치, 사육수/온배수 공급 시설, 수질정화 시설, 폐사어 수거·처리/정화처리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장비 관리, 양식장 관리시설 등
	<양식> ○ 품종선택 ○ 사양관리 ○ 사육시설	우량 종묘 검사 및 확보, 종묘 운반 및 생존율, 생산량 및 수요량 예측 적지조사/수질검사, 품종별 사료확보 및 투여방법, 성장 단계별(치어, 중간, 성숙) 관리, 사육수 공급 및 수온관리, 질병 진단/관리, 질병별 약제확보/투여방법, 출하시기 및 출하량 조절, 시장/가격 등 수급동향 관리, 식수공급 등 양식장 관리 대책 시설형태 및 시설기준, 양식장 면적/위치, 사육수/온배수공급 시설, 수질정화 시설, 폐사어 수거·처리/정화처리 시설, 기자재 구입 및 장비 관리, 양식장 관리시설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팀 장 김 미 숙	02-500-1825
	농촌사회여성팀	사무관 장 동 욱	02-500-1830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팀 장 권 기 환	02-3460-5630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②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대상을 '12년까지 40,000명까지 확대
 - * '08. 1학기 융자신청자 20,644명×2개 학기=41,288명
- 성과지표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사업수혜자인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를 매년 1%p 높임(전문조사업체에 의뢰)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혜자 만족도	85%	-	-	-	2009.12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25,471	44,097	41,260	47,500	204,600
보 조 용자(출연) 지방비 자부담	225,471	44,097	41,260	47,500	204,600
○ 세부사업명 - 보 조 - 용자(출연) - 지방비 - 자부담	225,471	44,097	41,260	47,500	204,600

※ 산출근기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기
'07까지	269,568	
'08	41,260	○ 정부출연액(41,260) = 총 용자소요액(81,588)-재단조달액(40,328) * 총 용자소요액=3,138천원(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26천명 (지원대상 인원수) = 81,588백만원
'09	47,500	○ 정부출연액(47,500) = 총 용자소요액(90,000)-재단조달액(42,469) * 총 용자소요액=3,358천원(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27천명 (지원대상 인원수) = 90,666백만원
'10	54,000	○ 정부출연액(54,045) = 총 용자소요액의 50% * 총 용자소요액 = 3,603천원(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30천명 (지원대상 인원수) = 108,090백만원
'11	67,600	○ 정부출연액(67,655백만원) = 총 용자소요액의 50% * 총 용자소요액 = 3,866천원(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35천명 (지원대상 인원수) = 135,310백만원
'12	83,000	○ 정부출연액(82,960백만원) = 총 용자소요액의 50% * 총 용자소요액 = 4,148천원(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40천명 (지원대상 인원수) = 165,920백만원
합계	562,928	

- * 1인당 등록금 평균지원액 : 전년도 1인당지원액 × 7.3%(‘03~’07 5개년 등록금 평균인상율)
- * 지원대상 인원수 : ‘08.1학기 신청자 수(21천명)를 감안, 전체 지원대상을 연간 40천명(1학기 20천명, 2학기 20천명)으로 추정하고, ’12년까지 지원대상을 40천명으로 확대를 전제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09 지원계획

	합 계	'09. 1학기	'09. 2학기
지원인원	27,000명(100%)	14,000(52%)	13,000(48%)
지원금액	89,969백만원(100%)	47,000(52%)	42,969(48%)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

* '09 정부출연예산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체 지원계획내에서 1학기 잔여사업비는 2학기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며, 전체 지원금액내에서 지원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용자재원(89,969백만원) : 정부출연 47,500, 재단조달(회수금, 이자) 42,469

2. 지원대상(신청자격)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지역의 기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95-86호 ('95.10.10)에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

학부모의 기준

가. 부모(아버지, 어머니)

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 조부모 →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순
다 기타 신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으로서 아래 ③과 ④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특별추천

☞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 특별추천 사유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
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단, 불가피한 사유로 3회 이상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추천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심사하여 결정
-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대학(교)로 하여금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사후확인에 대비토록 함

3. 용자대상 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용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용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단체인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매학기 용자대상 금액 산정시 반영

4. 용자조건 : 무이자 용자

5. 용자학기 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용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용자학기 수로 인정

- 용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용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용자학기 수에 포함
- * 학자금 용자시 용자금 반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6. 지원계획 공고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본 지침에 의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세부 신청요강(이하 “세부신청요강”이라 함)」을 학기별로 작성·공고하고, 동시에 각 대학(교)에는 동 요강과 함께 안내공문 발송
 - 공고시기 : '09. 1학기는 '08.12.15까지, '09. 2학기는 '09.05.20까지
 - 공고방법 : 신문(경제신문, 대학신문 등), 홈페이지 등 농어촌출신 대학생이 접촉하기 쉬운 매체를 적극 활용
 - 세부신청요강에는 당해연도 지원계획, 지원대상(신청자격), 용자대상 금액, 용자학기 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제한자, 용자대상자 선정방법, 용자금 지급, 용자금 관리, 용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용자이용 학생의 편의도모를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포함

7. 용자제한자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용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용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 * 학자금을 일부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용자 가능

- 정확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용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용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고, 부당하게 용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용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조치

8. 용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매학기 용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제외

《 순위별 적용대상자 》

순 위	적 용 대 상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 *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 선정방법

- 학기별로 전 용자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순위에 의거 용자대상자로 선정
- 적기용자와 대상자 선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학생과 신입생을 시차를 두고 심사

9.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10. 홍보계획

- 농어업인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융자사업 홍보 강화
 -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대학신문, 반상회보 등
 - 신청자격, 신청기한, 융자금액, '09년도 제도개선내용 등을 집중 홍보

11. 기 타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본 지침에 의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융자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성실한 자세로 융자재원을 관리하고, 연체액 감소와 회수금 수익율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학기별로 수립 시행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융자금 상황과 회수금 운용상황을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융자현황, 상환현황, 미상환 및 연체현황, 연체액 감소대책, 회수금 운용상황과 수익률 제고방안 등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과 심사 및 융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순위별 신청상황, 심사결과(순위별 탈락사유 분석), 순위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결과, 지역별·대학별·학년별 지원실적(인원, 금액), 융자재원 운용상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위탁운영비를 집행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용자금 이용자별 용자관련 서류를 상환시까지 보존하며, 성실한 자세로 관리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송금된 용자금이 각 대학(교)이 지정한 별도계좌에 의해 관리되도록 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각 대학 학자금용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중에 권역별로 당해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지원사업지침」에서 신청기준 제시
 - 사업지침은 사업시행주체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전년도 11월중)

한국학술진흥재단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세부신청요강」 작성 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학기는 당해년도 5. 20까지.
- 용자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내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지원사업지침」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제시

한국학술진흥재단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용자 세부신청요강」의 일정에 의거 신청학생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하고, 선정기준에 의거 순위별로 용자대상자를 최종 선정
 - 선정결과는 재학대학에 통보하는 한편, 신청자에게도 개별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 작성(전년도 11월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의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신청요강」 작성·공고
 - 공고시기 : 1학기(전년도 12.15까지), 2학기(당해년도 5.20까지)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지침」에서 반기별 배정계획 수립
 - '09년도 배정계획 : 1학기 470억원(52%), 2학기 430억원(48%)
-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배정요구에 의거 연간 2회 등록금 납부시기에 배정

한국학술진흥재단

- 등록금 납부시기인 1월과 7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배정요구
- 융자금은 각 대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신청자의 등록금으로 대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융자금 상환과 회수금 운용상황을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매 학기 학자금 융자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과 심사 및 융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합동으로 대학과 융자금이용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제 재》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는 본 지침에 의거 해당학기 융자금을 회수하고, 부당 수혜회수에 따라 향후 신청자격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학자금 수혜자(융자이용자)의 만족도임
- 한국학술진흥재단은 '09.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학자금을 융자받은 농어촌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수립시(사업 지침 작성시)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는 융자신청자 수로 파악이 가능하므로 불필요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09년도 하반기에 「세부신청요강」 공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여성팀	팀 장 김 미 숙	02-500-1825
		사무관 장 동 욱	02-500-1830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여성지원팀	팀 장 한 춘 희	02-2080-5626
		과 장 하 재 구	02-2080-5628

I.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③항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2조, 제15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 영농도우미는 '12년까지 지원대상을 전체 농가구수('07년 현재 1,231천가구)에 농협공제 최근 3년간 평균사고발생율(1.60%)과 질병발생율(a)을 고려하여 20,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일수도 연간 20일까지 늘림
 - 가사도우미는 '12년까지 지원대상을 20,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지원회수도 월 2회 기준으로 하여 연간 24회로 늘리며, 지원단가도 농촌지역 교통여건이나 최근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20,000원으로 인상

* 65세 이상 1인 농가구 수 : 124,030가구('05 농업총조사)

○ 성과지표

- 사업수혜자인 영농도우미 및 가사도우미 이용가구에 대해 사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도를 '12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수혜자 만족도	89%	-	88%	89%	2009.12	-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만족도조사는 농협중앙회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합 계	2,444	5,514	8,274	8,560	15,750	20,040	30,400
국고보조	1,711	3,860	5,792	5,992	11,025	14,028	21,280
농협부담	304	454	454	540	1,215	1,800	2,880
농가부담	429	1,200	2,028	2,028	3,510	4,212	6,240
○ 영농도우미	1,431	4,000	6,760	6,760	11,700	14,040	20,800
- 국고보조(70%)	1,002	2,800	4,732	4,732	8,190	9,828	14,560
- 농가부담(30%)	429	1,200	2,028	2,028	3,510	4,212	6,240
○ 가사도우미	1,013	1,514	1,514	1,800	4,050	6,000	9,600
- 국고보조(70%)	709	1,060	1,060	1,260	2,835	4,200	6,720
- 농협부담(30%)	304	454	454	540	1,215	1,800	2,880

※ 국고지원액 산출근거

연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합 계
	지원 대상 (A)	지원 단가 (B)	연간 지원 일수(C)	재정 투자액 (A×B×C)	지원 대상 (A)	지원 단가 (B)	연간 지원 일수(C)	재정 투자액 (A×B×C)	
'08	13,000	36,400	10	4,732	15,000	7,000	10	1,060	5,792
'09	13,000	36,400	10	4,732	18,000	7,000	10	1,260	5,992
'10	15,000	36,400	15	8,190	18,000	10,500	15	2,835	11,025
'11	18,000	36,400	15	9,828	20,000	10,500	20	4,200	14,028
'12	20,000	36,400	20	14,560	20,000	14,000	24	6,720	21,28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09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영농도우미	13,000가구	4,732
가사도우미	18,000명	1,260
합 계		5,992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배정 : 분기별로 배정

2. 지원대상(신청자격)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0세 이하(신청일 현재를 기준)의 농업인과 그 배우자
 -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①항 제1, 2, 3호에 해당하는 농지소유규모 50,000㎡ 미만인 자
 - 사고나 질병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2주 이상 입원한 경우로 병·의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단독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손(祖孫)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 영농활동과는 무관하며, 거주지 및 동거가족은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3.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4.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36,4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7,000원/회), 농협부담 30%(3,000원/회)

5. 지원금액 및 용도

- 영농도우미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52,000원 이내에서 지역농협이

정하는 금액

- 영농도우미 임금이 52,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고에서 36,4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용농가가 전액 부담
- 영농대행 작업이 단순하거나 부녀자, 노인 등의 활용으로 영농도우미 임금을 1일 52,000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이용농가가 부담

○ 가사도우미

- 취약농가에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회 10,000원을 지급하며, 이 중 70%(7,000원)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3,000원)는 농협이 부담
- * '08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했던 고령농가 위로행사비(선물비 등), 유급지원자 임금, 사무용품비 등 사업추진 부대비용은 '09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당일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가구 수가 파견하는 가사도우미보다 같거나 많을 경우에는 가사도우미 수대로 활동비(10,000원)를 지급할 수 있음

6. 지원일수

- 영농도우미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 가사도우미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0회 이내
- * 당해년도에 이미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를 10일까지 지원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원할 수 없음(특정농가에 대해 지원회수는 제한없으나 지원일수는 연간 10일 이내에서 지원)
- * 부부가 동시에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시에도 영농도우미는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10일까지만 지원(지원회수는 제한없음)
- * 동일한 상해나 질병은 연도에 관계없이 10일까지만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음(지원회수는 제한없음)

7. 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서식 1>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전화신청시는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확보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영농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상태에서는 영농

도우미를 신청할 수 없음

- * 신청당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 * 가사일이나 농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연초(1/4분기 중) 관내 취약농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서식 2〉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도우미 신청대상에서 제외

〈영농도우미〉

- 당해연도에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
- 농업경영주(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나 그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가사도우미〉

- 당해연도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은 가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자, 노인돌보미 서비스 수혜자, 가사간병 도우미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수혜자,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지원 수혜자 등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8. 지원대상 선정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과거의 영농도우미 신청수요와 당해연도 사업비 규모를 감안하고, 신청자의 사고나 질병의 정도, 작업내용, 영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가족유무, 신청농가의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는 상호연락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1인당 1일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의거 당해년도 사업비의 80%는 연초(1/4분기중) 일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나머지 20%는 일체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추가신청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 중 수시로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서식 4>에 의거 신청가구와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신청가구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근거리 지역 자녀거주 여부, 장애인 부양여부, 기타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사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가사도우미는 상호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회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9.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영농도우미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발생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농가의 작업내용과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영농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영농도우미로 선정
- 영농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지역농협은 관내 농가의 영농도우미 신청에 대비, 도시지역 영농작업 가능 유휴 인력 등을 적극 확보하여 「영농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농가가 추천한 영농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청소,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 제공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 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가사도우미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10. 도우미 파견 및 활동상황 확인

- 영농도우미
 - 지역농협은 신청농가에 통보내용대로 영농도우미를 파견하고, 영농도우미로 하여금 작업전에 신청농가로 부터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조치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 가사도우미
 - 지역농협은 신청가구에 통보내용대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고, 가사도우미로 하여금 사전에 신청가구로 부터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조치하며,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 지역농협은 가사도우미 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

11.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납부
-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세부시행지침에서 정함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서식 5> 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가사도우미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 임금청구서」 <서식 6> 를 작성하고 신청가구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12.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나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농가부담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13. 기 타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지역농협 영농·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가사도우미 지원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 및 지원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사업추진실태를 상·하반기에 1회씩 지도점검(필요시는 수시점검)
- 지역농협은 익년 1. 31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하고, 농협중앙회는 익년 2. 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본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09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지침」에서 신청기준 제시(농협의견 수렴)
- 사업지침을 농협중앙회에 통보('09 농림수산사업지침서에 반영)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을 일선 지역농협에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홍보 및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 접수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09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지침」에서 선정기준 제시

농협중앙회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
 - 「영농 및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 운영(필요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09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고 농협중앙회에 시달

농협중앙회

-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역농협에 통보(필요시)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 수립시 의견 제출

지역농협

- 세부사업지침 수립(필요시)
- 농림수산식품부나 농협중앙회에 사업지침 작성시 의견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수산식품부)
- 지역별 재배정기준 수립 및 소요자금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 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10.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비 정산('10.1.31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의거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

- 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영농 또는 가사도우미 수혜자 만족도임
- 농협중앙회는 '09.12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
 - 측정방식은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 조사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지원사유인 사고와 질병이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사전 수요조사가 곤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0년 사업지침에서 정함

<서식 3>

영농도우미 선정 및 파견 통보서

신청인 _____ 귀하

영농도우미 _____ 귀하

영농도우미 선정 및 파견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신청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작업기간	
	작업일수	일(*산출근거: _____)					
영농도우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영농도우미 임금	임금액	총 원					
	산출근기	1일 임금(원)×작업일수(일) =					
	* 파견 영농도우미에 맞는 지역내 인건비수준 : 원/일						
농가부담액	부담액	원					
	산출근기	1일 농가부담액(원)×작업일수(일) =					
	납부장소	00농협			납부기한		

2009. . . .

00 농 협 조 합 장

〈서식 4〉

가사도우미 선정 및 파견 통보서

신청인 _____ 귀하

가사도우미 _____ 귀하

가사도우미 선정 및 파견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신 청 자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가사사정					
가사도우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가사활동 지원내용	지원기간 :					
	지원회수 :					
	가사서비스 내용 :					

2009. . . .

00 농 협 조 합 장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 청 인 (영농도우미)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영농작업 대행내용	농가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주소					전화
	작업 내용	작업기간				작업종류	
		작업량				작업일수	
		특이사항					
임금청구액	일금 원 *산출근기 : 1일 임금(원)×작업일수(일) =						
	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0 년 월 일							
청구인(영농도우미) : (인)							
확인자 : 영농도우미 신청농가 성명 : (인)							
00 농협조합장 귀하							

【농촌개발분야】

IV. 소득보전

49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물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이정형	02-500-1761
		사무관 홍만의	02-500-1762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직불사업팀	팀 장 김선호	031-420-3371
		차 장 이봉형	031-420-4140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
-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제3항 제3호 및 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경영이양대상자 소유농지 179천ha의 55.9%인 10만ha를 이양시켜 고령·은퇴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쌀전업농 6ha 수준, 7만호 육성에 기여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39	32	34	37	2010.2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재배면적×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P)	2009년(P)	2010년이후
○ 경영이양직불사업	141,160	11,263	30,013	84,497	2,127,707
- 보 조	141,160	11,263	30,013	84,497	2,127,707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업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200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35년 1월 1일~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 체결일 현재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 약정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아 농지를 매입한 자로서 농지가격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보조금 수령자로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자

2. 지급요건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약정 체결 이후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것
 -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임대(임대위탁 포함. 이하 같다)이양의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경영이양농지의 양수대상자의 연령은 60세 이하인 전업농업인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한국농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이어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에도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농가가 자가소비량 생산을 목적으로 3,000㎡ 이하의 소유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 아래 “3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를 계속 경작하는 경우

3. 지급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농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전·답·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전·답·과수원
 - 농지가 3ha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가 5년이상(임대이양의 경우 임대기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전·답·과수원
- ※ 상속, 증여 농지는 3년 미만 소유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
- 위 지급대상 농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농지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택지개발촉진법」·「전원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도로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관광진흥법」 등

4. 지원형태

- 가.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나. 지급단가 : m²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 다.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라.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m²)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 마. 지급 상한면적 : 2.0ha(동일인이 매도 및 임대 이양시는 각 각 적용)
- 바. 지급방법 : 보조금 총액을 아래 지급기간(총 월수)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기간 동안 매월 경영이양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연령	66세이하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73세	74세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2년

* 보조금 총 지급기간은 10년(120월)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다만,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아.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당초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지급을 중단

* 보조금 지급약정자(경영이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공사 해당 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종전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경과조치

가. 대상자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2009. 1. 시행 대통령령 제 호)(이하 “개정된 시행규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기간(임대이양은 5년)이 만료(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지급기준

(1) 매도이양자의 경우

- 보조금 분할지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칙」 [별표 1]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63세와 64세는 66세 이하로 본다)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수령기간을 월단위까지 산정하여 제외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2) 임대(사용대 포함)이양자의 경우

-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약정을 해지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10원 미만은 절사한다)을 환수한 후,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1]의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63세와 64세는 66세 이하로 본다)에서 종전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을 제외하고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이 경우 임대기간은 5년으로 계산하며, 잔여일수가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본다.

* 잔여기간에 대한 보조금 환수액 = (보조금 지급액 ÷ 60개월) × 잔여기간(월)

-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2009년 12월 31
까지 신청하여야 함
- (3) 기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에 대한 조치사항
 - 공사에 임대이양한 농지는 지급약정체결의 원인이 되는 당초 임대차계약은
변경하지 않고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경영이양을 하여야 하며, 당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경영이양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
 - 개인간 임대(사용대 포함)이양한 농지는 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개정된
시행규정에 따라 공사를 통하여 경영이양을 하여야 한다.
- (4) 경영이양자가 사망하여 보조금 수령을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촌공사(지사)

- 공사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
면·동 및 지사의 게시관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2월중)
 - 사업비 규모, 보조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요건,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방법 및 시기, 기타 보조금 지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 공사(지역본부 및 지사 포함)는 사업내용을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1~12월)

농업인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구비서류 : 농지원부등본,
 - 농지원부등본 1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경영이양하는 경
우에 한함)
 - 경영이양하고자 하는 농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 1부(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2.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한국농촌공사(지사)

-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사 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제외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선정결과 통지를 우선으로 할 수 있음
 - 신청서류 검토는 기재사항 누락 여부,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 현지조사는 신청인의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경작 허용대상 농지의 농지 경작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 유무, 그 밖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현지조사서”를 작성 비치
- 공사 지사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급

3.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한국농촌공사(본사·지역본부)

- 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09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의 목표, 세부적인 추진계획, 지역본부별 사업대상 인원, 면적 및 보조금 배정내역, 목표달성을 위한 서류심사, 현지조사,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등에 대한 홍보계획 등
- 공사는 사업의 시행에 통일을 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규정·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지역본부는 지사에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함

한국농촌공사(지사)

- 공사 지사는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4.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는 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의 범위내에서 공사(사업주관부서)에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촌공사(본사·지역본부)

- 공사(사업주관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로부터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지역본부는 배정받은 자금을 각 지사에 배정
-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촌공사(지사)

- 공사 각 지사는 지급약정의 상대방(경영이양자)이 약정내용(지급요건 등 아래 사항 포함)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이하 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경작에 방해되는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그 밖에 경영이양 전·답·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전업농업인등의 농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공사 사장이 정하는 사항
- 공사는 위 조사결과 경영이양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공사는 경영이양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와 공사(본사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반기 (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함

《제 재》

한국농촌공사(지사)

- 공사 지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 하여야 함
 - ①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당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③ 경영이양한 전·답·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 임대이양 약정농지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 등으로 감소되고 나머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의 해당 보조금만 감액
 - ④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전·답·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단, 공사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증여하였으나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 ⑤ 약정의 상대방(보조금 수령자)이 사망한 경우 단,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는 지급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 가능
 - ⑥ 기존 임대이양 약정농지에 대한 재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농지를 이양하지 않은 경우
 - ⑦ 경영이양자가 임대이양한 전·답·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임차인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공사 지사장이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약정의 해지(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해지(해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사유 해소를 공사에 통보한 때에는 공사 지사장은 그 해지(해제)사유를 확인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아래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환수

$$\text{※ 환수금액} = \frac{\text{기지급 보조금총액}}{\text{보조금}} + \left(\frac{\text{월별 기지급 보조금}}{\text{보조금}}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365\text{일}} \times 10\% \right)$$

* 가산금은 매 월별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지급약정을 해지한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 이후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 종전의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자는 2008년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수한다

○ 공사 지사장은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약정의 상대방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약정의 상대방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반환독촉장을 발부하며, 반환독촉장은 3회에 걸쳐 매 1개월마다 발부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6. 사업성과 측정

○ 공사는 2010년 2월까지 사업성과 측정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09. 9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공사는 성과지표(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평가결과를 '10.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기준 : 쌀전업농 경영면적/전체 벼 재배면적

《환 류》

○ 농림수산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운영계획과 익년도 예산에 반영

IV. 기 타 사 항

1.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할 수 있는 연령 변경

2009년도	2010년도
○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 1935년 1월 1일 ~ 194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자 ※ 1940년 1월 1일 ~ 194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50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과	과 장 오병석 사무관 이상집	02-500-1951 02-500-1959
시 도 인증기관	시도담당과 인 증 기 관	시도담당자 인증담당자	

I.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6조 내지 제2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확대를 통해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을 2013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0%(저농약제외)로 확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1.0	6.2	9.7	10.5	3월말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비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9,599	17,546	26,305	42,309	197,415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49,599	17,546	26,305	42,309	197,415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4. 지원형태

- 자금채원 : 농특회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
-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 : 0.1 ~ 5.0ha
- 지급 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
 - * '03~'08년중 3회 지급받은 필지와 '06~'08년 3년간 연속하여 지급받은 필지는 '09년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6. 사업추진 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지침시달 및 홍보	(‘08.12월~ ‘09.3.31)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농업인)	(3.1~3.31)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4.20)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10) · 선정결과 보고(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20)
④ 사업량 배정 및 조정	(5.10~5.20)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림수산식품부, 5.1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5.20) · 사업대상자 선정 명단을 인증기관으로 통보(5.20)
⑤ 이행상황 점검 결과 통보	(5.20~10.31)	· 이행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인증기관 → 시·군·구, 10.20)
⑥ 사업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 소요예산액 신청(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0.30)
⑦ 보조금 지급	(11~12월)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지침 시달(‘08.12월~‘09.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09.2월~3월)
 - 홈페이지 안내, PCRМ 발송, SMS문자 전송, 반상회보 게재

시·도, 시·군(지자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등” 이하 함)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09.2월~3월)
 -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게재

-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09.3.1~3.31, 농지소재지 읍면동)
 - 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전산입력 관리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5.10)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10)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논밭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등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4.20)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통하여 Agrix으로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20)
 - 시장군수 등은 배정된 사업량에 의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에 Agrix으로 통보하여 이행여부 등을 확인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5.20) [별지 제4호 서식]

인증기관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요청 접수(시군구 → 인증기관, 5.20)
-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10.20)
-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2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Agrix으로 통보[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전화 : 031-463-1566), 지원, 출장소
- 민간인증기관(48개) : (사)흙살림,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주)부강테크, (사)정농회, 글로벌유농인 영농조합법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주)오씨케이, 천안연암대학 산학협력단, 영농조합법인 학사농장, (주)스페이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삼무친환경생활문화연구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진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여자대학교 친환경인증사업단 영농법인, 남도친환경인증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성농,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주)동부하이텍, 강릉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주)한국농심회, (주)지아이친환경인증사업단, (사)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회사법인 (주)팜슨, 네오바이오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울산, (주)온누리친환경

사업 대상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사업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중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은 인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인증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별지 제7호 서식]
 - 인증기관 변경으로 인증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제외하고는 인증기간이 계속되어야 함

3. 자금배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11~12월)

시·도, 시·군(지자체)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사항을 참조하여 사업대상자 변경, 지급기간 초과, 농가당 지급한도, 논밭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 직불금 소요액 지급 요청(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10.30)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Agrix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별지 제8호 서식]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농림수산식품부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정산 및 결과보고('10.3월)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무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
-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12월)
 -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 직불금을 계좌에 입금
-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사업비 정산 현황은 시도를 통하여 익년도 3.1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Agrix으로 보고[별지 제9호 서식]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반기별 1회이상 사업점검 실시
 - 상반기 : 직불금 지급 적정성, 신청 및 Agrix 입력 상황
 - 하반기 : 사업대상 필지의 이행실태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시·군)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의거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위(詐僞)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의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농림수산식품부

- 사후관리 등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시·도에 통보하여 적정처리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는 사업시행 익년도 3월중 인증실적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인증비율을 산출하여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
 - 친환경농산물생산비중율(%) :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 전체 농산물 생산량) ×100
- 만족도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과에서 조사표를 작성하여 12월까지 서면 조사

IV. 2010년도 사업신청 안내

- 2010년도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0.3.1~3.31)
- ※ '08~'09년 중 농가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하는 농가는 '10년부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1.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m², 호,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2. 품목별 농가수 및 재배면적

(단위: m², 호, 천원)

시·군		합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선정통지서

1.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명(법인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	-------	------

2. 농업인별 명세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대상농지			보조금 예상액
					인증 종류	재배품목 및 면적 (m ²)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대상여부 (O, X)	

※ 1ha=10,000m²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

[별지 제4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민간인증기관

우리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실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주요작물

※ 1ha = 10,000㎡

년 월 일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결과 통보

문서번호 :

수신 : ○○○ 시장(군수·구청장)

귀 시(군·구)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이행여부 등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업 대상자			신청농지				이행여부 확인결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 소재지	지번	면적 (㎡)	공부상 지목	

※ 1ha = 10,00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출장소장 ①

민간인증기관의장 ①

[별지 제6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 변경 신고서

구분	사업대상자			신청농지						변경 일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인증 번호	농 지 소재지	지번	면적 (m ²)	공부상 지목	재배 작물	
1	당초									
	변경									
2	당초									
	변경									
3	당초									
	변경									

※ 1ha = 10,000m²

200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가 ()사유로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첨부 : 승계된 인증서 등 관련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구청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지급 소요예산액

1. 인증단계별

(단위: m², 천원)

시·군		합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2. 품목별

(단위: m², 천원)

시·군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수			기 타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농가수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소계															
	논															
	밭															

※ 1ha = 10,000m²

[별지 제9호 서식]

200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비 보조금 지급실적

(단위 : 원)

시·군별	배정액	지 급 액			미지급액
		계	논부문	밭부문	
합계					
○○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추진실적

□ 사업 추진실적

(단위 : 호, 필지, ha)

시·군 별	구 분	계 획			집행실적			미집행실적							
								소계		인증취소		사업포기		기 타	
		농가	필지	면적	농가	필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별 집행실적

(단위 : 호, ha, 천원)

시·군별	구 분	합 계			유 기			무농약			저농약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m²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 작물별 집행실적

(단위 : 호, ha, 천원)

시·군별	구분	합 계			곡 류			채 소			과 실			기 타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농가	면적	금액
합계	계															
	논															
	밭															
○○	계															
	논															
	밭															
○○	계															
	논															
	밭															

※ 1ha = 10,000m²

※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자리까지 기재

51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이정형 사무관 홍만의	02-500-1761 02-500-1762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제5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09년 조건불리지역 정주농 비율 98.5% 유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이달농 지지율 (%)	98.5	-	-	'98.5	12월말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해당 년 정주농 비율(Agrix에서j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76,141	43,994	50,670	45,756	623,687
국고보조	54,753	31,071	35,748	33,582	437,696
○ 직불보조금	70,500	43,078	49,741	46,647	619,971
- 국고보조	49,112	30,155	34,819	32,653	433,980
- 지방비	21,024	12,923	14,922	13,994	185,991
○ 행정비(국고)	5,641	916	929	929	3,716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전국의 읍·면 지역 중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된 법정리
 - 경지율 22% 이하로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다만,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내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 없음)

2. 사업대상 토지

- ‘1.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내의 농지(밭, 과수원 등, “이하 같음”) 및 초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에 한함. “이하 같음”)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
 - ‘04~‘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04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제외 대상 토지>

- 쌀소득직불금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 단,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 을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자경 기간중 농지 소재지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거주 조건 必),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밭,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즉,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각종 개발사업예정지 안의 농지로서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다음의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농지
 -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농지
- ※ 다만, 2009년도에 영농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3.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지원대상 농지 및 초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법인 포함)으로서 경작지 소재 읍·면에 실거주(주민등록상 일치,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경작지 읍·면에 소재)하며, “나.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
- 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 가능하나 읍·면에서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농지원부상 농가주와 중복 신청여부 확인

나.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은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원/m², 초지 20원/m²
 -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m²당 20원 지급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연속지적도와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지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를 근거로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시·도, AgriX 유지보수단에 통지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 신청서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2월말까지)

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시·군에 통지(1월말)
 - 시·군에서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에 통지하고, 시·군 및 해당 읍·면 게시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
-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는 조건불리지역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이하 같음) 단위로 작성이 가능하며, 서식은 농림수산물식품부가 정하는 서식 사용

2. 사업신청 단계

가. 신규 신청하는 마을의 경우

법정리(마을), 읍·면

- 조건불리지역 마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 읍·면장은 마을의 구성원이 추천하는자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임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하의 운영위원을 둔다.
- 운영위원회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행정리)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원대상 법정리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대표 등을 선출하고,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법정리(행정리)의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가능
 - * 읍·면장은 마을 단위로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시·군·구

-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과 해당 운영위원회에 통지(3월말)
 -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확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의 경우

- 시·군(읍·면)에서는 '08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2월초)

* '08년에 지원한 마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 통보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마을대표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3. 사업자 선정단계

법정리(마을)

- 지원대상 마을의 구성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 지급약정(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본인이 직접 작성 (대리 작성시에도 서명은 본인이 직접 날인)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
 - * '08년에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 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희지 등 미경작지), 실제 경작(신청) 면적 등 사실 기재
- 운영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취합하여 기재항목 누락 및 서명 여부 확인과 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구성원 공람'을 거쳐 신청서에 서명날인
 - 운영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 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활용
- 운영위원장은 구성원의 합의로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서)'(이하 "관리협약(서)"라 한다)를 작성, 관리협약에 참여한 구성원의 약정신청서와 함께 읍·면에 제출(5월 말까지)
 - * '관리협약(서)' 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서식 사용
 - 운영위원장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처리
 - 관리협약에는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마을 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성원간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

<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임차농/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법인 사업자등록증(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사용(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서식 사용)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전산자료(Agrix시스템)를 활용한 자료확인 및 입력

- 읍·면에서는 신청된 농지(초지) 및 대상자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하여 확인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신청서만 확인·보관, 신규 신청자는 적격여부 확인 서류 등 구비
- 대상농지(초지) 적격여부 확인 후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등 제외대상농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 후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 현상, 소재지·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시스템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
 - 농지이용 현황(실경작 여부 등)은 서류, 마을대표 등을 통해 확인
 - 지적이 임야인 농지의 면적은 필요시 모바일 PC 등 실측 장비로 확인
 - 초지는 초지조성허가대장 및 초지실태조사결과 등의 관련 서류를 통해 초지법상 초지 및 중급이상의 초지 여부 등 확인
 - * 시·군 해당 부서에서 매년 10월 이전까지 초지관리실태 조사를 완료토록 조치
-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사업자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시스템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

(나) 현장 조사 및 확인 후 Agrix에 최종면적 입력

- 신규 농지 및 농가에 대해서 사실여부 현장 확인을 반드시 실시
 - 실제 농업(초지)에 이용되는지 여부와 창고, 묘지, 목장, 산림 등 일부 경작 농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
- 기 지원 농지·농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

- 운영위원장 등과 동행하여 실제 거주지 여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후 Agrix에 결과를 기재하고, 최종면적 입력
- 읍·면장은 확인결과를 시·군에 7월말까지 제출(제출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되, 사업신청서는 Agrix시스템상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군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조건불리지불제 지급대상 확인결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확정(8월말까지)
 - 현장확인은 자체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부적격 사항 발견시 일제조사 실시
 - 지급대상 확정결과는 마을별(법정리)로 일괄 통보(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하는 서식 사용)하고, 마을협약 이행표[별지 제2-1호 서식], 사업설명서, 안내문 등을 첨부

<지원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 **마을(농업인)**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변경을 신청(10월말까지)
- ◆ **읍·면** : 변경을 신청한 농지가 당초 지급대상인지 여부와 경영을 이양받는 신청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보고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서식 사용)
-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운영위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하는 서식 사용)
 - 보조금 지급전에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당해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하는 자로서, 대상자 변경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시·군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여 Agrix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말)

시·군

1)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 시장·군수

-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Agrix를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10월말)

○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체 이행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시·군간 교체 점검

(가)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 운영위원장 의견청취와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신청농가의 연간 30% 이상 실사(3년내에 1회 전수 조사)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징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 직불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 하여야 하며, 농지 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 ◆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당해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적정관리(필수의무)여부 확인

-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 보조금의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활용
 -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활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활용 불가)
- ◆ 기금액 및 사용방법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운영위원회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는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마을 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 임을 부기하고, 마을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다)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의무이행)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협약이행표 접수 후 자체 실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
- 마을에서 제출한 마을협약이행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점검결과 요건 이행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마을여건과 구성원 의사에 따라 1개 이상 선택하여 이행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 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정비사업 등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임지화(조경·관상수 식재) 등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기반정비, 토지개량 사업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등
- ※ 마을발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지역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구체적 선택 의무사항 추가 가능)

법정리(마을)

- 운영위원장 및 구성원은 자체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농가별 이행점검표’[별지 제2-1호 서식]로 9월말 까지 읍·면장에게 제출

읍·면

-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해당 마을의 개인별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 서식[별지 제2-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전달
 - * 제2-1호의 자체점검단 주소 등도 자필이 아닌 Agrix에 입력하여 자동 출력하여 활용
- 농지관리의무 이행점검은 시·군의 이행점검계획 및 요령에 따라 실시
 -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이나 별도 작성한 지번별 리스트 등을 토대로 추진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및 농업인은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 및 농업인은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 요건별 이행여부를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 최종 확정(10월말까지)

5. 자금배정,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 이행점검 완료 후 [Agrix 통계보고서 별지 8호(천원미만 올림)]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
 - * Agrix를 통한 행정 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 없이도 보조금 교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 통계보고서 별지 8호(천원미만 올림)]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구성원별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구성원별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m²당 밭·과수원 40원, 초지 20원)에 지원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재기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부정한 방법에 대한 제재기준 집행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분	점검결과	제재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3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마을공동기금을 활용한 마을활성화 사업 성과 등 평가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추진후 마을 이탈농 감소율(%)
 - 성과지표 산출식 = 당해년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 사업 당해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매년 읍·면에서 Agrix상의 사업신청서의 농가수(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를 갱신하여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 조사>

-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Agrix, PCRМ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 이후(10일 내외)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운영위원장 등 구성원 약 200명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08년 조건불리지역 법정리 중 미지원 법정리(마을)에 대한 '10 사업 추진 가능 면적 파악
- '08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지자체를 통한 '08 미지원 법정리에 대한 '10 사업 추진 가능 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사업시행지침 교육 및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 농업경영체등록제(등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미참여 하는 농가는 '10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불리직불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 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 신청인 신청서 기재상 주의사항

“*” 표시된 흙색 바탕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① 란은 신청토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 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 란은 신청인이 실제 논, 밭, 과수원, 초지(초지법상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③ 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④란은 신청토지의 공부상 면적 기재
- ⑤ 란은 묘지, 창고, 유희지 등 부적격 면적 기재하고, ⑥란은 실제 토지이용현상을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고, 보조금 신청(실제경작)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⑦ 란은 자경농지는 ‘자경’, 임차농지는 ‘임차’, 위탁농지는 ‘위탁’을 기재합니다.
- ⑧란은 마을대표가 최근 경작여부, 실제 재배면적 등을 참고하여 확인합니다.

※ 읍·면장 확인시 주의사항

- ⑨ 란은 신청농지의 대상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의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한 후 “적”,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합니다.
- ⑩ 란은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를 “○”, “×”로 표시합니다.
- ⑪ 란은 적격 토지로 확인된 논, 밭(초지)의 필지 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날인합니다.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보조금 지급요건

- 농지관리 의무: 사업개시 연도로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농지를 관리
 - 매년 1회 이상 경운 및 잡초제거 등으로 농지기능 유지
- 마을공동기금 조성 : 보조금의 30%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마을활성화 비용 등에 활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 마을여건과 주민의사에 따라 최소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이행

마을협약 이행표(200 년)

작성 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지정한 구성원이 작성합니다.
- 선택적 의무사항은 마을발전계획서 및 마을협약 합의 내용으로서 추진한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간단히 기록 합니다.

마을(영농회 등) 현황

마을(영농회)명		대표자 성명	
대상농지면적	m ²	참여 구성원수	명

필수 의무 이행 상황

○ 농지 관리					
① 대상농지에 관리(경작)의무 활동의 수행여부	예		아니오		

* 개인별 관리의무 미이행자 내역은 별지 제7-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관리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예		아니오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예		아니오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①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②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③	예		아니오		
- 시기: 월 일 - 실천사항:					

<별지 제2-1호>

신청농가별 이행점검표 (200 년)

- 본 이행표는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신청농지 농지관리 이행상황을 점검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본 이행표는 마을협약 이행표 첨부서류이며, 읍면의 이행점검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청농가현황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농지관리의무이행상황

②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 면 적 (㎡)						⑥ 농지관리현황 (작물명, 방치, 시설유무 등)
시·군	읍·면	리	지번		공부상 면적	신청시 확인면적 (A)	실제경작(관리)면적(B)		제외할 면적 (A-B)		
							논	밭	과수원	초지	

200 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자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확인자	읍·면 담당자 : 소속 성명 (서명)			시·군 담당자 : 소속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협약 이행표의 첨부서류이며,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신청농지에 대한 농지관리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실제 관리면적 및 현황 등을 작성합니다..
- * 동 양식은 ‘신청시 확인면적’, ‘이행점검단’까지 기재된 상태로 Agrix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시·군의 지원대상자 확정후 읍·면에서 출력하여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에 전
- 읍·면, 시·군 확인란은 본 이행표를 근거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확인 서명

52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정희 사무관 김현수	02-500-1816 02-500-1823

I.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해 도시민 유치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13년까지 88% 달성 목표)
 -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역축제, 경관작물관련 축제,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등 연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06	'07	'08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84	-	81.7	95.5	2008.11	시행마을/연계마을×100

4. 용어의 정의

- 초화류 : 꽃이 피는 초본식물을 말 함
- 동계경관작물 : 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기준으로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11~2월)를 지나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하계경관작물 : 씨앗 또는 뿌리가 월동기를 거치지 않고 개화로 이어지는 작물
 - ※ 다년생 작물의 경우 파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2년차부터는 동계작물로 분류
-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진입로·안길·공터 등 경관 가꾸기, 역사문화적 가치의 계승발전,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기반(원두막, 쉼터 등), 교육·홍보활동 등
- 집단화 : 농경지가 필지끼리 연접하여 있는 경우를 말 함. 다만, 농로, 수로, 제방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30m이내인 경우는 예외
- 농업인등 :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농업법인 포함)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68180	1,680	1,408	3,758	13,750	247,584
보 조	187726	1,200	1,000	2,646	9,640	173,240
용 자						
지방비	80,454	480	408	1,112	4,110	74,344
자부담						

II. 200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마을별로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약 체결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나.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 (목본류는 제외)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 : 경관협약 마을주민에 대한 경관보전활동 비용 지원
 - 단, 마을경관보전을 위한 기술 지원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마을주민의 직접 인건비성 경비는 지원 금지
- 지급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ha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30만원/ha
 -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다. 2009사업비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국 고	용 자		
계		13,750	13,750	9,640	-	4,110	-
○ 경관보전직불제	10,000ha	13,700	13,700	9,590	-	4,110	-
- 경관작물재배	10,000	10,700	10,700	7,490		3,210	
- 마을경관보전활동	(10,000)	3,000	3,000	2,100		900	
○ 행정 경비	1식	50	50	5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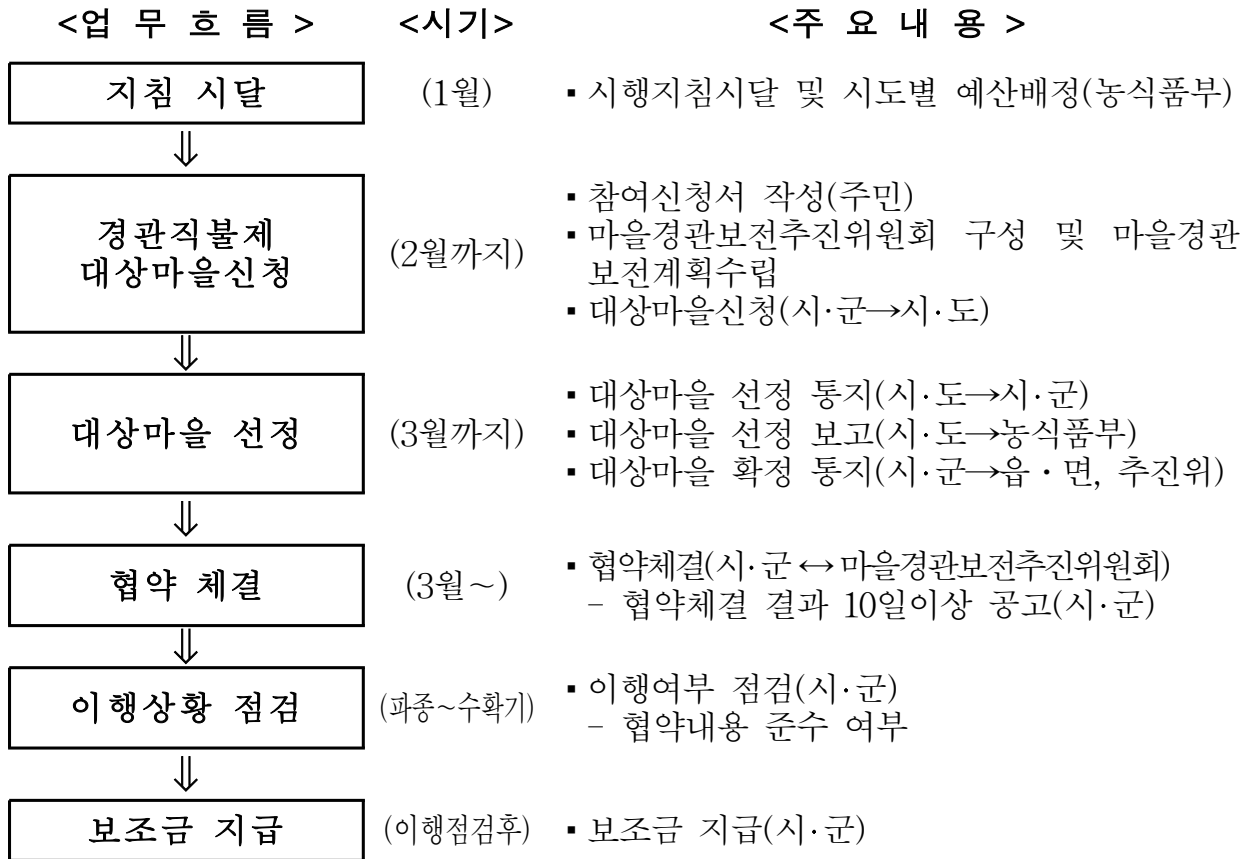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전화 02-500-1823)
- 시·도 : 농정과, 농산과
- 시·군 : 농정업무 관련과

다.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도에 따라 지자체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용

3. 사업 대상마을 선정

가. 대상지역 선정 요건

- 읍·면의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되는 농지
- 지역축제 및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면서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최소 0.5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 2ha 이상 되어야 함
- 철도 및 지방도급 이상 도로변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적극 유도
- * 조건불리지역, 논농업직불 대상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포함 가능

※ 제외 대상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다음의 토지. 다만,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경관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시행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를 거쳤거나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토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안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토지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으로서 향후 지급요건 이행이 곤란한 토지

나. 대상마을 선정절차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함.

- 추진위원회 구성은 동, 리(행정리 또는 법정리) 단위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이장을 포함한 마을주민 3인 이상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함.
-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2)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및 당해농지의 실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고 협약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 세부추진계획에는 경관작물 식재계획, 마을경관보전활동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포함

(3) 사업신청서 작성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
-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시 활용하도록 협조

(4) 사업신청

-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농업인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지적도,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임대차 적법여부, 실경작확인서 등으로 대조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농지원부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및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AgriX로 입력하여 제출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 확인결과[별지 제4호 서식] 및 사업신청농지의 위치도(축척 1/25,000지형도)를 첨부,

(5) 대상마을 선정

- 사업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대상마을의 선정의 객관성·공정성·도농교류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추진
 - ※ 평가항목은 경관자원의 보유정도, 경관작물의 식재계획, 지역경관 관리 계획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농촌관광과 연계계획 등을 종합 평가
 - 읍·면장을 통해 신청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대상마을요건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사업대상 마을선정 및 통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다. 사업 대상마을 확정결과 통지

- 사업대상 확정결과 통지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은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시행마을 및 대상농지, 대상자 확정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농지소유자에게 일괄 통보

라.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별지 제8호 서식]
 - 다만, 최근 3개년 연속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마을중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성과가 우수하고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에 대하여는 협약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되,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시군 전체 시행면적으로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군·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지급

(1) 지급요건

-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마을에서는 협약서에 명시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경관작물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 성실한 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실시
 -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실시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 작물 수확후 농지정비
 -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구역내 수확물과 농지를 정비
 - 경관작물 재배 농지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 유흥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급 가능

<마을경관보전활동>

- 마을경관 협약시 제시한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 이행
- 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씨앗, 종묘, 기구 구입 등)
-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및 재료비
-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 기타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여행성 경비를 제외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마을경관보전관리 활동

(2) 이행여부 점검

- 점검기관 : 사업주관기관(시·군·구) 책임하에 실시

- 점검시기 : 마을별 2회(파종 및 개화상태, 마을경관보전활동 상황 확인)
- 점검방법 : 협약내용에 따라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경관작물 파종 및 개화 상태 확인
 -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관리 상태 확인
 -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이행상황 등
 -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사진등 증빙 서류 확보)
 - 점검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현황)

바. 사업검정 및 사업비정산

(1) 보조금 산정기준 및 지급방식

- 시장·군수는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추진위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지급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 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날인 관리
- 보조금 산정기준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직불금은 협약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
 - 경관작물 재배 : 동계작물 m²당 100원, 하계작물 m²당 170원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경관작물재배 협약면적에 비례 하여 m²당 30원
 - * 산출결과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버림
- 보조금 지급방식
 - <경관작물재배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처리
 - 파종 및 개화상태를 확인하여 최대 50%까지 지급 가능하고, 이후 지급 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 지급

- 동계작물 재배에 따른 개화시 지급금 50%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
- 지급 및 정산결과는 AgriX로 입력하여 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마을경관보전협약내용을 확인하고 추진위원회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경관보전활동에 지출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보관 관리

(2) 보조금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지급 요건	점검 결과	제재 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과종 및 식재 불이행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면적부족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관리부실	보조금 감액 또는 다음연도 선정 제외
마을경관보전활동	협약내용 이행여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지급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 기준(예산지원 계획 기준)
 - 필지별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감 10%
 - 생육 및 개화가 되지 않은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 할때 : 감 10%
 - 필지규모가 0.5ha이상인 경우 탐방로를 설치하지 아니한때 : 감 10%
- 마을경관보전활동은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따라 증감처리

4. 행정사항

가. 사업대상 변경

- 농지의 매매, 임대, 마을경관보전활동계획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농가→추진위원장(경유)→읍·면장→시장·군수(검토 및 변경 결정)
-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자의 신청 자격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7호 서식]
- 변경된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성과측정단계

- 매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시행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평가지표 : 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및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도(전체 지구수 대비 프로그램 연계지구수 비율)를 지표로 선정
- 평가일정 :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다.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평가원칙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성과 극대화에 노력
- 평가내용 : 마을단위 프로그램 연계정도,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 주변환경 정비, 식재면적, 마을경관보전활동 이행상황 등

<환류>

-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연도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 고려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과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 등

라. 보 고

-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6월말
 -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Ⅲ.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수요조사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4.31)
 - * 신청서식 : [별지 제9호 서식]
-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마을주민
-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

1. 대상지역	도 시 · 군 읍 · 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m ² (농가수 : 호) (논 m ² , 밭 m ² , 과수원 m ² , 기타 m ²)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과종~수확)
			m ²		~
			m ²		~
	계		m ²		~
5. 경관관리 및 도·농교류 연계계획					
6. 마을경관 보전활동계획					
<p>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진위원장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p>					
<p>※ 불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서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p>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상 면적(m ²)					서명(인)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1									
2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										
①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공부)	④면적(m ²)				⑤경작시기 (과중~수확)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 타		
	합 계									
<p>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p> <p>1. 참여신청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중 하나) ○ 실경작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p>2. 변경신청서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과중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
(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마을명		추진위원장	
-----	--	-------	--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대상면적 (m ²)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마을경관보전협약(안)

마을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약참가자	총 명 (자연인 , 법인)
대상면적	총 m ² (논 , 밭 , 기타)

협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 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 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이장 등 마을주민 3인 이상을 포함 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의 관리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경관작물 식재 필지 단위가 0.5ha 이상은 탐방로 설치

다.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라.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마.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바.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희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4. 마을경관가꾸기를 위한 경관보전관리 활동(공동활동)

가. 마을진입로, 안길, 공터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

나. 마을축제, 체험·관광(원두막, 쉼터)을 위한 소품구입

다. 마을의 전통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라. 국내 우수사례 지역 방문 견학 실시

* 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주민 활동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지급은 제외
다만, 기술적 지원을 위해 필요 인건비를 제외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 및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과 마을경관보전활동비로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③마을경관보전활동비는 마을대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을경관보전활동기금”임을 부기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 2/3이상의 인감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관리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

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경관작물재배관리

가. 과중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나.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다.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2. 마을경관보전활동관리

가. 마을경관보전활동 세부계획서에 따라 활동을 하지 아니한때 : 감액 또는 회수

나. 마을경관보전활동비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 감액 또는 회수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 관 작물	대 상 면 적(m ²)				
		시군	읍면	리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마을경관보전활동			
	소계	국고	지방비	소계	국고	지방비	

-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은 대상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A4횡으로 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엑셀로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과 장 노병환 사무관 안창근	02-500-1754 02-500-175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차 장 김동운	02-2127-7603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2.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제료 지원단가, 가입인원 및 재해시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안전공제 가입율	48.0	37.4	44.6	46.1(p)	2009.1	(당해년도 가입건수/ 농림업경제활동인구)×100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 1,670천명(2008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188,660	45,326	55,678	64,352	1,114,440
보 조	94,330	22,663	27,839	32,176	557,220
자부담	94,330	22,663	27,839	32,176	557,22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안전공제 : 만 15세 ~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 등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안전공제
 - 농업인 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
 - 임업인안전공제 : 영림활동에 종사하는 임업인
 -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 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 농기계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파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 광영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자부담 전액으로 가입은 가능함)

3. 공제 가입 및 국고 지원 범위

- 공제가입 절차
 - 공제 가입 안내 (지역농협 등) → 가입 신청 (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공제가입 금액 및 공제료 산출) → 공제증권 발급
- 공제료 납입방법 : 일시납
- 국고 지원 범위
 - 농업인안전공제 : 피공제자당 1구좌 기본계약 공제료의 50% 지원
 - 농기계종합공제 : 대상농기계 공제료의 50% 지원

4.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공제사업자인 농협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제 요율을 산정하고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
- 공제사업자는 판매를 위탁할 수 있음

5. 공제금의 지급

- 지급시기
 - 농협은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한다. (단,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이내에 공제금 지급 가능)
- 지급절차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청구→현지조사(필요시)→공제금 지급(농협)
- 사업관리주체인 농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공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인안전공제 및 농기계종합공제 약관에 의함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임대용(농작업 대행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공제료를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공제의 설계 및 준비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제 요율 및 약관 변경시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

- 사업계획의 수립
 - 익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사업시행 전년 15일전(12.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공제요율 및 공제약관 변경 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2. 공제의 가입

-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하고자하는 농림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하고,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 납부
- 공제 판매자는 가입자에게 보장내용 등 약관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한 후 공제증권을 발행

가입자(농림업인)

- 가입하고자하는 공제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공제료를 납부

판매자(농협)

- 약관의 설명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에게 농림작업의 범위, 공제금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한 후 별첨 1의 국고지원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공제료의 수납 및 공제증권의 발행
 - 가입자로부터 공제료를 수납 한 후 공제증권 발행

3. 공제금의 지급

- 가입자는 공제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농협에 공제금을 청구하고, 농협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제금 지급

가입자(농림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시 공제를 가입한 조합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공제금 지급 신청

농협중앙회

-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 농협중앙회는 공제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사업비 배정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분기 시작 전 농협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농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공제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제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익년도 1.15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의 공제 가입부터 공제금 지급까지 신속·투명한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관리주체(농협중앙회)

- 공제 판매자 교육 실시
 - 농협중앙회는 가입절차,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 공제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공제 판매 실태를 확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제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역농협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공제가입 청약서 등 확인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농협중앙회의 농업인 재해공제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IV. 기타사항

1. 농업인 안전공제 보장수준 확대

- 농업인 안전공제의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속 확대

2.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 홍보

- 지역 농협은 소식지,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농림업인에게 홍보
- 농협중앙회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홍보물(포스터, 전단, 리플릿, 약관 등)에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팀 장 김미숙 사무관 이태용	02-500-1825 02-500-1929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부	과 장 서병오	02-3270-9163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어려움, 개방화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및 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세대당 연간 평균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50% 지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0.83%이상 되도록 지원
 - 농어업인세대 건강보험료 경감률(%) : ('07) 0.80% → ('08) 0.82% → ('09) 0.83%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률(%)	0.83	-	0.80	0.82	2010. 1.	(세대연간 건강보험료 경감액/농어업인세대당 연간평균소득)×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234,603	127,176	135,634	170,704	674,683
보 조	234,603	127,176	135,634	170,704	674,683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

1. 농어촌

- ① 군(郡) 및 도농복합시(市)의 읍·면
- ② 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어촌

- ① 농업진흥지역
- ② 개발제한구역
- ③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단, 당해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 농어업인의 범위

※ 농어업인의 구체적인 범위 : 별첨 1 참조

2.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경감지원 22% 포함시 50%지원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
- 농어업인은 경감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지역으로의 이주, 건강보험 종류 변경(직장→지역) 등에 의한 신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를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출 받은 확인서의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이·통장

- 신규 대상자의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지자체(읍·면·동)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농지원부,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 및 지원대상 지역 거주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확인시 최종 확인할것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제출 받은 건강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확인서 제출을 받은 즉시 검토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 내역 등 통보
 -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되, 당해 회계

연도 내에서만 적용

- 소급 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연2회 일제조사 실시(4월, 10월 기준)하되
 - 상반기(4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조사기간 중 시도계획에 의거 시·군·구 사업담당자간 교차점검 실시
 -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연1회(4월)만 실시
- 각 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만 분류하여 일제조사시 농어업인을 확인하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 적용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 사유를 통보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결과시 확인된 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발굴된 신규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월액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농어업인 확인 서류 제출 생략)

농림수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관계자 교육
 - 시·도의 건강보험료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 요령 등 교육
 - 각 시·도에서 시·군·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 협조 요청 시 업무사정 등을 감안하여 강사 지원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시·도(지자체)

- 관계자 교육 참석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각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관계자 교육에 참석하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달교육 실시하고, 일제조사에 대한 시군구별 담당자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제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대상지역 거주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별첨 2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의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명단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으로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비 예산을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분기별로 예산배정

농림수산식품부

- 공단으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업비 신청
 - 농림수산식품부의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분기별로 사업비 예산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제외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여 집행
 - 지역가입자의 주민전출입, 지역변동일 또는 신고한 날짜가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소급 또는 해제, 2일부터는 익월부터 적용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기간은 경감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 사업비 정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12.27.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물품부에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를 농림수산물품부로 통보(영수증사본 첨부), 부족금에 대해서는 전용 등 조치
- * 회계 및 소관 : 농림수산물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징수관
- * 과목 : 경상이전 수입(2009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반납금)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농림수산물품부에서는 공단의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

사업관리주체(국민건강보험공단)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매월 건강보험료 산정 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사결과를 연2회(상·하반기) 농림수산물품부로 통보

농림수산물품부

- 농림수산물품부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4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수산물품부(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 점검내용 : 자체 조사 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제재》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IV. 기타사항

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추진

- 농어업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 추진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지원배제하는 방안 마련

2.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고지 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

<별첨 1>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 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 · 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 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 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 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 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 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 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 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 품산업기본법 제3 조제2호 및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1 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 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

<별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

구 분	관할 지역	주 소	전화번호	담 당	
				소속	성 명
본 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02)3270-9163	부과부	서병오
서울지역 본 부	서울 강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2 CCMM빌딩 6층	02)2126-8855	자 격 징수부	김영미
부산지역 본 부	부산 울산 경남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874-14 국민건강보험빌딩	051)801-0572	자 격 징수부	이미해
대구지역 본 부	대구 경북	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48-3	053)650-8841	자 격 징수부	윤종대
대전지역 본 부	대전 충남 충북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32-3 국민건강보험빌딩 5층	042)605-7161	자 격 징수부	우순태
광주지역 본 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자치도	광주시 북구 두암동 882-25	062)250-5562	자 격 징수부	정은자
경인지역 본 부	인천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8-6 국민건강보험 빌딩	031)230-7888	자 격 징수부	강정훈

[별지 제1호 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font-weight: bold; margin-right: 10px;">농 어 업 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 인 서 </div> </div>							
신 청 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농어업인 세대원						
	농어업인 해당일 ¹⁾		년	월	일		
	주소	시 도	구 시(군)	읍 면 동	리 마을	번지	
	종사 직종	<input type="checkbox"/> 농업인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임업인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어업인		영농(어)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지 임야 어선 양식	ha ha 톤 ha	
	농수산물 판매액	원/년		영농(어) 및 법 ²⁾ 인 종사일수	일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와 소득정보를 농림수산물 판매부에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신청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농 어 업 인 확 인	1 차 확 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 이(통)장 성명 : (인 또는 서명)					
	2 차 확 인	확 인 내 용			확 인 결 과	확 인 자(성명)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 치		
		②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 주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 사		
		④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읍·면지역			맞음·아 님	
			㉡ 일반 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맞음·아 님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 님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단,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함)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洞)지역)			맞음·아 님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 치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 ※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임
- ※ 1) 농어업인 해당일 : 해당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내에서 건강보험료 소급적용(1, 2차확인시 확인할 것)
- ※ 2) 법인관련 농업인은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1년이상)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 * 단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출하·가공·수출활동 종사자,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기 재 요 령

-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통)장에게 사실 확인(1차)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사무소에 신고(2차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읍·면 전지역 및 일반 시(市) 동(洞)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준농어촌[특·광역시내 농업진흥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특·광역시 및 일반 시 동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부지역(제1종 일반·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사람
(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 임업인

- 1) 3헥타르(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기관명(부서명) :

【전화번호 : FAX : 담당자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국비 보조 신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전분기까지 배정(A)		/4분기 요구		/4분기까지 누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인원수	국 비
총 계						
경 기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210mm × 297mm)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보고

1. 총괄

(단위 : 명,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집행(정산)액(C)		정산잔액(B-C)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인원수	금 액
농어업인건강 보험료지원								

- * 주) 1. 예산액은 당초(년초) 편성된 예산임
 2. 교부결정액은 연말에 교부결정이 확정된 금액이며
 3. 집행(정산)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에게 실제 지출된 금액임
 4. 정산잔액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반납할 국비를 기재

2. 세부내역별 지출 내역

(단위 : 명, 원)

구 분	집행(정산)액		비 고
	인 원 수	금 액	
농업인별	농 업 인		
	임 업 인		
	어 업 인		
	합 계		
시·도별	경 기 도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 계		

- * 주) 축산업은 농업인에 포함

55	농어업인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팀 장 김미숙	02-500-1825
		사무관 이태용	02-500-1929
국민연금공단	납부지원팀	팀 장 이경구	02-2240-1241
		과 장 이은정	02-2240-1233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2.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가입자지원율을 연금가입자대비 85% 지원
 - 연금가입 농어업인수 : ('07) 339천명 → ('08) 321 → ('09) 304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연금가입자 지원율(%)	85	83	85	84	익년 1월	(연금지원자/연금가입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431,000	76,054	88,398	91,665	337,751
보 조	431,000	76,054	88,398	91,665	337,751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 농업인
 -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단,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 및 제10조의 임의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2. 제외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간이과세자
 - 농업·임업 또는 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3.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9년 최고 32,85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730,000원)
 - * 지원기준 변경 : ('07까지) 등급제 → ('08부터) 기준소득금액(월)

4. 지원형태 및 납부방법

-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
- 농어업인은 부과된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신규대상자의 지원 신청(농어업인 확인)

-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에 의한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에 의하여 신고(제출)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동 서식에 의한 신고(제출) 생략
 - 「농지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축산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업을 등록한 자
- 농어업인 해당 여부
 - 농어업인의 기준(붙임)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모두 농어업인으로 간주
 - 농업·임업·어업인 구분 시 농업·어업·임업을 겸업하는 경우 주소득원이 있는 분야를 기록
 - (예) 농업소득 40%, 어업소득 60%의 소득을 올리는 자는 어업인으로 기록
 - 축산인의 기준은 농업인의 범위에 준하여 파악
 - (예) 축산경영을 통하여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간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간주
- ※ 농어업인 확인서는 농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이·통장

- * 1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농·임·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통장 또는 어촌계장
- 농어업인 확인 요청 시 농어업 종사 및 농업관련 법인에 1년 이상 고용 여부 확인
 - 인근 농경지 경작자 및 법인관계자 등의 면담,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농어업 종사 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일 확인

읍·면·동장

- * 2차 확인 :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 확인)
- 이·통장의 1차 확인을 거쳐 제출된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의 2차 확인
 - 주민등록전산조회, 토지정보시스템, 각종 직접지불제 신청 서류 등을 확인

- 또는 법인관계자와 면담 및 관련자료 요청 등을 통해 농어업 종사여부를 확인
- 농어업인 확인서의 『농어업인 해당일』을 반드시 2차 확인시 최종 확인

국민연금공단

- 제출받은 연금보험 지원대상 농어업인의 확인서 검토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통보
 - 확인서 제출을 받은 즉시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지원내역 등 통보
 -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 신규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되는 시점부터 소급적용하되,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적용
 - 소급적용 시점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이·통장의 농어업인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시행지침 수립·시행

2.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일제조사

- 농어업인 건강 및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신규 대상자와 부적격 대상자를 파악·반영하기 위하여 연2회 일제조사 실시(4월, 10월 기준)하되,
 - 상반기(4월)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조사기간 중 시도계획에 의거 시·군·구 사업담당자간 교차점검 실시
 -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연1회(4월)만 실시
- 각 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신규 및 부적격 대상자 조사
 - 단,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대상자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불금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만 분류하여 일제조사시 농어업인을 확인하도록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제조사 결과 발굴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제조사 결과 반영시점부터(기존 농업인이었던 경우에는 회기 내 소급 적용 가능)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부적격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 사유를 통보
 - 국민연금공단은 일제조사결과시 확인된 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발굴된 신규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월액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농어업인 확인 서류 제출 생략)

농림수산식품부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 일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통보
- 관계자 교육
 - 시·도의 건강보험료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 요령 등 교육
 - 각 시·도에서 시·군·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 협조 요청 시 업무사정 등을 감안하여 강사 지원
- 일제조사 추진상황 확인
 - 시·도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및 조사결과 확인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결과 반영 내역 확인

시·도(지자체)

- 관계자 교육 참석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각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관계자 교육에 참석하고, 시·군·구 담당자에게 전달교육 실시하고, 일제조사에 대한 시군구별 담당자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 시·군·구 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제조사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일제조사 리스트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대상지역 거주여부 및 농어업인 해당여부를 조사
-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협조
 -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일제조사 추진상황 현지 확인 시 현장 안내 및 조사 상황 제출
- 일제조사 결과 통보
 -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일제조사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통보(별첨 2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일제조사 추진계획이 통보되면 현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 작성 및 배부
 -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의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명단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명단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명단과 일치하는 명단은 제외하고 일치하지 않는 명단으로 일제조사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에 배부
-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협조
 - 일제조사 관계자 교육 및 현지 확인 시 담당자 참석, 자료 제출 등 협조
- 일제조사 결과 반영 및 통보
 - 시·도로부터 통보된 일제조사 결과를 확인 하여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부적격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배제 및 해당사유를 통보하고 연금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며,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농림수산식품부

- 매월 말 국민연금공단이 사업비를 신청하면 예산 및 자금배정

국민연금공단

- 사업비 신청
 - 매월 하순 경 전월 분 농어업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정산하여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농어업인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농어업인에게만 지원혜택이 있음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은 부적격자 등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체 전산망을 이용한 조사 등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공단의 자체 점검사항을 확인

국민연금공단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연 1회)
 -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전산조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 1회)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매월 연금보험료 산정 전 조사계획에 의거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유를 통보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자체조사결과를 연2회(상·하반기)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예산의 지원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하여 부적격 대상자 지원 등 부당집행 사전방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점검일정 : 연 2회 이상(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국민연금공단 본사
 - 점검내용 : 자체조사계획 수립여부, 점검내역, 부적격자 조사 실적 등

《제재》

- 조사 결과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익월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결과를 통보

5.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국민연금공단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산결과보고를 토대로 측정

IV. 기타사항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개선 추진

- 지원기준인 기준소득금액을 상향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월 32,850원을 지원
- * 기준소득금액 : ('08) 620천원/월 → ('09) 730천원/월

2. 농어업인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양식 변경

-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등으로 일부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농어업인확인서'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에 관한 내용 삽입

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홍보물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민연금공단은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 보험료 고지 시 농어업인이 정부지원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시 통보

농어업인 범위

1. 농업·어업의 개념

구 분	내 용	관 련 규 정
농 업	1. 농작물 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과실작물재배업, 화훼작물재배업, 특용작물재배업, 약용작물재배업, 버섯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2. 농어업인의 범위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4호와 5호중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 및 제10조의 임의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5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13호

<붙임 2>

[별지 제25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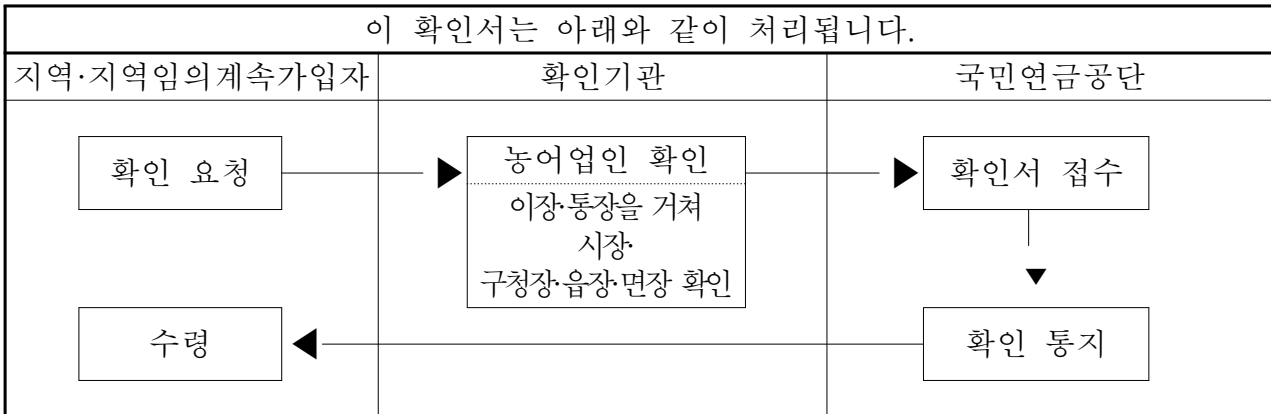
(앞면)

처리기간			
3일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¹⁾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농업인(축산업인, 임업인, 법인종사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어업인	
연간 농수산물 판매액		원	
연간 농어업 종사일		일	
법인에 1년이상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단,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종사자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의 고용일수 : * 단,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 종사자 (상기지는 법인에서 고용분야가 명기된 고용기간 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할 것)	
농어업 규모	농지	m ² , 어선	톤, 양식 ha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²⁾	국민연금공단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정보 중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와 소득정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공하여 사업추진시 정책자료 및 고객만족도조사 등에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장, 통장 확인	이장/통장 (인)		
위의 사람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동장/면장 (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 1) 농어업인 해당일 : 해당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내에서 연금보험료 소급기준일(1, 2차확인시 확인할 것)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의 농어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업인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1.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자 (간이과세자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제외)

《 농어업인 구분 》

농업인(축산업인 및 임업인 포함)	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p>* 단,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 및 제10조의 임의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p> <p>※ 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배업 :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재배업 ▪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 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p>※ 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및 양식업(종묘생산을 포함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2. "농어업인 구분"란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농업관련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에 1년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법인으로부터 고용일수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농어업인 확인서에 첨부하고, 해당란에 "☑" 표시 하십시오
 4. 농어업인 확인서는 자력취득신고서 또는 내역변경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농어업인 확인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시장·구청장·읍장·동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사무가 위임된 경우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6. 농업소득·임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또는 농림어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간이과세자는 제외)을 등록하거나 과세유형일반과세로 변경되는 등 농어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농촌개발분야】

V. 소득원개발

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과장 손건수 사무관 김홍철	02-500-1808 02-500-1815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소득증대에 기여

2.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내지 제76조(지정 취소 등)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제한없음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3만㎡ ~ 100만㎡미만
 -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림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편의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 체육·휴양시설 : 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 캠핑장등
- 교양시설 : 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 등
- 개발방법 및 유형
 -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등과 연계·조화되도록 개발
 -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하여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되도록 개발
 -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
 - 자연학습형, 청소년심신수련형, 주말휴양형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추진절차 : 붙임 표1 참조
 - 농림수산식품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 시·군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고시, 사업계획 승인(농정심의회 심의) 및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

2. 사업자 지정단계

(1) 사업계획승인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 등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한 때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서 지정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분류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이용계획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역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여부등 검토
- ※ 사업계획변경 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가능

3.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매년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액 또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 6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
 - 준공검사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공공사업에 준하여 추진하여야 함
-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되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함
 - 용지매수보상비는 공사비에 우선하여 가능한 전액보상하고, 동일인 토지에 관한 보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함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및 용지매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의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별표5)를 적용
- 지적공부정리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조속히 확정측량을 필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

4.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함(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 엄금)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 등 사업자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실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및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 기관에 승인 및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운영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조치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실수요자에게 분양된 편의시설은 실수요자 명의로 등기 이전
 - 시설 및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다.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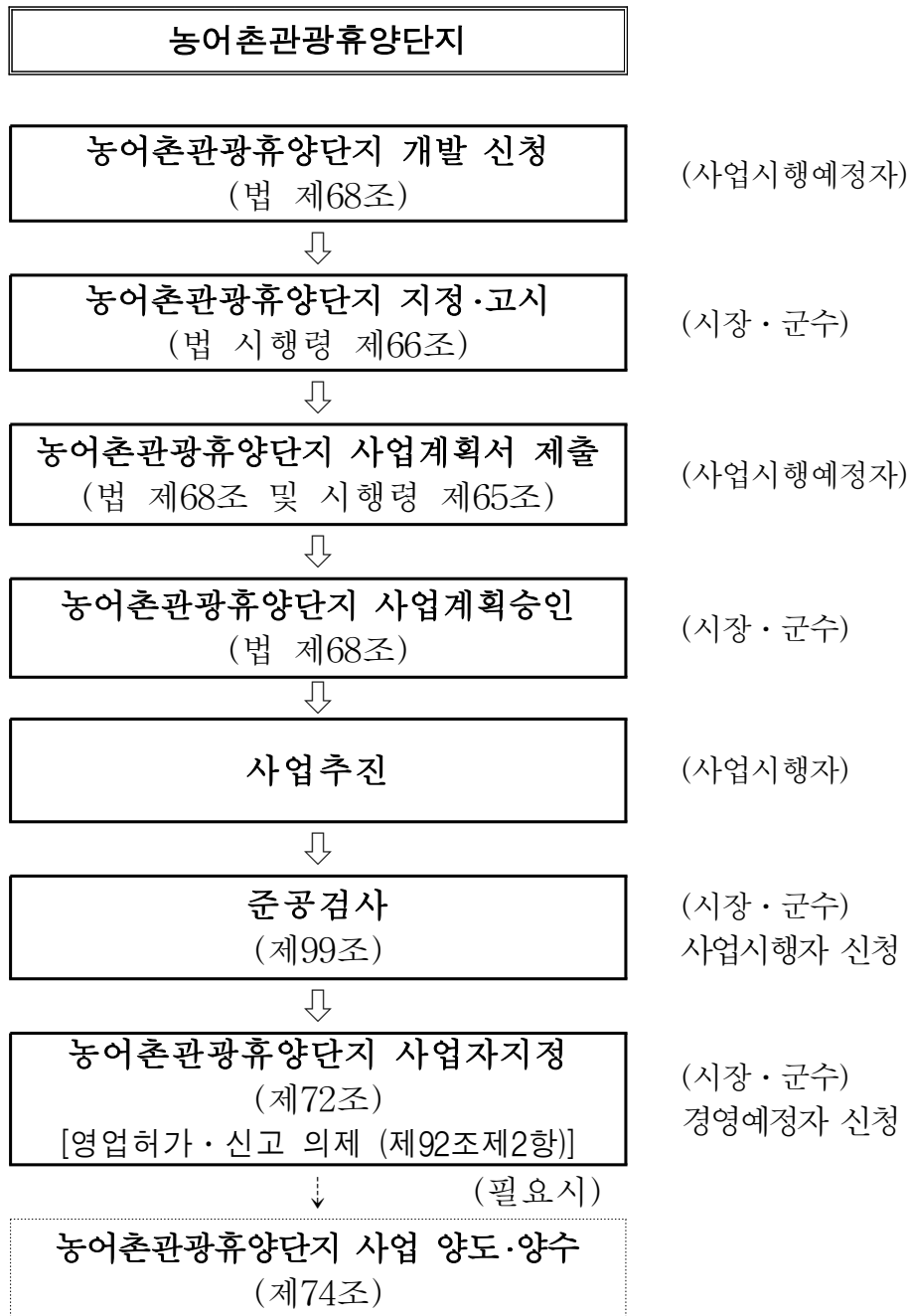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제출양식은 별도 통보)

[표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정비법]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는 자



<별지1-1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서					
사업 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명칭					
위치					
사업규모		㎡ (답 전 과 대지 기타)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업비		백만원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p>농어촌정비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농촌관광휴양단지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 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6.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분양·운영계획 7. 기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에 필요한 서류</p>					

<별지2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서

지 구 명 : (사업 규모 : ha)

소 재 지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응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응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응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 입식	합계	m ² ·마리																
	유실수																	
	축사(가축) 특용작물																	
농수산부 대시설	농업전시관 학습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 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기타시설																	
	·																	
	·																	
	·																	
	·																	
기반 시설	상수도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설	식																
	·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3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서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별지4 서식>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구지정의견서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입지여건(도로, 교통, 환경등) 및 지역개발계획과의 관계
3. 농업여건 구비실태(지구내 연접지역)
4. 참여농가의 실질소득 연계 및 소득효과 여부
5. 지역특산품(희귀작물, 토산물, 민예품 등) 생산판매 연계여부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등 타법령에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7. 기타의견

200 년 월 일

○○ 시장·군수

(인)

<붙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000평	1,0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자두 100평
- 축산	500평	500평	5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50평/1동	5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 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② 관광농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사무관 손건수 사무관 김홍철	02-500-1808 02-500-1815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물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농업·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림어업인 등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69조(관광농원의 개발), 제70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의 지정), 제74조(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 제76조(지정 취소 등)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영농체험시설(농장면적) : 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이상으로서 농원면적의 20%이상 조성
- ※ 대규모 양돈장등 공해유발사업은 제외
- 자유키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 시설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해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

-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의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 별지 표1의 예시(유형 및 시설)내용 참조

3. 지원자금 및 요건

-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 (단, 관광농원사업 외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 용자(농업종합자금) : (시설자금)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 준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정구역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구역을 분산 계획한 경우 시장·군수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보정하게 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업·농촌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영농체험시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위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추진 체계〉

- 농식품부 : 기본방침시달
- 사업시행자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군 :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감독 등

※ 추진절차 (붙임 표2 사업추진체계도 참조)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2. 사업자 지정단계

(1) 사업계획승인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 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보완·변경 또는 조건부 승인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여부등 검토
 - ※ 사업계획변경내용이 국토이용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후 가능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필요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해당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게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외에는 가급적 억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

-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농원면적의 20% 이상 농장조성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변경여부 결정
 - 사업자의 능력에 비해 과다한 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기성농원의 사업장(면적)확장시에는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변경승인여부를 결정
 - ※ 기성농원에 연결하여 도로, 농로, 소하천 등이 있는 경우
 - 숙박시설, 음식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도범위내에서 변경승인
 - 또한, 숙박·식당등 위락시설의 확대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개발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공정계획은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별지5서식)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 등이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준공후 시장·군수에게 사업자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서식)
 - 사업 준공검사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동시에 신청 가능
 - 시장·군수가 관광농원 사업자지정을 한때에는 사업자지정증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 서식)
 - 식당·숙박시설등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작목입식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건축분야 등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도·점검 실시

3. 사업자 시행단계

(3) 사업시행단계(개발단계)에서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등 엄중하게 조치
 -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정의 변경으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추진

- 관광농원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및 시설물의 설치등 관광농원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관광농원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지 않아야 함
- 사업자는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시설·위생관리 철저
- 대규모 호화시설 설치등 사업자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투자는 억제하여 내실있는 경영 적극 도모
- 사업자는 시장·군수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 관광농원을 양도·양수할 수 있는자는 농어촌정비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등에 한하며, 관광농원을 양수한 자는 관광농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 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게 건전하게 운영 되도록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광농원사업의 건실화 도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관광농원내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농어촌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작목입식·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등을 점검하고 제반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92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 관광농원의 시설 및 위생관리실태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령등 개별 법령에 따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강화
- 관광농원사업자 변경시에는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광농원사업자는 필요시 경영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입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소득증대는 농어민에게 귀착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사업장의 관리등
 - 시장·군수는 관광농원중 청소년수련활동에 이용되는 농원에 대하여는 수련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관리
 - 양도·양수 및 임대 관광농원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조치
 - 관광농원 지도·관리카드를 정확히 작성하여 시·군에 비치 활용하고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는 관광농원이 휴양농원, 체험농원등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
 - 청소년 등이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 인근의 유적지, 문화재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등 지원
- 농산물판매시설은 농원인근지역의 농산물출하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타 품목판매, 전시장 등 타용도로 활용 가능

다. 자부담개발사업에 대한 적용

- 사업비전액을 자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참여자격 및 지구 지정등의 사업절차는 농어촌정비법 및 제반 관련법규정에 따라야 함

라. 보고

- 도지사는 매년 12월말기준 관광농원사업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다음해 1.25일까지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제출양식은 별도 통보)

[표1]

관광농원개발사업의 유형 및 시설(예시)

1. 사업의 유형

가. 기능별 유형

유 형	조 성 예 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운동장, 자연학습 관찰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품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기타
농촌휴양형	기본시설+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품판매장, 기타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 기본시설 : 일정규모 이상의 특색있는 농장(과수원, 초지, 특수작물재배지 등)

나. 운영형태별 유형

유 형	운 영 형 태
농산물채취형	농가가 재배한 농작물을 내방객이 직접 채취토록 운영 - 과일따기, 감자캐기, 밤줍기등
생산수단대여형	농산물생산에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농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그 토지와 작물(축사, 가축등 포함), 농기구등의 생산수단을 제공
장소 제공형	농장, 과수원, 화원등을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고, 레크레이션시설 등을 설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

※ 효도농원 : 은퇴, 귀농인을 대상으로 관광농원내 시설등을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게 하거나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2. 관광농원지구내 설치하는 시설범위(예)

구 분		시 설 명 (작목명)
농 장 (작목입식)	작 물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약용작물, 과수화훼, 기타작물
	임 산 물	유실수(밤나무등), 버섯(단, 자연림은 제외)
	축 산 물	초지, 조류, 가축(조류, 가축을 사육장에서 관광용으로 사육의 경우)
	수 산 물	어류(양어장등 생산시설에서 양식의 경우)
	농 수 산 생산시설	양어장, 하우스시설, 분재원, 조류·가축사육장 등
시 설 물	농 업 시 설	저장고, 농업창고, 집하장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농산물 등 지역특산물판매장
	기 반 시 설	관리사무소, 상·하수도, 전기·통신, 관·배수시설, 오물처리장 등
	숙 박 시 설	농원이용객을 위한 숙소, 민박, 야영장등
	휴양·편의시설	식당, 휴게소, 매점, 휴식시설, 예식장, 목욕탕(일반목욕탕에 한함), 건전오락실, 공중화장실, 잔디광장, 낚시터, 원두막 등(단란주점,유흥주점업은 영업불가)
	운 동 시 설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롤러스케이팅장, 탁구장, 볼링장, 썰매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등
	교 양 시 설	영농체험학습관, 농업전시관 등
기타시설 및 녹지	자연조경지, 조경시설지 등	

- 주) 1. 숙박시설중 민박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민박개념임.
숙박시설은 러브호텔의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2. 편의시설중 예식장, 건전오락시설 및 목욕탕시설은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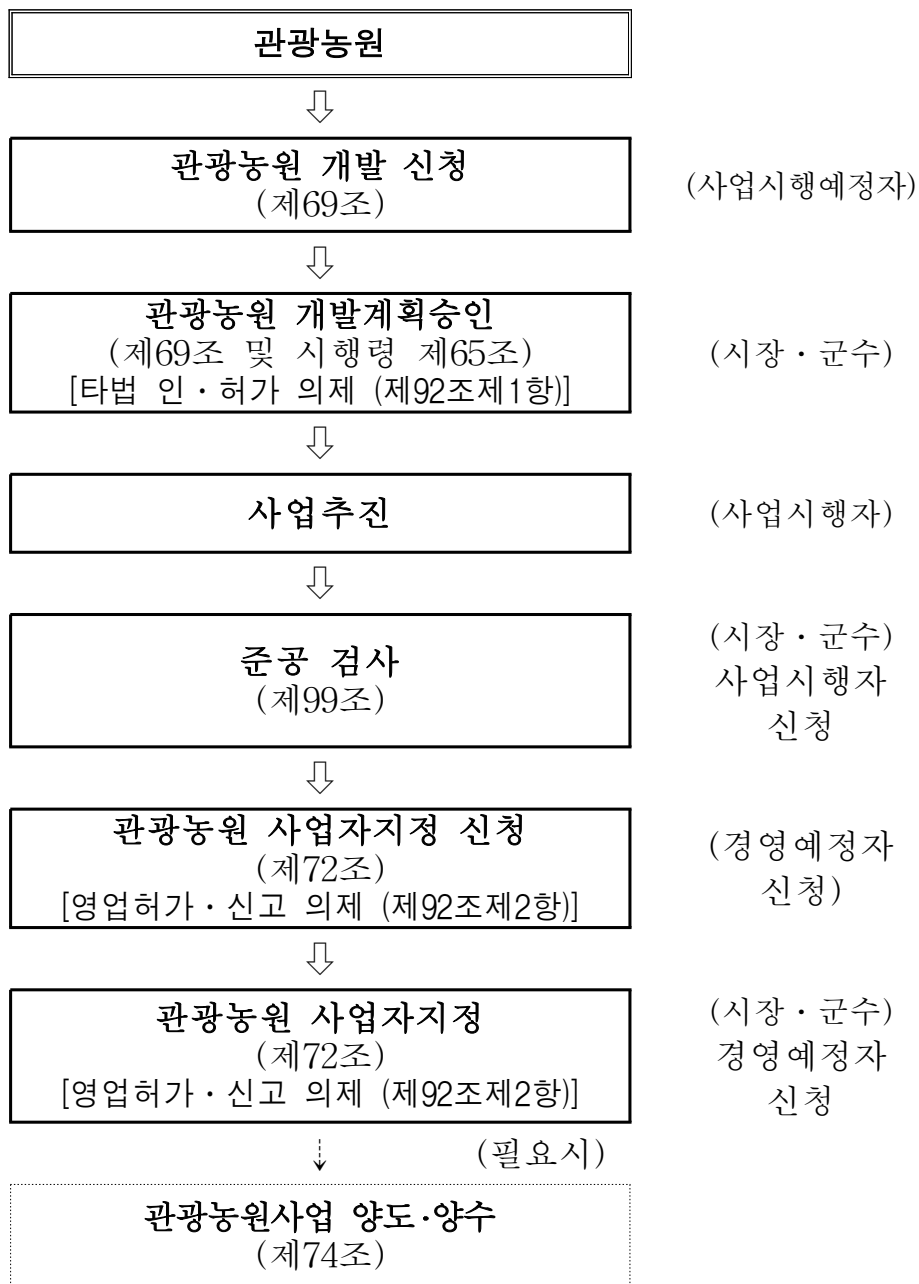
[표2]

관광농원사업 추진체계

[농어촌정비법]

□ 사업시행자

-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별지 1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사 업 시행자	성 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관 광 농 원 명 칭					
위 치					
사 업 규 모		m ² (답 전 과 대지 기타)			
사 업 기 간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사 업 비		백만원 (용자 , 지방비 , 자부담 , 기타)			
<p>농어촌정비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시장·군수 귀하</p>					
<p>첨부서류 :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p> <p>2. 지번·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소유명세서</p> <p>3. 시설물 배치상황등이 포함된 조감도</p> <p>4. 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현황과 도로등 교통여건</p> <p>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p> <p>6. 관광농원 분양·운영계획</p> <p>7. 농수산물·민예품·전통음식·토산품 등의 판매계획</p> <p>8. 기타 관광농원개발에 필요한 서류</p> <p>9.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p> <p>10. 법 제92조 규정에 의한 타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해당 법률이 정하는 서류)</p>					

<별지 2서식>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서

지 구 명 : (사업 규모 : ha)

소 재 지 :

사업자(대표자) : (참여농가수 : 호)

(단위 : m², 백만원)

사업내용		총계획				연차별 계획												비고
						'00년				'00년				'00년				
분야	세부시설명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물량	사업비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작목 입식	합계	m ² ·마리																
	유실수																	
	추사(가축) 특용작물																	
농수산부 대시설	농업전시관 학습관 농업창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편의시설																	
기반 시설	식당시설 숙박시설 운동·체육 시설 휴양시설 주차장 기타시설 ·																	
	상수도 하수시설 전기·통신 시설 ·	식																

※ 비고란에는 개발유형, 자부담개발사업여부 및 주변관광지 등 특이사항 기재

<별지 3서식>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서

1. 관광농원 관리·운영계획 요약
2. 작목별·시설별 이용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등 지역특산품 연계 판매계획
4.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계획
5.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운영내용	비 고

※ 프로그램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예) 2/4분기 : 피서지 개장 - 농원내 설치된 원두막 등을 내방객에게 제공, 과일등 농원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판

낚시대회 개최 - 농원내 양어장에서 낚시대회를 유치, 내방객 유치확대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 - 유치원생 등을 유치, 농원내 농장을 활용한 농사체험행사 개최

3/4분기 : 과수따기 행사 - 과수원을 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 - 농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를 유치, 농원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 -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농원내 또는 인근마을에서 생산되는 버섯판매 또는 버섯요리를 판매

4/4분기 : 김장독 유치행사 - 도시민들이 농원에서 김장을 하여 보관해 주는 행사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지구소재지 :

대 표 자 :

구 분	기승인	변경승인	완료내용	비고(최종결과를 구체적으로)
“예시”				
○ 작목입식				
- 과수	1,000평	1,000평	1,000평	- 사과 300평, 배 100평, 감나무 100평, 밤 500평
- 축산	500평	500평	500평	- 사슴 10두, 토종닭 50수, 흑염소 10두
○ 농업부대시설				
- 축사	100평/1동	100평/1동	100평/1동	
- 비닐하우스	200평/2동	200평/2동	200평/2동	- 고정식(철재) 100평/1동, 일반(죽제) 100평/1동
○ 편의시설				
- 식당및휴게소	50평/1동	50평/1동	50평/1동	- 주방5평, 식당25평, 휴게소20평
○ 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③ 농어촌민박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손건수 사무관 김홍철	02-500-1808 02-500-1815

I. 사업개요

1. 목 적

-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제75조(지도·감독), 제76조(지정 취소 등)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
 -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우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우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3. 지원자금 및 요건

-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단, 농어촌민박사업의 별도 직업보유자는 대출 금지)
- 용자조건(농업종합자금) : (개보수) 3%,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자금) 3%, 2년이내 상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용자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기타 용자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여신관리규정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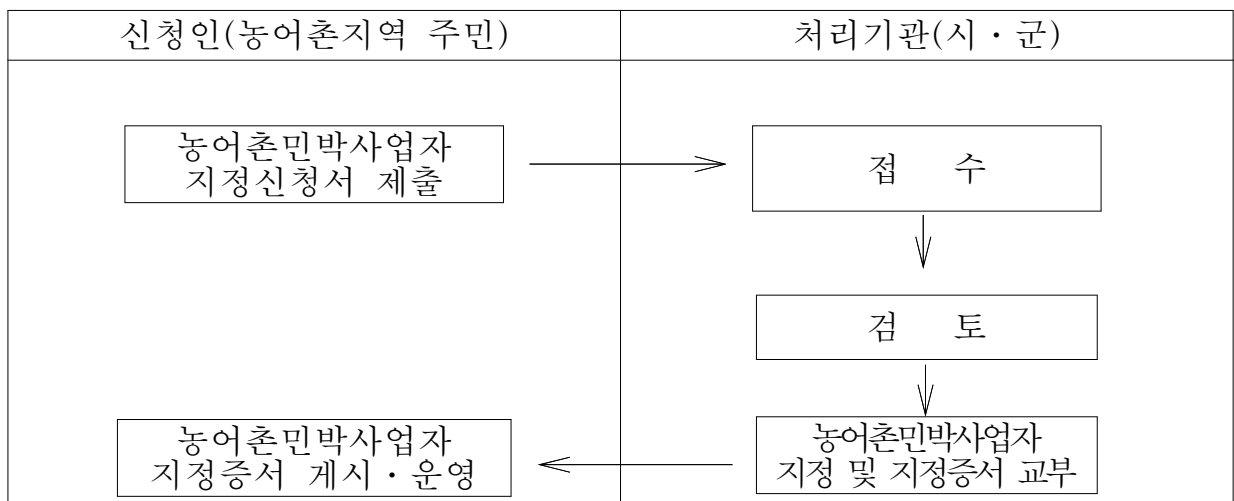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별지 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사업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 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과 서식 등은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에서 안내
-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절차》



2. 사업자 지정단계

- 시·군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확인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별지 3서식) 발급
 - 시·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 4서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별지 5서식)을 작성·비치
-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별지 2서식) 접수시에도 지정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변경지정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해당 민박의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농어촌민박을 운영

3. 이행점검단계

<행정 사항>

가.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건전·퇴폐운영을 하여서는 안됨
-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의 규모(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및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을 준수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 및 위생안전에 주의·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등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설 개보수 등으로 인한 객실 수 변경, 주택연면적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명령을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교부대장(별지4 서식)과 농어촌민박관리대장(별지5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및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정명령 내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시정명령, 제3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 제1차 시정명령, 제2차 사업정지 15일, 제3차 사업정지 30일, 제4차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취소시 관계기관에 지정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농업종합자금(융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농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함

다.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12월말 기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별지 6양식)을 파악하여 다음해 1.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3 서식>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민박명칭: 소재지: 「농어촌정비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4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민박 명칭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민박소재지	발급 일자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5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지정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운영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주소	(전화:)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m ²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input type="checkbox"/> 구역내 <input type="checkbox"/> 구역외		
주택면적		m ²	전체방수 (면적)	개 (m ²)	객실수 (면적)	개 (m ²)	
시설	건물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input type="checkbox"/> 상수도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지하수	화장실	<input type="checkbox"/> 수세식 <input type="checkbox"/>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m ³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특기사항							
사 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6 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및 취소현황

□ 총 괄

자치 단체	지 정 건 수	사업자 취 소 건 수	주택규모 및 유형										
			150㎡미만		150㎡이상 ~230㎡미만		23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500㎡이상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단독 또는 다가구	기타	
○○도 (총 계)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시 (군)	()		()	()	()	()	()	()	()	()	()	()	()

※ ()는 전체 지정건수중 숙박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시설의 수를 기입

□ 취소현황

민박명칭	소재지	규모 및 유형		지정 일자	취소 일자	취소사유
		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 취소현황은 당해연도 사업자 취소현황을 기재

※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다가구주택 등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기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정희	02-500-1816
		사무관 허 훈	02-500-1817

I. 사업개요

1. 목 적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어촌경제 활력증진을 도모
-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어촌에 유입·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7조 내지 제86조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기관 : 지자체(시장·군수)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

2. 지정대상

가. 한계농지 및 정비사업의 정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 「광업권」에 따른 광업권의 기간만료 또는 취소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한계농지 등을 활용,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요건

- 한계농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 이하여야 함(단,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20%미만으로 한다)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사업내용

- 과수·원예·특용작물·축산단지·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설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설치
- 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기타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식물원,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휴게소, 관망탑, 야외극장,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등), 촬영소 등

4. 지원 및 형태 등

- 제도사업으로 운영(국고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되는 예산은 없음)

5. 사업추진 절차

-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신청단계

- 사업시행자가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신청서

- 사업지구의 필요성,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및 정비사업의 종류
- 사업비 및 사업기간, 지구지정의 필요성(사업시행효과)
- 주요사업내용
- 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권리관계
- 예정지 위치도(축척 1/5,000, 단, 1/5,000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은 1/1,200이상의 지적도로 대체 가능)
- 정비지구 편입토지조서(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토지소유자의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 기타 지구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사업 지정단계

가. 한계농지 조사 및 고시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계농지를 조사
- 시장·군수가 한계농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한계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조사 당시 토지이용실태
 - 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축척 1/1,200이상의 지적도 또는 1/3,000이상의 임야도 등 이용)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를 조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고시(한계농지가 표시된 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 고시일자, 소재지, 지목, 토지조서, 한계농지의 형태(경사도 또는 집단화도)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 조사내용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등 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 변경 및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함
 - 지정지구의 명칭, 목적, 사업의 종류
 - 지정지구의 변경 또는 해제사유(해제의 경우 제외)
 - 지정지구지의 위치 및 면적
 - 지정지구의 정비기간 및 정비사업내역(해제의 경우 제외)

- 사업시행효과(해제의 경우 제외)

다.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시 시장·군수의 검토사항

- 한계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계획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중히 검토
- 정비지구로 지정구역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호응도
- 사업내용(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것인지 여부
- 생산기반정비, 축산단지조성사업 등 타 부문 개발계획 유무 및 연계성
- 정비지역 주변의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계획(구상 포함)
- 경사지의 산사태 등 주변경관의 훼손과 발생가능성 및 환경보전과의 조화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함

3. 사업계획 수립

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내의 사업계획 수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군수외의 자는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한 한계농지 정비지구 내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지역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재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할 경우 다음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 면적의 증감

나. 사업계획수립에 포함할 사항(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 사업지역의 위치(위치도를 포함), 종류,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 사업기간
- 토지이용계획, 시설의 규모 및 배치계획
- 도로, 상·하수도 등의 현황 및 배치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과 피해예방 대책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

다. 주요법령과의 관련사항

- 한계농지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의 종류·규모 및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사업계획 시행

가. 사업시행원칙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
-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경사지 붕괴(산사태) 방지 등 공사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용지매수 및 보상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

다. 조사설계 및 공사감리

- 사업시행자는 해당사업의 종류에 따라 관계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측량·조사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한다(필요한 경우 한국농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위탁비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별표5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기준을 적용)

라. 준공검사

-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준공검사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도면
 - 사업명칭, 시행전후 면적조서(용도별), 시설규모, 사업비, 시설물배치 및 시설 현황도,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 향후 시설이용 및 유지관리계획
 - 사업시행자와 시·군에서 시공전, 시공중, 준공후의 사진을 첨부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

마. 정비한 토지의 분양시 특례

-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와 농촌주택(택지) 등에 부속된 농지를 분양·임대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및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유 및 농지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바. 선수금

- 사업시행자는 사업진도가 30% 이상인 때에는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을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음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거나 시·군 또는 한국농촌공사로 이관하여 관리·운영
- 농어촌휴양 자원개발, 다목적이용사업으로 조성된 도로, 상·하수도과 그 부대 시설 등 기반시설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인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나. 보고

- 한계농지조사·고시현황 보고(별지 1호 서식)
-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고시현황 보고(별지 2호 서식)
- 사업계획(변경) 및 준공결과 보고(자체심사가26-50)
- 사업추진상황 보고 : 전년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보고

IV.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2. 자격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3. 신청절차

- 사업신청자격자가 한계농지와 주변토지에 대한 정비사업계획을 우선 수립
- 지구지정 신청 : 사업시행자→시장·군수(지정)
- 지구지정·고시 : 시장·군수(지정) → 시장·군수(고시)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승인)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절차>

사업절차	추진주체 및 내용
한계농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및 한계농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한계농지를 조사
↓	
한계농지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조사한 지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외의 자가 조사한 한계농지는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
↓	
한계농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로 고시된 지역은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개발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는 한계농지로 고시한 지역 중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 ※ 시장·군수(조사)→시장·군수(지정)→시장·군수(고시) ※ 시장·군수외의 자로부터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한계농지정비지구로 지정·고시
↓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설치계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계획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자(신청)→시장·군수(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및 임대 등 시설관리

[별지 제1호서식]

한계농지고시 현황

(면적단위 : m²)

위 치			고시		대표 지번	필지 수	면적					한계농 지형태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기타	

※ 작성기준

- 집단단위로 작성하고
- 한계농지 형태 란에는 경사도 15%이상은 「경사지」 로, 2ha미만은 「소단지」 로 표기

[별지 제2호서식]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현황

(면적단위 : m²)

위 치			고시		지구명	대표 지번	필지 수	면 적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호	일자				계	논	밭	과수원	임	기타	

※ 비고란에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기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동의서

_____ 귀하

1. 귀 시·군(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추진하고자 하는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에 동의하며 귀 시·군 (귀사)에서 선정된 대상지구에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2. 향후 본인 소유 토지 또는 지장물이 한계농지정비지구에 편입될 때에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정보상액으로 매각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가 옥,건물	편입예정 면 적	비 고
시.군	읍면동	리					

200 . . .

승 락 자 주 소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①

[별지 제5호서식]

심사제외

○○지구 한계농지정비사업 추진상황보고

(단위 : 백만원)

위 치			지구명	사업목적	사업 기간	총계획	'○○ 까지	'○○년		누계진도 (%)	'○○ 이 후
시군	읍면	리동						계획	실적		
					○○년~ ○○년						

지구명	사업량	총계획	연차별계획			'○○ 이 후
			'○○ 까지	'○○년		
				계획	실적	

※ 사업량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그 추진내용 기재할 것

58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물부 농업금융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식품부	농업금융과	과 장 노병환	02-500-1754
		사무관 이낙휘	02-500-175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정공록	02-2080-6770
		팀 장 송재영	02-2080-6781

I. 사업개요

1. 목 적

- 건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농업인”(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 79.3%(경영개선자금 최근 3개년 평균상환율)를 시작으로 '08년부터는 상환율을 연1.0%씩 제고하고 '13년 이후 84.3% 유지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경영회생자금 상환율(%)	81.3%	-	-	79.3%	매년말	(상환기일도래금액-상환기일경과연체금액)/상환기일도래금액(매년말기준)×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보 조 (지원규모)	19,032 750,000	13,733 110,000	10,461 100,000	9,690 20,000	매년20,000
- 용 자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지원신청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 영농규모가 준전업농 규모 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2,5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영농규모가 준전업농 규모의 1/2이상이거나 농업용 부채가 1,20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29백만 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지원대상자 선정 등》

-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회생가능여부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2 지원대상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로부터 만2년 전 일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 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 (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인수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융자지원,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지원규모 : 200억원('09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인수자금의 경우, 인수에 소요되는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지원 사업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경영평가위원회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

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지원신청자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경영평가위원회(구성·운영)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2억원 이하 단, 시·군지부에서 신청 받은 경우 2억원 이하도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 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전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4. 자금지원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유형별 자금지원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신 청 :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 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 자금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지원
 -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 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자금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 자금지원
-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단, 농업법인은 80%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 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 「농업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군 지부 및 일선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상·하반기)
 - 점검반구성 : 농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경영회생지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매년 경영회생자금 상환율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М을 이용하여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매년 12월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PCRМ을 활용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 정기적(4월, 7월, 10월, 익년 1월)으로 지원실적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 농림사업성과 평가대상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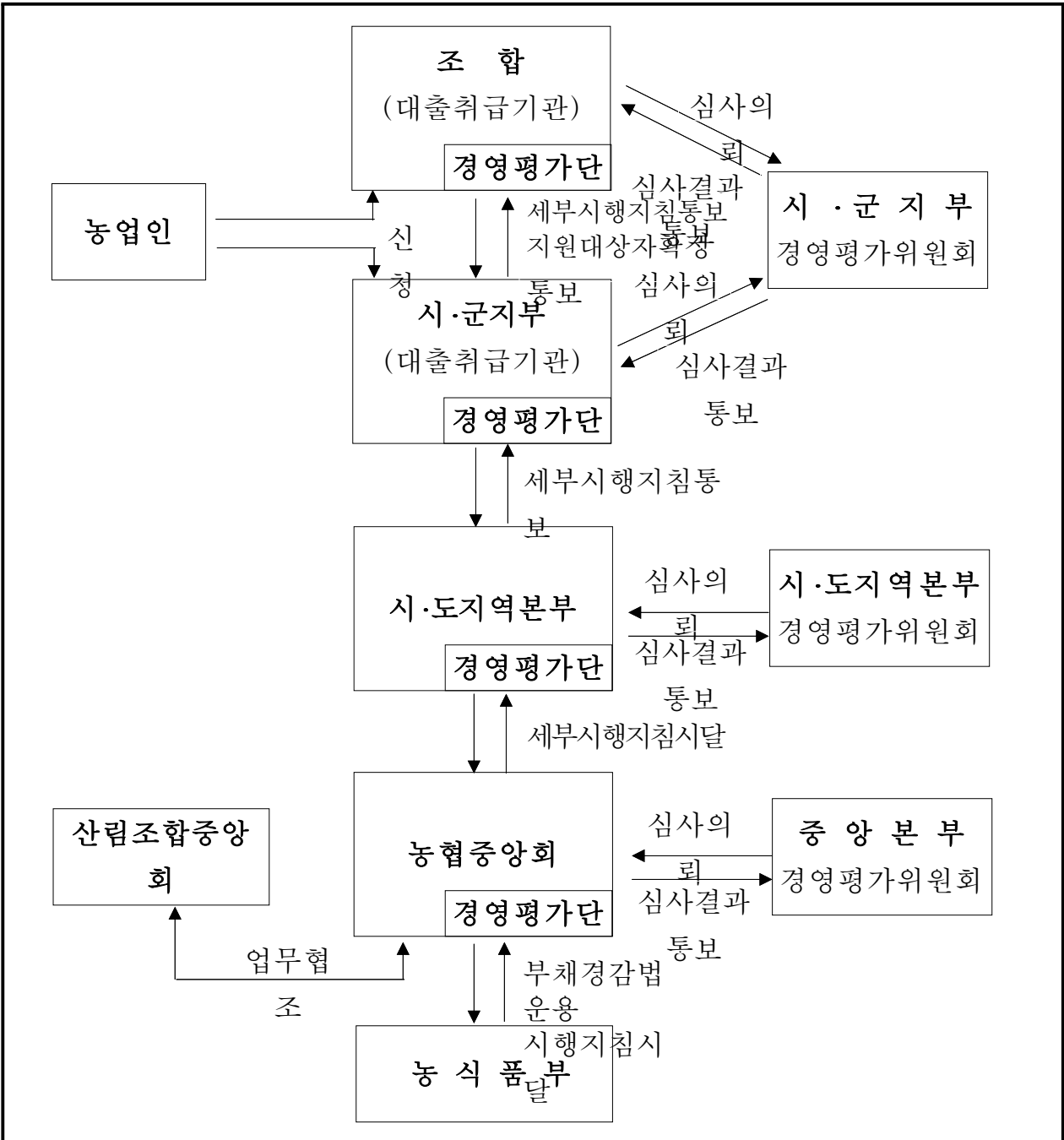
《환류》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 참고 >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평가·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 통보

<별표 1>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 수해 · 풍해 · 우박 · 서리 · 조해 · 설해 · 동해 · 병충해 기타 농업 재해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 농경지 ·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농업용 시설 · 임업용 시설, 농작물 · 산림작물, 가축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 제4호의2, 제5호 · 제5호의2, 제6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 · 농약 · 사료 · 유류 · 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 시세)이 전년대비 20%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 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20%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농가부채및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삼	1.5ha이상	
축 산		
- 한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밭	1.25ha이상	

-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과장 노병환 사무관 고경봉	02-500-1754 02-500-1757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장 정공록 팀장 송재영	02-2080-6770 02-2080-6781

I.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 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농축산경영자금운용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1286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중·소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액의 단기(1년이내) 영농자금 대출사업으로서, 자금대출율과 적시지원율의 '09년 목표를 97.0%까지 추진하여 대출만족도를 높여 지원효과 극대화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p)		
▪ 자금대출율(%)	95.0	95	91.3	97	매년말	대출추진 실적
▪ 적시지원율(%)	97.0	96.3	91.6	97	매년말	3,4,5월 대출실적
▪ 호당대출금액(천원)	4,500	4,344	4,293	4,400	매년말	대출금액(신규, 연기 포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농축산경영자금					
- 용 자	3,300,000	3,200,000	3,100,000	3,600,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16,341억원, 농협자체자금 19,659억원

* 다만, 3.6조원 중 0.6조원은 배정유보 후 한도소진시 추가배정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해당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직업보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자영업자>
 - 자영업자(수산업 및 임업 포함).
 - * 다만, 농협임직원 이외 사실확인자료 징구는 대출신청인의 자진신고서에 의함. 허위신고 시 자금회수 등에 따른 각서 징취)
 - 재해대책자금중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자금을 농업법인·단체에 대출한 경우 농업법인·단체의 출자자 또는 임원
 -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
 - 신규진입농은 농지원부(또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 임차계약서(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 대출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영농주(농가당 1명)로 하며, 부부간 중복 대출은 불가
 -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불가능한 자 등 발생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금별 사업내용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잠업, 원예 등 특작농가
- 지원조건 : 1년이내, 연리 3.0%.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까지
 -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 신규인삼식재면적이 900평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당해년도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젓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닭 : 1만수 미만, 기타가축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자금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잡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종자,비료,노임 등의 농업경영비
- 축산경영자금 : 부업축산농가에 대한 사료, 동물약품비등 축산경영비
- 재해대책경영자금 : 재해피해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자금명	'09년도 사업비(운용규모)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계	융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6,000억원	36,000	36,000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6,341억원, 농협자체자금 19,659억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 재해대책경영자금 : 호당 100만원 ~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 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

《재해대책경영자금》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업경영자금은 농가가 마을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축산계 제외)에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영농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을 원칙
- 축산경영자금은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에게 신청하고 조합융자협의회에서 대상자 협의조정 또는 선정함을 원칙
 - 조합은 관내 축산계장이나 대의원과 협의하여 조합실정에 맞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융자협의회를 선택하여 운영
- 융자협의회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하여 시행
-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연간사업별 운영계획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
- 농협중앙회에서 구체적인 용자취급방침을 수립하여 계통조직을 통하여 지역(품목)조합까지 시달
- 지역(품목)조합에서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 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재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별·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중앙회에서 계통조직을 통해 지역별 또는 조합별로 영농여건 및 소요자금을 감안하여 자금 배정
- 지역(품목)농협에서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계획 및 배정기준에 따라 농가 및 경영체에 자금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농축산경영자금지원사업시행지침 등에 의해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장은 본 지침의 범위내에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중앙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축산경영자금운용계획 세부시행지침 보고
 - 사업종류별 세무운용 지침 수립보고
- 농축산경영자금 배정결과 보고(월별)

자체가 26-14

(단위:억원)

	지원 규모	○년 ○월○일 현재			전년동기(○월○일)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자금 배정	대출 실적	대출 비율
계							
농업경영자금 등							

자체가 26-15

(단위:억원)

시도별	계			사 업 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기배정	금차배정	배정누계

- 농축산경영자금 용자실적 보고(월별)

《제재》

- 정책사업 목적과 상이하게 지원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자금대출율, 적시지원율, 호당대출금액 등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업인,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상 나타난 미흡한 점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반기)
 - 농축산경영자금제도에 대한 민원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성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더 농업인 중심으로 사업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축산경영자금제도에 대한 민원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제점 등을 성과 분석하여 사업 평가

《환 류》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개정 등 제도개선

IV. 20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당없음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농축산경영자금 사업에 대해 인터넷(farmloan.nonghyup.com), 영농회장 사전교육, 마을별 반상회 홍보, 일선 농협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

【농촌개발분야】

VI. 생활환경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장 고태수	02-500-1797
		사무관 정아름	02-500-1798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차장 권상훈	02-2080-6791
		과장 노순현	02-2080-6785

I. 사업개요

1. 목 적

-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26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제28조(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제32조(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13년까지 45,600동 29,440억원(119조 투융자 계획)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를 지원하여 농촌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으로의 도시민 이주 촉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불량주택 정비(%)	78	-	-	-	2010.2	불량주택 정비 실적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 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 표치)×100 * 12월 말 기준
▪ 주민 만족도(%)	70	-	-	-	2010.2	용자금 지원대상 주민의 만족도 (전체 주민수 - 불만족 주민 수)/전체 주민수×100 * 12월 말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010,883	229,159	246,137	240,000	1,720,000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4,985,682 25,201	224,000 5,159	240,000 6,137	240,000	1,720,000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4,338,029	180,000	180,000	180,000	1,320,000
- 농 특		18,000	18,000	18,000	132,000
- 공공기금		36,000	-	-	-
- 주택기금		72,000	108,000	108,000	792,000
- 지방비		54,000	54,000	54,000	396,000
○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차보전)	647,653	44,000	60,000	60,000	400,000
- 용 자	691,653	44,000	60,000	60,000	400,000
○ 빈집정비	25,201	5,159	6,137		
- 지방비(100%)	25,201	5,159	6,137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용자대상자: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형태》

- 용자 지원

《대출대상주택》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촌주택정비자금(이차보전) 이용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신·개축: 세대당 4,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세대당 2,000만원 이내
 -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함
 -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건축물 평가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대출금리》

- 3%(농업인, 일반인 구분 없음)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차보전)
		소계	농특	주택기금	지방비	
6,000동	240,000	180,000	18,000	108,000	54,000	60,000

나) 빈집정비사업

《사업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

《지원기준》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 예산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다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경관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빈집은 철거비(석면 등 방진시설 설치 포함) 지원(농촌생활환경정비 면당 지원액 범위 내)
 -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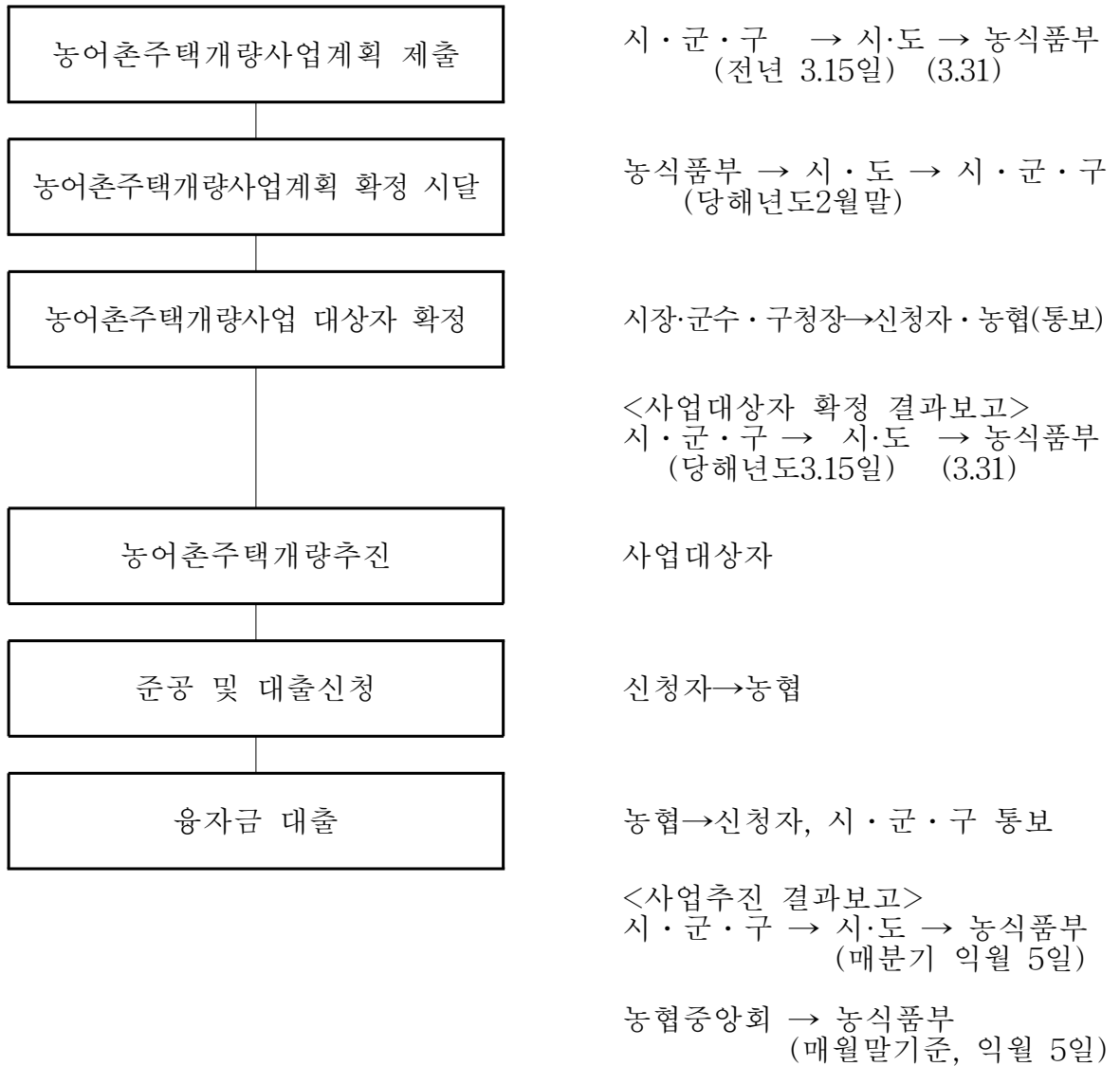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나)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다) 사업추진절차



라) 기관별 역할 분담

주민(사업신청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주택개량, 융자금 신청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어촌주택자금의 관리 및 결산, 주택개량자금 대출안내 및 대출 등

시·군·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군·구 중장기계획수립, 주택개량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주택개량대상자 선정, 소요 지방비 확보,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

시·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도 중장기계획수립, 주택개량 수요조사, 주택건축 등 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신청, 소요 지방비 확보, 사업평가 등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농어촌주택개량 중장기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확정, 사업비 조달계획수립 및 확보,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국토해양부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2. 사업계획 수립단계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전년도 3월 15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수요조사서를 수합하여 이를 기초로 시·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 31일까지, <서식 1>)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당해연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시달(매년도 2월)
 - 시·도의 전년도 집행량, 신청량, 사업우선순위, 지방비 분담분 확보상황, 빈집정비 실적 등을 종합검토

3.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민(사업신청자)

- 시·군·구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전년도 12월 1일~당해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구

- 전문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용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용자금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 ① 타 시·군·구 농어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당해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확정 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다만, 신청자 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20%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 희망자에게 배정 가능
 - ② 일반 희망자에 대해서는 i)주택 노후도(노후도 높을 수록 우선지원), ii)소득수준(소득수준 낮을 수록 우선지원), iii)신청자 연령(연령 높을 수록 우선지원), iv)가족원 수(가족원 수 많을 수록 우선지원), v)농어촌 경관과의 조화(경관계획 등에 부합시 우선지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자를 선발
 - 각 기준별 배점 및 세부 항목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결정·운영할 수 있고, 이외에 추가 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단, 노후불량주택 개량이라는 사업의 취지 및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
 - 시·군·구에서는 시·도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3.15) 구체적 선발 기준표를 함께 제출해야하며, 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시 이를 취합하여 제출 (매년도 3월 31일까지)

<농촌주택정비자금 배정 방식>

- 농촌주택정비자금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우선 배정할 목적의 자금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시 반드시 관련 부서(농정·건설 부서)와 협의
- 우선 지원대상자 예시
 - 전원마을, 문화마을 조성지구 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농·산·어촌마을종합개발 지구 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수해지구, 기타 지구 내 주택 신개축 희망자
 - 한옥 신축 및 고가 증·개축, 부분개량 희망자
 - 지구 내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 희망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보를 확보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대상자별로 건축계획, 건축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야 함
 -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에게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대출한도, 대출조건, 농협의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표준설계도 활용방안, 건축 인허가(신고)·준공 등의 절차, 각종 세제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철저히 홍보

○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매년 3월 15일까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서식 2>)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어촌주택개량》

주민(사업대상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주택개량 추진
 - 주택의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은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고 조화로운 마을경관을 형성해야 함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사전에 해당 농협과 협의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택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읍·면·동 기능축소 여건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 기존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별 기술지원반 구성,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기탁하고,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읍·면·동 추진상황 및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매분기말 기준
 - * 시·군·구는 해당 농협의 시군지부에 대상자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시·도

- 시·도지사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대여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 추진을 독려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대출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서식 3>
 - * 시·도는 해당 농협의 시도지역본부에 시·군·구별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제출할 것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해당 농협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통보 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주택용자금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용자금 대출은 사업자와 용자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 착공 시 또는 건축 진도에 따라 전체 대출금의 일부 지급 가능
- 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등에 입주(예정)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주택건축 담보 등을 목적으로 토지소유권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의상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담보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 실행 가능
 - 주택건축 완공 후 입주자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가대출을 실행
- 해당 농협은 용자금 대출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농협중앙회장은 월별 대출실적과 년도말 대출실적, 대출대기 이자발생, 용자금 결산 등을 종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

가) 빈집정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의거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철거와 관련하여 시행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관리

나) 『농어촌빈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합법적 범위에서 정보공개 추진
 -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 빈집정보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충분한 정보 확보를 위하여 수시점검 및 자료관리에 철저
 -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월 1회 이상 관련정보 보완 운영

- 농어촌빈집정보센터의 운영이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행정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친절, 성실한 자세로 안내

5. 자금배정단계

《농어촌주택개량》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특회계 자금을 농협중앙회에 배정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

시·도

-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금에 대하여 2/4분기 안에 전액 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 대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지방비로 대여하지 않았을 때 사업물량을 타 시도로 변경배정 조치할 수 있음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지원기관(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면밀히 협의하여 소요자금의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달 및 배정, 대출상황 등을 재원별로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관련자금의 확보 및 농협중앙회 해당 시군지부로 자금을 교부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 농협에 자금 대출 신청

《농어촌 빈집정비》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를 위한 소요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
 - 동당 10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설정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 대상 : 시·군·구, 사업시행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시·도,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실적, 집행내역, 자금 운영·관리현황 등
 - 점검결과 개선사항 등을 사업시행지침, 사업추진계획 등에 반영 추진

시·군·구/시·도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용자조건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출마감일 연장신청 : 매년 12월 15일까지, <서식 4>
 - 연장 기간 :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 말까지
 - *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인행위(착공, 대출신청 등)를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시키되 대출을 포기한 사업대상자는 지자체별로 포기각서 등을 징구하여 관리
 - * 일괄연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시·군·구는 농협의 시·군지부(시도는 시·도지역본부)에 사업대상자별로 대출실적을 파악한 후 정확한 연장수요를 제출할 것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예산의 결산》

시·군·구/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 등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협중앙회장은 매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운영상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매년 12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재》

주민(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용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자 선정 취소 및 용자금 지원 철회
 - 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등

7.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09)
 - 불량주택 정비(%) : 78
 - 주민 만족도(%) : 70
- 성과지표 측정
 - 측정 방법
 - 불량주택 정비: (용자지원 대상주택개량 실적누계치 / 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지자체의 추진 실적 보고서, 12월말 기준
 - 주민 만족도(%) : (전체 주민수-불만족 주민수)/전체 주민수 × 100, 12월말 기준
 - 성과지표 측정 시기: '10년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시·도지사는 용자대상자 선정부터 사업시행과정에 대하여 12월말까지 시·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대상 물량 배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 평가 시에는 계획수립 달성도(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구(권역)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빈집 정비실적, 빈집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별 사업평가 실시

《환류》

-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부여
 - 2010년도 사업물량 배정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우대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 구청장 → 시·도지사(2009. 3. 15일까지)
 - 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2009. 3. 31일까지, <서식 1>)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사업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2009년 12월 1일~2010년 1월 31일까지)

나.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정비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대상지역 :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000만원

<서식 1>

2010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안)

[○○시(도)]

<농어촌주택개량-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9실적		'10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도)]

<농어촌주택개량-농촌주택정비자금>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9실적		'10계획(안)					
	사업량	사업비	계		신.개축		부분개량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도)]

<농어촌빈집정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군구	'09실적		'10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 사업비는 지방비

<서식 2>

200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선정 결과 보고

[○○시(도)]

(사업량 : 동, 백만원)

시 군 구	농어촌주택개량																		빈집 정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신개축		부분개량		신개축		부분개량		신개축		부분개량		신개축		부분개량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계																						

<서식 3>

2009년(2008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시군별	주택개량대상			추진실적(○월말)					대출계획 및 ○월말실적(백만원)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완료	건축중	인허가중	미착수	계획(A)		대출액(B)		대출율(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시(도)]

<농촌주택정비자금>

시군별	주택개량대상			추진실적(○월말)					대출계획 및 ○월말실적(백만원)				
	계	신개축	부분개량	계	완료	건축중	인허가중	미착수	계획(A)		대출액(B)		대출율(B/A)
									동수	금액(A)	동수	금액(B)	
계													

*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서식 4>

2009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출기한 연장신청

[○○시(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시군별	사업계획 (A=B+C+D)		기대출완료 (B)		연장신청(C)		대출포기 (D, 반납예정)		비고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 사업계획은 '0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동일하게 기재,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시(도)]

<농촌주택정비자금>

시군별	사업계획 (A=B+C+D)		기대출완료 (B)		연장신청(C)		대출포기 (D, 반납예정)		비고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동수	사업비	
계									

* 사업계획은 '09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동일하게 기재, 대출실적은 해당 농협을 통하여 확인

61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	과 장 고학수 사무관 한준희	02-500-1797 02-500-1800
시·도/시·군	농촌개발담당부서		

I. 사업개요

1. 목 적

- 도시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 맛 나는 농어촌 조성
- ※ 고령 농어업인의 젊은 출향 자녀가 귀농하여 현지 젊은 인력과 함께 지역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맞춤형 인력육성지원 종합 프로그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이 자율 선정
 - 사업계획에 따라 영농어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은 기존사업으로 연계
 -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본격 확대 추진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장 제3절(농업인력의 육성) 및 농어촌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생활환경정비)

3. 성과목표 및 지표

- '09~'17년까지 53지구 조성 ('09~'11년 5지구, '12년이후 48지구)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 방식
		'06	'07	'08		
▪ 계획수립	5지구	-	-	-	익년도2월	당해연도 계획수립여부
▪ 사업추진(누계)	5지구				익년도2월	누계 계획대비 추진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	16,167	1,022,160
보 조	-	-	-	2,085	358,374
용 자	-	-	-	-	453,256
지 방 비	-	-	-	14,082	210,53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시범사업 추진개요

- 사업량 : 5개소 700세대(개소당 50~300세대 규모)
- 사업기간 : '09~'11년(3년)
 - 1차년도 : 부지확보 및 계획수립, 2~3차년도 : 공사시행 및 입주
- 재원소요 : 1,148억원(국고 900억원(보조 396, 용자 504), 지방비 248억원)

2. 주요 사업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 조성
 - 시장·군수가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신규마을조성 등 개발방식 자율선택
- 농어촌 주택건설 및 공급
 - 농어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전용면적 기준 100㎡ 이하 범위 내에서 60㎡, 85㎡, 100㎡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농어촌 경관을 고려, 저층형(단층 또는 복층)으로 건축
 -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
-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연계사업은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사업에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추진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은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주공, 토공, 농촌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위탁시행 가능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한요인이 없는 지역

-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수요가 확보된 지역
 - 입주대상자 :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 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젊은 세대 대상
 - ① 해당 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 ② 해당 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 ③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 ④ 해당 지역 거주 30~40대 농어업인
 - ⑤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조건 예외)
 - 경영규모 : 안정적 영농종사 및 지역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성장가능농」 이상의 경영규모(임차 포함)
 - * 성장가능농(맞춤형 농정('06.12.29) 기준) : 농어가소득 기준 15~30백만원, 품목별로 쌀 1~3ha, 과수(사과 등) 0.2~0.7ha, 화훼(절화류) 0.1~0.3ha, 시설채소 0.2~0.5ha, 한우 15~50두, 돼지 160~500, 닭 8천~2.5만
 - 입주자가 승계농일 경우 피승계자 기준으로 산정
 - 연령 : 입주자 공모일 기준 만30세 이상~만49세 이하
 - 안정적 영농 종사를 위해 기혼 가족세대 중심으로 선정

5. 지원형태

- 마을기반시설 : 국고보조(농특회계) 70%, 지방비 30%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 임대주택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60%(연리 3%, 10년 거치 20년 상환)
- 분양주택 : 국고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1년 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 연계지원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에서 연계지원

6.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모(시·군) → 예비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시·군) → 마을정비구역지정(농식품부승인) → 시행계획수립(시·도지사 승인) → 사업시행(시·군) → 준공확정(시·도지사) → 분양 및 유지관리(시·군)
- * 세부 추진체계 : 덧붙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사업제안서 작성 및 사업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공모지침 시달

- 사업추진계획, 공모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모방법 등 제시

시·군(시·도)

- 공모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 관련부서, 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뉴타운 조성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는 기반시설, 주택건축, 인력육성, 자녀교육·복지, 지역개발 등 담당 부서 관계자와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공모제안서 작성, 사업계획수립, 연계프로그램의 지원 등 협의추진 및 자문·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 등 의제처리사항 협의

<협의체 구성안(예시)>

- 의 장 :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 구성원 : 건설, 도시, 주택, 농지, 농정, 교육, 복지 등 부서 관계자
- 자문단 : 지역계획, 건축, 농촌경제, 교육, 복지 등 관련 전문가

- 시·도지사는 시·군 공모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2. 대상지 선정단계(예비타당성조사)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공모제안서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토록 조치
-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지 선정 결과를 통보

한국농촌공사

-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공모제안서의 적절성, 입지여건, 토지 및 입주수요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계사업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 및 평가 실시

3.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지정

시·군(시·도)

- 지역실정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마을기반시설, 주택건축, 주택공급(임대 및 분양 방법, 임대료, 분양가 등), 입주자관리, 관련 연계사업 및 연계프로그램 지원

- 계획, 소요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
- 관련부서 협의 및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련 법적 협의사항을 이행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첨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관련 부처 협의(국토이용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를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나. 시행계획수립

시·군(시·도)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일괄하여 수립함이 원칙, 필요시 분할 수립 가능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세부설계는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 세부설계시(시행계획 변경시 포함)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단,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지구 명칭의 변경
 - 사업구역의 범위의 조정(당초 면적의 10% 범위내 증감)
 -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위치변경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공정계획의 변경
 - 기타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승인(변경 포함)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시행

시·군(시행자)

- 시·도지사의 시행계획승인을 득한 경우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관련계획의 연계지원프로그램은 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일괄발주 원칙, 필요시 공종별 구분 발주 가능
- 용지매수 및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 제반규정에 따르며, 필요할 경우 기본계획 승인후 용지매수보상 우선 추진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위탁 시행
 - 위탁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49조 「별표 5」 준용
 - 공사감리를 위탁받은 자는 필요시 전문기술을 가진 자에게 재위탁 가능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전·중·후의 현장사진 등을 보관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을 농어촌 뉴타운 조성 마을기반시설 및 건축공사와 연계하여 추진
 -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영농어 기술 및 자금지원
 -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 기타 연계사업 등
 - 연계지원프로그램 및 연계사업은 본 사업과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기관 등과 사전 협의하여 예산확보 등에 철저

4. 준공 및 시설물 운영단계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처리
 - 계약단위로 실시함이 원칙, 필요시 완료공종(시설)에 대하여 부분준공 실시
-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처리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시 지적·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 포함)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장·군수에게 인계된 것으로 봄
-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준공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준공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입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입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5. 입주자 모집 및 사후관리 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수립 전까지 입주수요를 확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하여 확정함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 영농승계 등을 통한 영농기반 확보가능성(농지원부 등)확인, 영농계획서 징구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징구
 - 실제 입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에게 계약금 또는 중도금 부과방안 강구
- 주택 및 입주자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준용하여 부정 입주자, 자격 상실자에 대한 퇴거 규정 등을 마련
- 분양계약 체결시 사업목적에 위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장·군수가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매특약등기 설정
 - 환매한 주택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재 분양
- 시장·군수는 주택의 분양 및 임대, 입주자관리, 용자금 상환 등 자금관리를 위해 별도 특별회계 운영(필요시 시·군 조례 제정)
- 분양주택은 보조금을 제외한 토지비용, 건축비용을 합하여 분양가격 결정
 - 마을기반시설 보조 및 설계감리비 보조 등은 분양가격 산정에서 제외
 - 토지비용에는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은 “국민임대 표준임대조건(국토해양부)”을 준용함. 다만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여 감가상각(50년 후 잔존가치 10%)을 계상하며, 재정투입분은 감가상각에서 제외

<참고 : 임대료 산정 구성요소 및 기준>

구성요소	산정기준
○ 임대보증금	건축원가의 20%×규모계수 1.30×지역계수 0.85
○ 월 임대료	
- 감가상각비	50년 감가상각 : (호당건축비-재정)*90%/50년/12월
- 수선유지비	건축비의 0.4% : 호당 건축비*0.4%/12월
- 화재보험료	건축비의 0.022% : (호당 건축비*0.022%/12월)
- 용자금이자	이자(3%) 상환 : 용자금액*3%/12월

6.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을 한국농촌공사 등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
 - 수탁시행자와의 계약에 의거 수탁시행자가 보조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일괄 집행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타부문 연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7. 보고사항

- 기본(시행)계획수립 결과보고(수립즉시) : 별지 1
-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 신청서 : 별지 2
- 사업추진상황보고(매분기기준 익월 5일 이내) : 별지 3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결과보고(변경즉시) : 별지 4
- 입주자 모집결과보고(모집즉시) : 별지 5
- 사업준공결과보고(사업준공 즉시) : 별지 6

8. 이행점검단계

시·군(시·도)

- 분기별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사업추진협의회에는 사업을 자문하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부

-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점검결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

9. 성과측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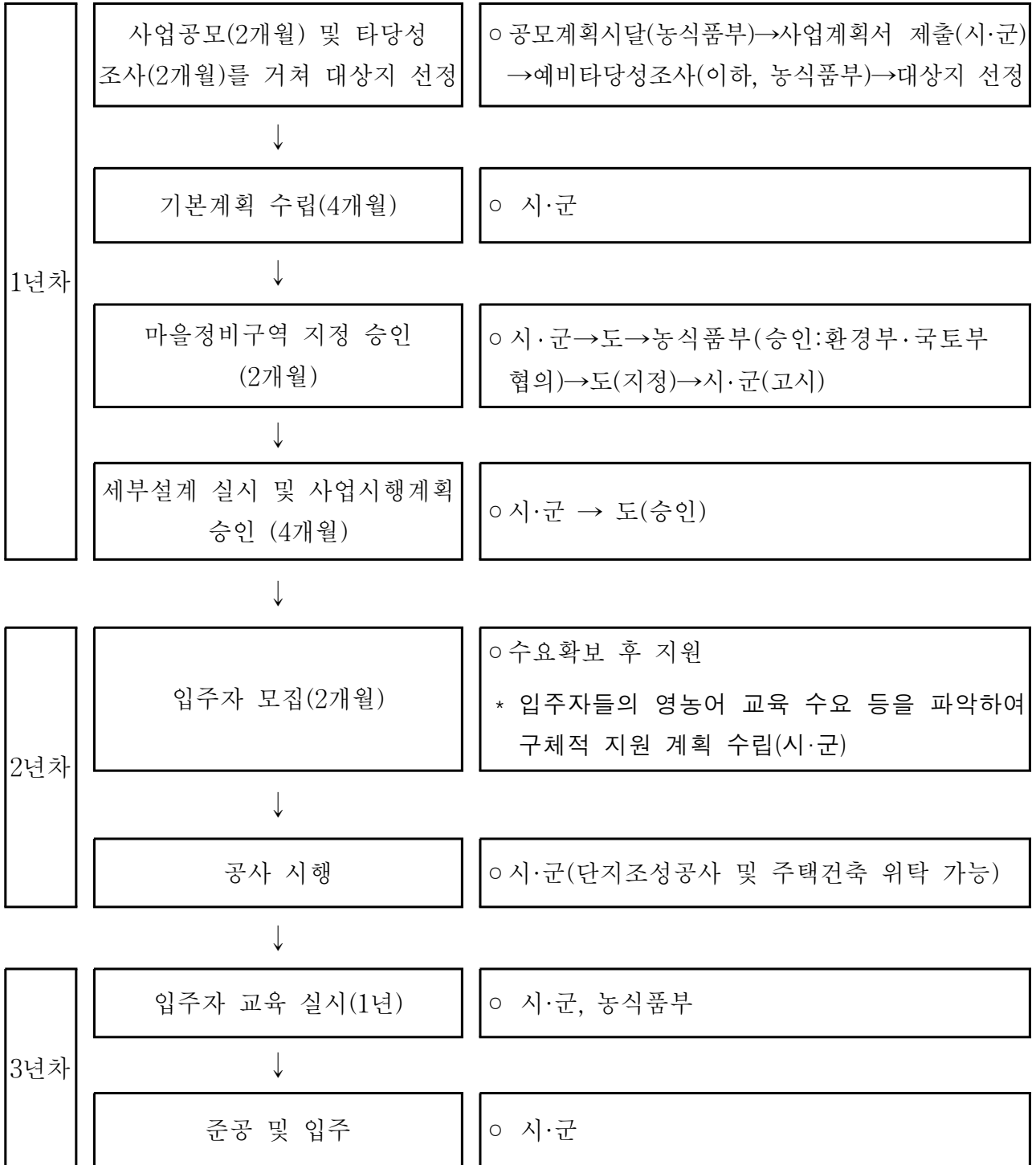
- 성과측정시기 : 익년도 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10.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기간동안 매년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참고 >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체계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기본(시행)계획수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m²
- 계획호수 : 호 (임대주택 , 분양주택)
- 주택형태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복층형, 단층형) 등으로 제시
- 개발방식 :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새로운 마을조성 등으로 제시
- 소요사업비 :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부지확보, 마을기반시설, 주택건축 분야
- 사업시행자 :

2. 농어촌 뉴타운조성 계획

가. 마을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 등 용도별 면적(m²) 및 비율, 산출내역 기재
- 도로계획
- 상·하수도 계획
- 공동이용시설계획

나. 주택공급계획

- 주택건축계획 *건축형태, 동수, 면적 등
- 에너지절감 시설계획
- 주택공급계획 *분양, 임대계획, 분양가, 임대료 등 제시

다. 연계지원 프로그램

- * 맞춤형 영농어 기술지원 및 자녀교육, 복지, 마을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3. 재원확보 방안

가. 소요재원 확보방안 * 보조·융자금 확보 및 상환계획 등 제시

나. 사업비 수지예산서 * 연도별('08~'11)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공종별로 제시(표)

- 수입 * 천원단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구분
- 지출 * 마을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 상수도, 하수도, 커뮤니티센터 등 구분), 주택건축, 부지확보, 사업관리(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사업관리, 잡지출, 기타)로 구분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총 괄 >

재원	총사업비 (백만원)	예산현황				'09년도 자금집행현황			'10 이후	비고 (추진단계)
		전년 이월	금년 예산	예산 현액	집행	배정	집행	집행율		
합계										
국고										
지방비										

* 비고(추진단계) : 기본계획중/완료, 마을정비구역지정, 시행계획중/완료, 시행인가, 공사 착수(공정율 %) 등

1. 토지확보 및 입주자모집상황

○ 토지확보상황

- 계획 : m² (필지)
- 실적 : m² (필지) * 등기, 매매계약체결 등 실제 소유권확보 기준
- 추진계획 * 동의서징구, 협의중 등 확보진행상황(실적을 미반영부분), 완료예정일 등

○ 입주자모집상황

- 계획 : 가구, 실적 : 가구
- 추진계획 * 모집진행상황, 완료예정일 등

2.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사업추진단계 : * 기본계획중/완료, 타법령 절차이행(사전환경성검토 등), 마을 정비구역지정, 시행계획수립, 시행인가, 기반시설공사, 주택건축 등

○ 향후 추진계획 * 계획 및 실적 년·월 기재

- 토지확보 완료 : 년 월 (실적 : 년 월)
- 기본계획 수립 : 년 월 (실적 : 년 월)
- 타법령상 절차이행 *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등 구분 작성

- 마을정비구역 지정
- 시행계획수립
- 입주자모집 완료
- 사업시행인가
- 기반시설공사
- 주택건축
- 입주

3. 연계사업(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 사업내용 및 사업비(재원별), 시행시기, 소관 부서, 추진상황 및 계획 등 제시(표)

4. 기타 특이사항 * 문제점 및 대책, 사업추진상 특이사항 등 제기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기본(시행)계획 변경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m²
- 계획호수 : 호 (임대주택 , 분양주택)
- 주택형태 :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복층형, 단층형) 등으로 제시
- 개발방식 : *기존마을재개발, 기존마을확장, 새로운 마을조성 등으로 제시
- 소요사업비 : 백만원(국고 , 용자 , 지방비) *부지확보, 마을기반시설, 주택건축 분야
- 사업시행자 :

2. 주요 변경내용

-
-

3. 농어촌 뉴타운조성 계획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비 고
○ 마을기반시설 - 토지이용계획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 주택공급 - 주택건축 - 에너지절감시설 - 주택공급				
○ 연계지원프로그램 - -				

※ 비고 : 주요 변경내용 기재

4. 사업비수지예산서

* 연도별('08~'11)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공종별로 제시(표), 당초 승인/금회승인/증감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 뉴타운조성 입주자 모집결과보고

번호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	연령 (만)	성 별	기혼 여부	동반 가족 수	경영규 모 (만원)	대상 구분
1									
2									
3									

- ※ 1. 전화번호는 집전화와 휴대폰 모두 기재, 경영규모는 연 예상수입금 기재
 2. 대상구분은 ① 해당지역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거주 자녀, ② 귀농희망 도시거주자, ③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 ④ 해당지역거주 농어업인, ⑤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으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m²
- 가 구 수 : 호 (임대주택 , 분양주택)
- 소요사업비 : 백만원(국고 , 융자 , 지방비) *부지확보,마을기반시설,주택건축 분야
- 사업시행자 :

2. 추진경위

- 기본계획수립 :
- 마을정비구역지정 :
- 시행계획승인 :
- 공사착수 :
- 사업준공 :

3. 농어촌 뉴타운조성 실적

- 가. 마을기반시설 *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 공동이용시설 구분 작성
- 나. 주택공급 * 주택건축(건축형태, 동수, 면적 등) 및 공급계획(분양, 임대계획, 분양가, 임대료 등)
- 다. 연계지원 프로그램
 * 맞춤형 영농어 기술지원 및 자녀교육, 복지, 마을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 연계지원 프로그램별 지원실적/계획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비 수지예산서 * 연도별('08~'11)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공종별로 제시(표)

※ 위치평면도 등 참고사항 첨부

【임업 · 산촌분야】

I . 경영기반 확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과장 배정호 사무관 김시준	042-481-4190 042-481-4195

I. 사업개요

1. 목적

- 민유림의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 등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인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산림자원 관리의 합리성 제고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면적 확대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64조(자금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통해 산림의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산림기능이 최적으로 발휘 되도록 산림의 보전·관리체계 확립
 - 2004~2013년까지 144억원을 투입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을 2013년도에 47%달성(119조원 투융자계획)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민유림 산림경영 계획작성 면적 비율 취급비중(% , 주지표)	41	40	41	40	2010.1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 가 된 민유림누적 면적/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민유림 면적) x 100
• 산림경영계획 관련자 만족도 취급비중(% , 부지표)	90	-	83	-	2009.12	자체 설문 또는 용역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 성사업에 대한 관련자 만족도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04~’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3,148	1,528	1,620	1,620	계속
- 보조	1,574	764	810	810	-
- 용 자	-	-	-	-	-
- 지방비	1,574	764	810	810	-
- 자부담	-	-	-	-	-
o 민유림산림경영계획 작성	3,148	1,528	1,620	1,620	
- 보조	1,574	764	810	810	
- 용 자	-	-	-	-	
- 지방비	1,574	764	810	810	
- 자부담	-	-	-	-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민유림 산주 및 위탁 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 산주가 직접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신청하여 인가 받은 산주
 - 산주가 직접 또는 사업자를 선정·위탁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은 산주가 하여야 하므로 인가 받은 산주에게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

- 산주의 동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하는 경우는 위탁 받은 사업자

다. 지원요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0,800원/ha(예산단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참조 산출

3.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참조 산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지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산주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시에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신청을 받아 산림경영계획 인가할 때 산주에게 지급
- 산주의 동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년도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한하여 지원
- 지원단가 : 10,800원/ha(예산단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의 기준’을 참조 산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립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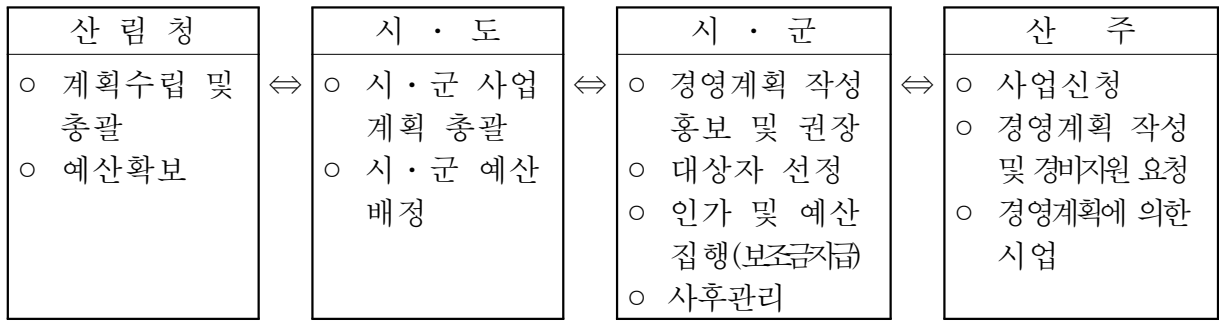
- 산림청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예산의 요구 및 편성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시·도로부터 예산의 소요액을 신청 받아 예산의 확보를 추진

지 자 체

- 시·도는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로부터 예산의 소요액을 파악하여 국고 및 지방비 보조예산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산림청에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사업 예산 소요액을 제출
- 시·군에서는 다음 연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예정 사업량을 파악하여 시·도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예산 확보요청서를 제출

산 주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산림부서)에 제출
 -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20일까지 시·군에 예산지원요청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경비지원 신청서 동시 제출



- 산주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장·군수의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원할 경우 ‘위탁 동의서’를 첨부한 자율사업 신청서를 산림경영계획 작성 인가 신청 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에 제출
 - 이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작성 위탁에 따른 작성비는 위탁사업자에게 지급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립 청

- 다음년도 예산 요청에 반영한 내역을 근거로 전년도 10월 15일까지 보조예산 시·도별 배분계획 통보
- 확보 결정된 예산에 대한 분기별 배분계획 시달 및 분기별 예산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시·도 예산 확정 및 시·군에 통지 및 예산배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규정 제30조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른 사업별 시·도 예산의 시·군별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군 등에 통보
- 시·군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산주에 대하여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산주를 결정하고 산주에 통보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지원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상지를 추가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완료되는 산림, 독립가·임업후계자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 구내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할 것을 권장하고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

산 주

- 시장·군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으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추진
- 산주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주가 위탁을 동의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의 경우 산주의 경비지원 신청 불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도로부터 국가 및 시·도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 산림
 - ② 경제림육성 단지로 지정한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내 산림
 -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 ④ 일단의 면적이 큰 산림
 - ⑤ 기타 산림사업 우선 실행이 필요한 산림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산림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인가 받아서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하도록 권장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검토 후 인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여 수립한 경우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와 동시 수탁 사업자에 지급 할 수 있음

산 주

- 소유 산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 제출시 산림경영계획 작성 경비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
 -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청서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하고 보조금 지급

- 산주는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대하여 계획대로 실행의무
 -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미실행시 인가취소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국고지원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지
- 산림청은 국고지원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예산 배정 실시

지 자 체

- 시·도는 사업예산 배정계획 확정 통지를 받은 국고 및 시·도 소관 지방비에
 대한 시·군별 배정계획을 확정하여 시·군에 통지 및 예산배정
-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배정받은 국고 및 시·도 부담 지방비와 시·군
 부담 지방비를 확보하여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 확보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지 자 체

- 산주로부터 제출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교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 별채계획의 경우 기준 별기령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기타 산림경영계획이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위탁을 통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주의 의사 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산림경영계획 인가된 산림사업이 실행되도록 지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및 실행 상황보고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 및 당년도 현황 보고
 -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사업 실행 실적 보고서 제출
- 국고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제 재》

지 자 체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행률이 50%이하로 저조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 산림경영계획 인가받은 산림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산주의 동의를 받아 대행시킬 수 있음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우선 지원
- 산림경영계획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사용이 확인 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농림수산식품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 성과지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율은 매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현황 연보 제출을 근거로 산출
 - 시·도 별 당년도 연말 현재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 연보는 익년도 1월2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작성율(%) = (산림경영계획 작성 누계면적/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x 100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에 관련되는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주 등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 실시

나.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중
- 조사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주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이 주관하되 직접 설문 또는 용역 위탁을 통해 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평가 》

가. 원 칙

-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및 관련자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진과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 재정성과평가 주관부서 및 평가 수탁 용역기관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 사업추진 기간
- 평가대상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 실적 및 관련자 만족도
- 평가기준 : 재정성과사업 평가 기준에 의함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성과 지표 중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 시·도로부터 당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실행 실적을 연보로 제출 받아 산출(임업통계연보로 확정)
 - 산림경영계획 작성율(%) = $(\text{산림경영계획작성 누적 면적} / \text{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 산림면적}) \times 100$
- 사업추진 관련자 만족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 추진에 관련된 공무원, 산림경영기술자, 산주 등으로 부터 추출한 조사대상 표본을 설정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 실시
 - 만족도(%) = $(\text{만족으로 대답한 응답자수} / \text{조사에 응한 응답자수}) \times 100$

《 환류 》

-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 부실 시·도는 예산 축소 등 패널티 부여
- 사업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분석을 통해 차기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에 활용
- 발굴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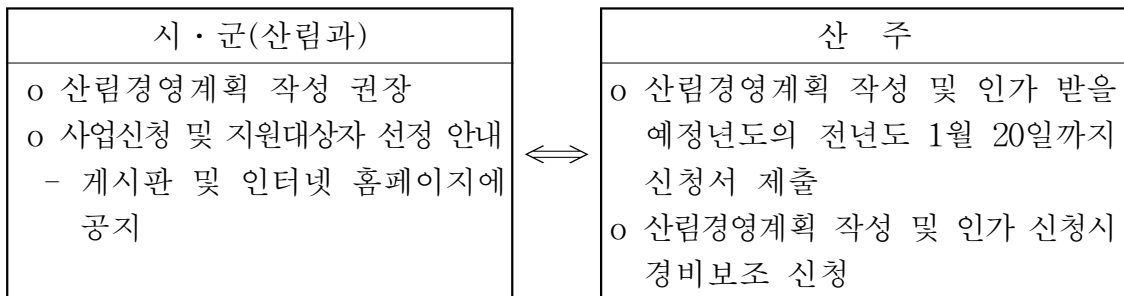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농림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농림사업의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비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산주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범위 내 추가 신청 가능(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9조)
- 산주로부터 농림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거나, 산주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동의 받아 수요조사
- 산주의 신청이 부족할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만료 산림, 독립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대면적 산림,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산림 등의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의 필요성·지원사항 등을 홍보하고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권장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 신청자격 : 2010년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독립가·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 ②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④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선정절차>

① 산림경영계획 미작성 산림 및 작성년도 도래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② 산림경영계획 작성 권장(시·군)

③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보조금 신청(산주)

④ 보조금 교부(시·군)

【임업 · 산촌분야】

Ⅱ. 생산 및 유통개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과장 배정호 사무관 박기완	042-481-4190 042-481-4177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정책자금팀)	부장 지만호 팀장 이근석	02-3434-7220 02-3434-7221

I. 사업개요

1. 목적

- 임업분야의 세부사업 용자금을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임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하여 임업인의 자금난 해소 및 임가소득을 증대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3년까지 용자금 집행율 78%(연간 2% 상향), 용자금 이용자 만족도 83점(연간 1점 상향) 달성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용자금 집행율 (%, 주지표)	69	48	55	65	2010.1	▪ 산림조합중앙회 정기보고
▪ 이용자 만족도 (점, 부지표)	79	79	72.6	77	2010.1	▪ 재정사업성과평가 연구용역 등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계	36,660	29,560	29,560	39,300	47,560
○ 국고용자금(용자)	36,660	27,960	27,560	34,300	39,560
○ 이차보전금(보조)	-	1,600	2,000	5,000	8,0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임업인 또는 전문임업인, 작목반, 법인경영체,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또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제외 대상
 -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농협 등 조합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 임대, 위탁 등 직접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 회계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유통가공업자·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3억이상인 개인(전문임업인 제외)
 -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 중인 경우
 - * 산림사업종합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 전업적 농업, 수산업 종사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숲 가꾸기 : 숲 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
- ② 임도시설 : 임업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임도를 구조개량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법인·협업체 포함)
- ③ 전문임업인육성 :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 ④ 해외산림투자 :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벌채, 임산물가공시설)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은 자
- ⑤ 사립수목원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⑥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사립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⑦ 산림조합육성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⑧ 산양삼(장뇌삼)생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⑨ 단기산림소득자금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⑩ 조림용묘목생산 :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종·묘 생산업자 중 정부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
- ⑪ 목가공시설지원 : 노후시설교체 또는 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 ⑫ 보드류시설지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⑬ 국산원자재구입
 -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
 -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하여 책·결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
- ⑭ 폐목재구입 지원 :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⑮ 유통센터원료구입 : 목재유통센터
- ⑯ 수출원자재구매 : 목재류 수출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 ⑰ 임업기계화
 -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로서 산림경영장비 구입 희망자
 - 임업기계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업체

3. 지원대상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 숲가꾸기	장기수종, 기타수종, 유실수종의 숲가꾸기
○ 임도시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 전문임업인육성	장기수 조림·숲가꾸기, 임야매입(보전산지 70%이상),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기타 임업경영
○ 해외산림투자	해외조림 또는 해외조림지 육림, 벌채, 조림·벌채에 수반되는 임산물가공시설(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 포함)
○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수목원 조성
○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조합육성	자체특화사업 및 신규개발사업, 청사·유통시설·금융점포 설치비 등, 임산물공판·수매, 수집사업
○ 산양삼 생산	산양삼재배
○ 단기산림소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수용자 : 표고생산자금, 밤방제탑재용차량, 단기임산물생산, 임산물생산장비, 조경수·분재생산, 임산물가공시설, 단기임산물수집, 임산물직거래 판매, 수액자원생산 - 보조수반 용자 : 표고재배시설,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배지시설, 밤나무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지원, 밤작업로, 친환경 밤생산, 대추생산기반조성, 밤·잣 생산장비, 조경수 관정시설, 산림복합경영,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디자인 개선, 공동선별비 지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 조림용묘목생산	정부산림사업용 조림용묘목생산 및 간이온실시설
○ 목가공시설지원	칩·통나무·제재(목조주택용 자재가공 포함)·목공예(목각 포함), 목질유기질비료·목재방부·목탄·목초액 등 목재를 이용·가공하는 시설

구 분	지원대상 세부품목
o 보드류시설지원	간벌재 및 폐목재등을 이용하는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사업 또는 노후시설 교체
o 국산원자재구입	국산재(원목·가공품 포함)를 구입하여 가공·사용, 국내에서 생산된 합판·보드류를 원자재로 한 책·결상 제작
o 폐목재구입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폐목재 구입
o 유통센타원료구입	목재유통센타의 목재가공을 위한 국내재 구입
o 수출원자재구매	수출용 목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o 임업기계화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임업기계장비(굴삭기, 트랙터, 톱밥제조기, 임업용동력집재기 등) 구입 및 임업기계장비의 생산을 위한 기자재 구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o 상기 3항과 동일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가. 지원형태(자금의 재원)

- ① 국고 용자 : 사업비의 70~100%
 - 10년 초과 장기성 자금과 산림조합육성자금
 -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조합육성, 장뇌삼생산자금
- ② 대출기관 용자(이차보전대상사업) : 사업비의 20~90%
 -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단기성자금을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용자 후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금리와의 차이인 이차차액을 보전
 - 산림조합육성자금을 제외한 10년 이하 단기성자금
 - ※ 단기산림소득자금, 조림용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나. 용자지원방식(용자시기)

- ① 사전용자 가능사업
 - 숲가꾸기, 전문임업인육성, 해외산림투자, 산림조합육성
 - ※ 임야매입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후 70% 범위내에서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이 명시된 등기부등본상의 기재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 대출

② 자부담 집행후 잔액용자 가능사업

- 산양삼(장뇌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순수용자사업), 조림용묘목생산(묘목생산), 목가공시설지원, 보드류시설지원, 국산원자재,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입, 임업기계화

③ 사후용자 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조림용묘목생산(간이온실시설),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 용자사업)

다.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① 숲가꾸기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숲가꾸기	1.5%						
- 장기수종				100		설계금액	20/15
- 기타수종				100		설계금액	15/10
- 유실수종				100		설계금액	10/ 5

② 임도시설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임도시설	1.5%	-	-	100	-	200백만원	10/10

③ 전문임업인육성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장기수 조림, 숲가꾸기	1.5%	-	-	100	-	○ 독립가 : 사업자당 3억원이내 ○ 임업후계자 : 사업자당 2억원이내 ○ 신지식인 : 사업자당 1억원이내	20/15
○ 임도시설	1.5%	-	-	100	-		10/10
○ 임야매입	1.5%	-	-	100	-		20/15
○ 자연휴양림조성	3.0%	-	-	100	-		10/10
○ 기타 임업경영자금	3.0%	-	-	100	-		5/10

④ 해외산림투자지원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o 해외산림투자	1.5%						
-산업조림/ 탄소배출권 조림	펄프재(열대지역)			100		소요액	7/3
	펄프재(기타지역)			100		소요액	10/3
	용 재(열대지역)			100		소요액	17/3
	용 재(기타지역)			100		소요액	25/3
-바이오에 너지조림	고무나무			100		소요액	7/3
	팜유나무			100		소요액	7/3
-용자지원 조림지에 대한 육림				100		소요액	※참조
-벌채				70	30	20억이내	2/3
-임산물가공시설				70	30	20억이내	2/3

- ※ 1. 용자지원된 조림지의 육림 용자기간은 당초 조림용자기간 이내로 적용
 2. 임산물가공시설 : 조림·벌채에 수반되는 가공시설, 목질계 바이오매스 생산시설
 3. 용자액은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연속되는 익년도 사업비 포함 지원 가능
 4. 벌채 및 임산물가공시설의 경우 신청기간은 하반기(7~12월)로 한정

⑤ 사립수목원조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o 사립수목원조성	3.0%			70	30	설계의 70%이내	10/10

⑥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o 사립자연휴양림조성	3.0%			70	30	설계의 70%이내	10/10

⑦ 산림조합육성

사 업 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o 산림조합육성	3.0%						
-단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2
-장기사업자금				100		소요액	3/7

⑧ 산양삼 생산자금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o 산양삼 생산자금	3.0%			70	30	100백만원	10/5

⑨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명	금리	보 조 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o 순수용자	3.0%						
-표고생산자금				70	30	100백만원	3/2
-밤 방제탑재용차량				90	10	99백만원대	3/7
-단기임산물생산				70	30	100백만원	3/2
-임산물생산장비				70	30	7백만원/대	3/7
-조경수·분재생산				70	30	100백만원	3/7
-임산물가공시설				80	20	설계의 80%이내	3/7
-임산물직거래판매				80	20	500백만원	3/7
-단기임산물수집				80	20	100백만원	3/7
-수액자원생산							
·산지구입				70	30	100백만원	3/7
·기자재구입				70	30	50백만원	3/2
o 보조수반 용자	3.0%						
-표고재배시설		20	20	20	40	50백만원	3/7
-표고재배단지		20	20	20	40	257백만원	3/7
-톱밥표고배지시설		20	20	20	40	200백만원	3/7
-밤나무노령목관리		20	20	20	40	100백만원	3/7
-밤 방제장비지원		20	20	20	40	2.4백만원	3/7
-밤 작업로		20	20	20	40	100백만원	5/5
-친환경 밤생산		20	20	20	40	100백만원	3/7
-대추생산기반조성		20	20	20	40	100백만원	3/7
-밤·잣 생산장비		20	20	20	40	100백만원	3/7
-조경수관정시설		30	20	20	30	6백만원	3/7
-산림복합경영		20	20	20	40	21.8백만원	3/7
-임산물표준출하		20	20	20	40	2백만원	3/7
-포장디자인개선		20	20	20	40	10백만원	3/7
-공동선별비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3/7
-임산물저장시설		20	20	20	40	60백만원	3/7
-임산물건조시설		20	20	20	40	24.5백만원	3/7
-임산물 가공지원		20	20	20	40	사업비의 20%이내	3/7

※ 표고생산자금 : 법인경영체는 1,000백만원까지 지원

※ 표고재배시설 : 법인경영체는 500백만원까지 지원

※ 임산물직거래 판매사업중 직판장임차료는 국고용자 100%가능

⑩ 조립용묘목생산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조립용묘목생산	3.0%					100백만원	
- 조립용 묘목생산				60	40	100백만원	3/2
- 간이온실시설지원		30	30	40	-	16백만원	3/2

⑪ 목가공시설지원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목가공시설지원	3.0~4.0%			80	20	설계비 8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⑫ 보드류시설지원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보드류시설	4.0%			80	20	시설비 80%이내	3/7

⑬ 국산원자재구입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국산원자재구입	3.0~4.0%			70	30	사업비 70%이내	3/2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⑭ 폐목재구입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폐목재구입	3.0~4.0%			70	30	사업비의 70%이내	3/7

※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차등 적용(임업인 3%, 비임업인 4%)

⑮ 유통센터원료구입

사업명	금리	보조율(%)				용자한도	용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유통센터원료구입	3.0%			80	20	사업비의 80%이내	3/2

⑩ 수출원자재구매

사업명	금리	보조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수출원자재구매	4.0%			70	30	1,500백만원	2/3

※ 수출원자재구매 : 사업자당 15억원 이내(단, 신청업체가 적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⑪ 임업기계화

사업명	금리	보조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 임업기계화							
- 임업기계장비 구입	3.0%			70	30	30백만원 이내	3/7
- 임업기계장비 생산	4.0%			70	30	100백만원 이내	3/7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의 융자한도 참조

※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에서 정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용자지침(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고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신청자격 중 지원대상자의 조경수·분재, 표고 등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

신 청 자

- 신청자는 농림수산사업신청서(자율사업신청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순수용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용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사업예정 전년도 1.20까지 제출이 원칙이나,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에 따른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시신청 가능(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용자금의 경우 용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함
-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하고, 사업별 신청서식은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용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신청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대출금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대출금에 대한 신용조사서를 작성한다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시군농림수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 조립,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약속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산 립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여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4.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순수융자금) 및 지자체(보조포함 융자금)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사업)는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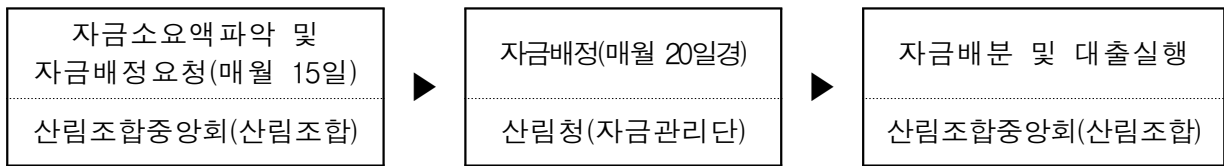
연간 총 용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시행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용자한도액을 배정 받은후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용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용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신청인에게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용자(이차보전대상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분기별로 산림청에 신청
- ※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이 신청시기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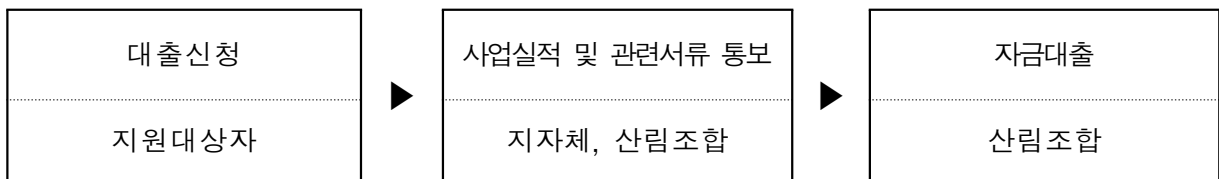
산 립 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용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자금 관리단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용자) 용자한도액 배정 요청을 근거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용자한도액 배정승인을 통보하고, 농업정책 자금 관리단에 자금배정 승인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용자)의 이차보전금 지급

※ 국고용자사업



※ 대출기관용자사업



5. 이행점검단계

《사후 관리》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 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정산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 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1억원 이상 지원경영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집중관리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 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립 청

- 산림청 사업지원과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산림조합
 - 점검횟수 : 연 2회 이상 (5~6월, 10~11월)
 - 점검반구성 : 산림청(주관), 산조중앙회·농업정책자금관리단(협조)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부당사용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운용규정,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율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월보(매월 5일까지) 및 연보(다음해 1월10일까지)를 제출받아 측정
-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지원받은 이용자의 만족도는 자체설문 또는 재정성과평가 연구용역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사업 인지도, 정책, 대출정보, 자금운영의 적정성, 소득증대 정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하반기
- 조사대상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받은 자 중 표본추출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한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주관), 재정성과평가 용역 위탁기관(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세부사업별 융자금 집행율 및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성 증진과 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주관), 재정성과평가 용역 위탁기관
- 평가기간 : 매년 재정성과평가 용역 기간 중
- 평가대상 : 2년전 지원자금 포함한 사업별 자금 및 대상자(표본조사)
- 평가기준 : 융자금 집행율 및 재정성과평가 만족도조사 기준(별도)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융자금 집행율>

- 산림조합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산림조합별, 사업별 융자금 집행율을 파악하여 산림청에 보고(연보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보고한 월보, 연보를 종합분석하여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등 제도개선에 반영

<이용자 만족도>

- 매년 실시하는 재정성과사업 모니터링 용역에 따라 연구용역 위탁기관에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대상자의(최근 2년 포함) 만족도 조사 위탁
- 설문대상자 표본 추출 등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의 협조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 부진시 집행부진 사유 및 대책안을 산림청에 제출하고 산림청(사업자금과, 사업지원과)에서는 집행율

제고대책을 마련

《환 류》

- 산림청에서는 융자금 집행율,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분석하여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 등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반영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에 환류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등 각종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하고, 사업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에 따라 신청

【별지 서식】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건별)

연 번	2009 -
일 자	년 월 일
상 담 자	
상담장소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상 담 방 법	내방, 방문 전화, 서면			
주 소	전 화					
종 분 사 야	농업소득 규 모 백만원	경 영 경 력 년	경 영 규 모			
경 기 방 영 록 법	부 채 규 모 백만원	총자산의 추정가액 백만원	유동자산 (현금·예금) 백만원			
문 의 내 용		상 담 내 용				
희 망 사업분야	투 자 계 획 (백만원)	종합자금		종합자금 신청계획 (백만원)	시 장 자	설 비 금
		기타용자			운 자	영 금
		자 부 담				
		합 계				
사업준비 자문내용						
상담자 의견						
상담후 조치사항						

(주) 1.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2. 상담자의견 : 사업의 타당성, 투자규모의 적정성, 사업준비정도, 향후 지원 혹은 추가상담, 투자유도방향, 타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지원방향 등을 간략히 서술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 상담기록부(총괄)

연번	일 자	성 명	전 화	투자계획(백만원)					상담내용
				합 계	자부담	기 타 용 자	종합자금		
							시설장비자금	운영자금	
2009 -1									
소계		명							

(주) 각 상담창구에 상시 비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소득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소득과	과장 이종건 사무관 민한기	042-481-4200 042-481-4208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팀장 이근석	02-3434-7221

I. 사업개요

1. 목적

- 임산물의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
-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2.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육성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8년까지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을 15개소로 계획하고 매년 15개소씩 조성 목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실적	15	12	13	15	1월	생산단지조성실적/생산 단지조성계획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농특회계	603,601	53,741	70,936	65,551	131,102
보 조	122,057	19,767	27,079	23,109	46,218
용 자	177,254	(981)	(983)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방비	86,770	11,138	14,242	14,805	29,610
자부담	217,520	21,855	28,632	27,637	55,274
○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496,677	17,816	29,622	34,387	68,774
- 보 조	79,403	5,624	10,838	10,572	21,144
- 용 자	175,292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65,512	4,001	5,979	8,366	16,732
- 자부담	176,470	8,191	12,805	15,449	30,898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97,000	31,288	36,750	25,000	50,000
- 보 조	38,800	12,515	14,700	10,000	20,000
- 용 자	-	-	-	-	-
- 지방비	19,400	6,257	7,350	5,000	10,000
- 자부담	38,800	12,515	14,700	10,000	20,000
○ 관상수토양개량	2,424	808	808	2,036	4,072
- 보 조	1,938	646	646	1,425	2,850
- 용 자	-	-	-	-	-
- 지방비	486	162	162	407	814
- 자부담	-	-	-	204	408
○ 조경수관정시설	960	560	480	640	1,280
- 보 조	608	328	240	240	480
- 용 자	-	-	-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64	64	96	160	320
- 자부담	288	168	144	240	480
○ 산림복합경영	6,540	3,270	3,276	3,488	6,976
- 보 조	1,308	654	655	872	1,744
- 용 자	1,962	(981)	(983)	(이차보전)	(이차보전)
- 지방비	1,308	654	655	872	1,744
- 자부담	1,962	981	983	1,744	3,48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균특회계(제주도)	-	196	76	40	80
보 조	-	49	19	13	26
용 자	-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지방비	-	49	19	9	18
자부담	-	98	38	18	36
○ 산림작물생산기반시설지원	-	196	76	20	-
- 보 조	-	49	19	5	-
- 용 자	-	(이차보전)	(이차보전)	(이차보전)	-
- 지방비	-	49	19	5	-
- 자부담	-	98	38	10	-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	-	20	-
- 보 조	-	-	-	8	-
- 용 자	-	-	-	-	-
- 지방비	-	-	-	4	-
- 자부담	-	-	-	8	-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표고재배 시설 : 표고(원목, 톱밥)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톱밥표고배지 시설 : 표고(원목, 톱밥)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③ 밤 생산기반조성 : 밤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 밤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밤나무 노령목관리, 밤 방제장비 지원, 밤 작업로시설 지원,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밤대체작목 조성, 친환경 밤생산 지원 등을 말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이후 같음
- ④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⑤ 밤·잣 생산장비 지원 : 밤나무 및 잣나무를 경영·관리하는 산주 또는 법인경영체
- ⑥ 산양삼 생산이력제 :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제 시행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⑦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조경수생산자는 한국조경수협회, 분재생산자는 한국분재조합, 양묘생산자는 한국양묘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법인경영체 포함)

- ⑧ 조경수 관정시설 : 조경수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⑨ 산림복합경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서 장기 산림경영(목재생산)과 더불어 농업과 임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고자 하는 자
- ⑩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별표 1의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① 표고재배 시설 : 표고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② 톱باط표고 배지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로서 톱باط표고배지생산관련 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 등)을 받은 자
- ③ 조경수 관정시설 : 조경수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중 조경수 재배면적이 1ha 이상으로서 조경수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묘목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④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경영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 1개 단지 규모가 33,000㎡ 이상
 -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는 제외
 - 관상산림식물 생산을 위한 유리온실 시설은 1개단지 규모가 온실 1,650㎡ 이상(부대시설 별도)
 - ※ 등기부등본(토지)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 ⑤ 법인경영체의 범위 및 조건
 - 법인경영체의 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임산물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법인
 - 법인경영체의 조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수산 사업실시규정 별표 4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3.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 실 류	밤·감·잣·호도·대추·은행·도토리·개암·머루·다래·복분자
버 섯 류	표고·송이·목이·석이
산 나물 류	더덕·고사리·도라지·취나물·참나물·두릅·원추리·죽순
약 초 류	삼지구엽초·청출·백출·애엽·시호·작약·천마·장뇌·결명초
수 엽 류	은행잎·솔잎·두충잎·떡갈잎·명게잎·음나무잎·참죽잎
약 용 류	오미자·오갈피·산수유·구기자·두충나무·헛개나무·음나무·참죽나무
수목부산물류	수액·수피·수지·나무뿌리·나무순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자생란·조경수·분재·잔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① 표고재배 시설 : 원목표고재배 및 톱밥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 등 지원
- ② 톱밥표고배지 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 시설, 표고톱밥 재배사 등 시설
- ③ 밤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밤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제외)
 - 밤 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 : 밤 수확 증대 또는 밤 재배지의 토양개량을 위한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 지원
 -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밤대체작목 조성 :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친환경 밤생산 지원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시설비 지원
 -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 (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④ 대추 생산기반조성 : 대추생산기반조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굴삭기 제외)
- ⑤ 밤·잣 생산장비 지원 : 굴삭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밤 수집기 등
 - 굴삭기는 1톤 이하의 농업용 장비로서 교육이수자에 한함
 -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⑥ 산양삼 생산 이력제 : 산양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의 이력정보 관리를 위한 농약검사, 토양검사, 유전자검사, 이력관리 카드제작 등 사업비 지원
- ⑦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탄산석회 및 목탄 등 관상수 재배지 토양개량제 구입비 지원
 - ※ 실질적인 토양개량을 위한 탄산석회, 목탄 이외의 토양개량제도 가능(토양개량 효과가 표시된 것에 한함)
- ⑧ 조경수 관정시설 :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및 우량조경수 생산을 위한 관정시설비 지원
 - ※ 관정시설은 관상수 재배포지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조경수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⑨ 산림복합경영 :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 조경수, 약용·관상용식물, 표고 재배사(표고자목구입비 지원은 제외) 등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 종자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등
 - 임간방목(염소제외), 작업로 및 울타리 설치 등
 - 산림복합경영지 관리를 위한 최소 규모(10평이하)의 부대시설(창고)

- ⑩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소득지원 대상품목
-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 표고, 대추는 제외
 - 재배단지 기반시설(재배관련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등) 지원
 - 사업단지내 작업로, 모노레일 등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 가능
 - 송이산가꾸기 : 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 ※ 송이산가꾸기사업은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실시
 - 관상산림자원 : 조직배양을 위한 하우스, 온실 등 기반시설비 지원
 - 호도·뽕은감 생산단지 :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 장비, 토양개량비료 등 지원
 - 종자·묘목 구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되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의 경우
 - 종자·묘삼지원은 2년생 이하만 지원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인증 기관의 농약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① 표고재배 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 표고자목, 톱밥표고배지 및 선별·포장기 등은 용자사업으로 지원
 - : 용자 70%, 자부담 30%

② 톱밥표고배지 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③ 밤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관리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밤 방제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 방제장비 탑재용 차량은 용자사업으로 지원(대당 11,000천원)
: 용자 90%, 자부담 10%
- 밤 작업로시설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용자조건 : 연리 3.0%, 5년거치 5년상환)
- 밤나무 토양개량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밤대체작목 조성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친환경 밤생산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④ 대추 생산기반조성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⑤ 밤·잣 생산장비 지원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기타 임산물 생산장비는 용자사업으로 지원(대당 7,000천원)
: 용자 70%, 자부담 30%
- ⑥ 산양삼 생산이력제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⑦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 국고보조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⑧ 조경수 관정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⑨ 산림복합경영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상환
- ⑩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① 표고재배 시설
 - 국고보조한도액 : 표고재배자 50백만원 이내, 법인경영체 500백만원 이내
 - 지원단가
 - 재배하우스 시설 : m²당 11,600원(국고보조 5,800원, 국고용자 5,800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 온실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기계·장비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② 톱밥표고배지 시설

- 톱밥표고배지 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 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③ 밤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관리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하여 실행)
- 밤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 밤 작업로시설 지원 : km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 경사도 35°이상 산지에서의 작업로 시설시 가급적 성토를 지양할 것
- 밤나무 토양개량지원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 밤대체작목 조성 : ha당 총사업비 7백만원
- 친환경 밤생산 지원 :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④ 대추 생산기반조성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⑤ 밤·잣 생산장비 지원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 굴삭기는 1톤미만의 굴삭기 실소요액

⑥ 산양삼 생산이력제 : 생산이력제 집행에 따른 실소요액

⑦ 관상수 및 묘포지 토양개량 지원단가(ha당)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입상석회 2,000kg/ha(2,500원/20kg) : 250천원
- 목탄분말 4,500kg/ha(15,000원/15kg) : 4,500천원

⑧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단가 : 1개소당 총사업비 20,000천원

- 1일 양수량 30t이상, 수중모터 3HP이상 기준

⑨ 산림복합경영

- 개소당 총사업비 109백만원(국고보조액 21.8백만원)
- 사업비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하되, 기존지원 대상지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
- 개별을 실시한 후 단일작목을 식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제외

- 모델유형 및 지원기준

- 단기소득사업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50%이상
- 목재생산중심형 : 산림면적(10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70%이상
- 복합산지관리형 : 산림면적(5ha이상)중 목재생산림비율이 90%이상

⑩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 총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작업로시설 : km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송이산가꾸기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관상산림자원 생산시설 : 3.3m²당 하우스 시설은 250천원 이내, 유리온실은 800천원 이내, 아크릴 시설은 1,000천원 이내

- 호두·뽕은감 생산단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 산양삼 생산단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1.20까지)

지 자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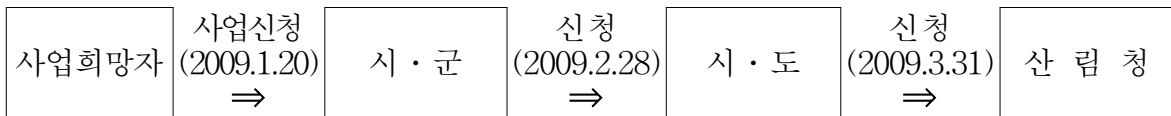
- 시·도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수산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자율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가급적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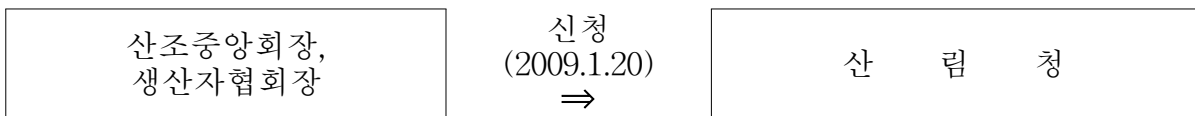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부)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전문지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1월말)
 - 사업의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사업 또는 산림조합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산림청에 신청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 예산요구서 심사시 시·군 농업·농촌발전계획 등의 반영, 다른 부서의 사업 계획과의 연계성, 점검·평가 결과 및 정부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15까지 시·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 계획을 시·도에 통지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자 자 체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수산심의회)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공통)
 - 산지에서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법인경영체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 전업임업인

- 산림복합경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법인경영체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
 - 시·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수산심의회)
 - 시·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 및 사업신청
 - 시·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시·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까지 시·군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산림조합장은 시·군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시·군 농림수산심의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를 구성
- 산림조합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반드시 융자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준함.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시행(당년 1월)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 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산림조합중앙회(지역산림조합)

- 시·군 또는 산림조합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용자한도액을 배정 신청(매월 10일까지)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을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시·도로 자금 배정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에 대하여 소요액을 산립청으로 제출
 -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립 청

- 산립청에서는 5억원 이상인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산립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립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시·군·구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시·군·구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구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군·구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간	비 고
	부터	까지		
- 밤·표고·대추·호두 재배시설 - 밤 방제장비 - 밤·잣 생산장비 - 표고종균생산시설 -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 - 조경수 관정시설 - 부대시설	2009년도	2013년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군·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6. 성과측정단계

가. 성과지표 측정

- 당년도 사업실행결과에 따른 사업실적을 성과지표에 의하여 측정
 - 평가기관 :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시·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후 확정(1월)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별 성과지표 측정

나.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매년 11월중 (10일간)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약 100명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주 최 : 산림청(시·도 협조)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 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시·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평가기준표의 평점에 대하여 사실여부 등을 서면심사 후 지역 본부에 제출(2월말까지)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3.15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함.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농림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조직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 산림담당부서 및 산림조합에 제출(2009.1.20까지)
 - 정책자금융자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5)
- 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시·군 및 산림조합에서 신청한 2010년도 사업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2009.3.31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6.30까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안내
 - 공모예정일 : 2009. 8~9월(2010년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모접수방법(예정) : 산림청 공모 공고 →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사업계획성 검토 후 산림청 제출 →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2009년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 공고(2008.9.9)를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소식의 숲 → 공고)
- 송이산가꾸기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므로 사업 신청하도록 안내
- 산양삼 재배단지의 경우 전통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사업으로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므로 사업신청 접수 제외
 -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지원

6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소득과, 국제산림협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소득과	과장 이종건 사무관 박영환	042-481-4200 042-481-4206
	국제산림협력과	과장 박종호 서기관 이치명	042-481-4080 042-481-4085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부장 이동환	02-3434-7180
농협중앙회	원예부	차장 허장행	02-2080-6337

※ 임산물 수출촉진은 국제산림협력과에서 담당

I. 사업개요

1. 목적

- 임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제고, 산지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 도모
- 임산물 판매촉진비, 수출 기계장비·운송차량 구입비, 해외시장개척 등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으로 임산물 수출 촉진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및 제7호,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3호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5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임산물 수집·가공·유통단계 구축, 임산물 표준출하 유도, 저장·건조시설 지원 및 임산물 안정자급을 지원하여 임산물 홍수출하방지 및 가격안정 조절,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추진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모를 통하여 사업신청
- 2012년까지 임산물 수출 2억\$달성(중장기 임산물 수출계획)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시 기	측정방법
		'06	'07	'08		
□ 농특회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 센터 조성(개소)	15	4	5	10	2010.1	임산물유통센터조성 실적 (※공모대상 사업)
▪ 임산물표준출하 지원(개소)	246	198	197	198	2010.1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실적
▪ 포장디자인개선(개소)	12	2	4	12	2010.1	포장디자인개선지원 실적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톤)	23,750	5,000	23,750	23,750	2010.1	공동선별비지원 실적
▪ 임산물 저장시설 (개소)	50	56	62	64	2010.1	임산물 저장시설 실적
▪ 임산물 건조시설 (개소)	10	10	10	10	2010.1	임산물 건조시설 실적
▪ 임산물가공지원(대)	330	250	247	300	2010.1	임산물가공기계장비 지원 실적
▪ 디자인개발 지원(개소)	8	-	-	13	2010.1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
▪ 저장포장라인보완 (개소)	8	-	-	13	2010.1	저장포장라인 보완 지원 실적
▪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백만원)	32,200	52,470	49,900	44,000	2010.1	임산물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용자 실적
▪ 임산물 수출목표 (백만\$)	140	124	130	135	2010.1	(금년 수출실적-전년 수출 실적)/전년 수출실적×100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지역개발사업계정)						
▪ 임산물표준출하 지원(개소)	15	-	1	14	2010.1	임산물표준출하지원 실적
▪ 임산물저장시설 지원(개소)	2	-	1	1	2010.1	임산물저장시설지원 실적
▪ 임산물수출촉진 지원(종)	2	-	-	3	2010.1	임산물수출기반 조성실적

※ 2009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개 소 별 총사업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 농특회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5개소	1,000	15,000	7,500	7,500	-	3,000	4,500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4,438	1,087	1,087	(1,087)	1,087	2,174
- 임산물표준출하	246개소	10	1,968	492	492	(492)	492	984
- 공동선별비지원	23,750톤	0.1	1,900	475	475	(475)	475	950
- 포장디자인개선	12개소	50	480	120	120	(120)	120	24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2,980	3,245	3,245	(3,245)	3,245	6,490
- 임산물 저장시설	50개소	240	12,000	3,000	3,000	(3,000)	3,000	6,000
- 임산물 건조시설	10개소	98	980	245	245	(245)	245	490
○ 임산물 가공지원	33대	5	1,650	330	330	-	330	660
○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1,252	501	501	-	250	501
- 디자인개발	8개소	81	647	259	259	-	129	259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8개소	76	605	242	242	-	121	242
○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40,250)			(32,200)		(8,050)
○ 임산물 수출 활성화			4,880	2,694	2,694	-	-	2,186
- 임산물 판매촉진비			3,974	1,987	1,987	-	-	1,987
- 수출 기계장비	15대		350	175	175	-	-	175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8품목		80	56	56	-	-	24
- 수출 현지검역비	2품목		30	30	30	-	-	-
- 분재표찰 제작비	20천개		4	4	4	-	-	-
- 밤 수출이력관리비	1품목		442	442	442	-	-	-
○ 해외시장개척			812	644	644	-	-	168
- 수출임산물 해외홍보	5종		250	250	250	-	-	-
- 해외시장개척활동	8종		420	294	294	-	-	126
- 신규 수출상품개척	5종		142	100	100	-	-	42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지역개발사업계정)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15개소	2.8	215	43	43	(43)	43	86
○ 임산물저장시설	2개소	8.5	85	17	17	(17)	17	34
○ 임산물수출촉진	2종	110	220	110	110	-	44	66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 농특회계					
합 계	838,396	101,808	99,618	85,504	192,057
보 조	61,564	12,472	14,682	16,001	48,279
용 자	532,565	54,181	48,505	36,862	73,724
지방비	30,209	6,601	7,780	7,912	15,824
자부담	214,058	28,554	28,651	24,729	54,230
○ 임산물산지유통센터	6,000	7,256	10,000	15,000	30,000
보 조	4,200	3,628	5,000	7,500	15,000
용 자	-	-	-	-	-
지방비	200	1,451	2,000	3,000	6,000
자부담	1,600	2,177	3,000	4,500	9,000
○ 임산물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18,423	4,545	4,945	5,435	10,870
보 조	3,961	909	989	1,087	2,174
용 자	370	40	120	1,087	2,174
지방비	3,574	909	989	1,087	2,174
자부담	10,518	2,687	2,847	2,174	4,348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40,051	19,970	20,425	16,225	32,450
보 조	27,257	3,994	4,085	3,245	6,490
용 자	31,152	3,994	4,085	3,245	6,490
지방비	26,185	3,994	4,085	3,245	6,490
자부담	55,457	7,988	8,170	6,490	12,980
○ 임산물 가공지원	1,250	1,235	1,500	1,650	3,300
보 조	250	247	300	330	660
용 자	250	247	300	330	660
지방비	250	247	300	330	660
자부담	500	494	600	660	1,320
○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	-	2,034	1,252	2,504
보 조	-	-	814	501	1,002
용 자	-	-	-	-	-
지방비	-	-	406	250	500
자부담	-	-	814	501	1,002

o 임산물생산자 조직 육성	625,990	62,375	55,000	40,250	80,500
보 조	-	-	-	-	-
용 자	500,793	49,900	44,000	32,200	64,400
지방비	-	-	-	-	-
자부담	125,197	12,475	11,000	8,050	16,100
o 임산물 수출촉진	46,682	6,427	5,714	5,692	32,433
보 조	25,896	3,694	3,494	3,338	22,953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20,786	2,733	2,220	2,354	9,480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지역개발사업계정)					
합 계	-	80	470	300	600
보 조	-	16	184	60	120
용 자	-	13.8	24	60	120
지방비	-	16	94	60	120
자부담	-	34.2	168	120	240
o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11	50	215	430
보 조	-	2.2	10	43	86
용 자	-	-	-	43	86
지방비	-	2.2	10	43	86
자부담	-	6.6	30	86	172
o 임산물가공지원	-	15	-	-	-
보 조	-	3	-	-	-
용 자	-	3	-	-	-
지방비	-	3	-	-	-
자부담	-	6	-	-	-
o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	54	120	85	170
보 조	-	10.8	24	17	34
용 자	-	10.8	24	17	34
지방비	-	10.8	24	17	34
자부담	-	21.6	48	34	68
o 임산물가공·유통 시설	-	-	300	-	-
보 조	-	-	150	-	-
용 자	-	-	-	-	-
지방비	-	-	60	-	-
자부담	-	-	90	-	-
o 임산물수출촉진	-	-	340	220	1,100
보 조	-	-	110	110	550
용 자	-	-	-	-	-
지방비	-	-	68	44	220
자부담	-	-	162	66	33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①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 및 한국조경수협회 등(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②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
- ③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
- ④ 임산물가공지원 : 임산물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⑤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임산물지리적 표시등록 공고된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 ⑥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 임산물 생산자단체(법인경영체)
- ⑦ 임산물수출촉진 : 임산물수출업체,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공모사업 추진(지자체를 통하여 공모사업신청)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정의된 생산자 단체로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한국조경수협회 : 산림청장이 인가한 법인 등으로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법인경영체 포함

※ 조경수 유통분야의 사업신청은 '(사)한국조경수협회'와 협의하여 신청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자격요건 및 지원기준(법인경영체를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

(매출증명서 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4이상 이상인 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 지원대상자 선정시 1회에 3일이상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 선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개정 2008.7.23) 제48조 관련 별표4호 참조

○ 해당 임산물의 전국대비 생산액이 가장 높은 시·군에 우선지원(산림청 임산물생산통계 기준)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거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나.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람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자

- 법인경영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방공기업 등 법인 중 단기소득 임산물을 사업대상품목으로 하는 법인

※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 등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산지생산·유통전문조직체로 공동선별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사업자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자

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임산물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 등기부 등본(토지)상 근거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라. 임산물가공지원

○ 임산물 생산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사람

- 법인경영체 :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 마.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산림청에 지리적표시등록 공고 된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바.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

※ 생산자단체 및 법인경영체의 지원조건은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 참조

사. 임산물 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 공통 적용사항 : 다른 자금의 지원 제한(중복지원 제한)

-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세부사업 간의 당해년도 중복지원 제한

3. 지원대상(공통)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임산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실류 : 밤, 감, 호도,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 버섯류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청출, 백출, 애엽,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장뇌), 결명초 ○ 수엽류 : 은행잎, 솔잎, 두충잎, 떡갈잎, 명개잎, 음나무잎, 참죽잎 ○ 약용류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 수목부산물류 : 수액, 수피, 수지, 나무뿌리, 나무순 ○ 관상산림식물류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표고, 대추, 산채 등 주요 임산물
임산물 수출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임산물(HSK 1류-23류), 임산 가공품 또는 파생품(HSK 38류, 45류, 46류, 48류), 목제품(HSK 44류, 94류) 수출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조경수 등 관상자원 및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사업 육성 및 직거래체계 구축 지원

○ 임산물표준출하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 산림청장이 고시 또는 승인한 임산물 표준규격, 한국 산업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하여 포장자재 일부 지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조직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브랜드로 공동출하, 공동계산 한 임산물에 대하여 선별비용 일부지원
- 포장디자인개선 :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소비욕구 증진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물의 포장디자인 개선비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임산물에 대한 저장 건조시설을 지원으로 생산 및 유통조직의 활성화와 규모화를 촉진시하여 임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홍수출하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 등을 위해 지원

○ 임산물가공지원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꾀감, 밤 등의 임산물을 대상으로 박피기 등 임산물가공기계장비 지원

○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 디자인개발지원 : 지리적표시인증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디자인을 개발하여 임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지원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지리적표시인증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명성, 품질,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장포장라인시설을 보완하여 임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지원

○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

-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용자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공모사업 신청자 중 심사·평가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자는 기계·장비 구입시 검증장비 구매,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보증을 받은 장비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대상장비 : 일반 선별기, 결속기, 봉합기, 컨베이어, 박피기, 세척기

나.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 3%(3년 거치 7년 상환)

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 3%(3년 거치 7년 상환)

라. 임산물 가공지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용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용자조건 : 연 3%(3년 거치 7년 상환)

마.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디자인개발·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지원비율 : 국고보조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바.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 지원비율 : 국고용자 8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 3%(1년 이내 상환)

사. 임산물 수출촉진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국고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국고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균특) : 국고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국고지원액 : 1개소당 500백만원(총 15개소 7,500백만원)

나. 임산물 표준출하(임산물표준출하·공동선별비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 국고지원액

-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 1개소당 2백만원(총246개소 492백만원)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 1개소당 2.8백만원 내외(총15개소 43백만원)

- 임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 톤당 2만원 (총23,750톤 475백만원)
- 포장디자인개선 : 1개소당 10백만원(총12개소 120백만원)

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국고지원액

- 저장시설 : 1개소당 60백만원(250m²)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총 50개소 3,000백만원)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저장시설 : 1개소당 8.5백만원 내외(총2개소 17백만원)

- 건조시설 : 1개소당 24백만원 내외(총 10개소 245백만원)

라. 임산물 가공지원

- 국고지원액 : 대당 1백만원으로 하되 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총 330대 330백만원)

마.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 국고지원액

- 디자인개발 지원 : 1개소 32백만원 내외(총8개소 259백만원)
- 저장포장라인시설보완 : 1개소 30백만원 내외(총8개소 242백만원)

바.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 국고융자한도액 : 2,000백만원 이내

- 융자단가 :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사. 임산물 수출촉진

-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선정 심사 또는 사업비 배분 검토시 세부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공모에 응모하여 신청

산 립 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군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명의로 전문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1월말)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시·도는 시·군에서 보고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산림청에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18조 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에는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심사기초자료 내용, 증빙자료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신청조직 주소지 해당 시·군)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일반현황(주요 품목 생산유통현황, 사업여건), 사업추진목표(사업추진방향, 종합목표, 연차별사업목표, 투융자계획-로드맵), 참여조직현황, 원료농산물조달계획, 생산유통혁신계획, 조직의 형태(연합사업조직의 경우 법인화계획), 농가조직화계획, 회원 D/B화 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 마케팅 홍보계획, 상품화전략, 손익목표 등을 반드시 포함
 - 임산물표준출하지원(공동선별비)을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자 대표의 확인을 필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절차 및 제출기한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산림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조합 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시달(전년도 1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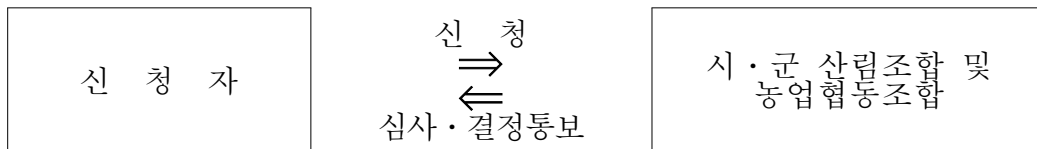
사업신청자

- 사업을 신청하고 하는 자는 임산물생산자 단체육성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시·군 산림조합 또는 농협에 제출(전년도 1.20)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및 농협중앙회(과수화훼과)는 지원품목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산림청에 추진계획 제출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다. 임산물 수출촉진

산림청

- 산림청은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기관은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에 세부사업별로 사업자선정 공고 실시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산림청에 보고

사업신청자

- 수출활성화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8호내지 제12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증빙자료(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산림조합중앙회)으로 제출
- 해외시장개척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붙임 1) 및 (재무제표, 업체규모 등)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관 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으로 제출
- 임산물 수출 촉진사업(균특)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공모를 통하여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평가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자(생산자,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을 하고자하는 생산자 및 법인경영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군에 신청(신청 : 전년 1.20)

지자체(시·군)

- 시·군은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를 현지 확인 실시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능력 및 경영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수산심의회)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0조에 따라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기관(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동규정 제21조 별지 제3호 서식)를 의뢰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출기관(산림조합)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용조사 실시
 -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독립가, 임업후계자, 청정성재배 등 자체에

- 알맞은 평가표를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공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
 - 친환경임산물 생산자 또는 친환경임산물 생산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의 생산자 및 시·군의 산림조합 또는 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 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지역내의 생산자 및 산림조합 또는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5톤이상 생산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 사업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9조)
 - 시·군·구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
 - 시·군에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26조)

지자체(시·도)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농림수산심의회)
-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사업신청(예산요구 : 전년도 3.31)

산림청

- 사업예산안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지(전년도 10.15)

지자체

- 시·도에서는 예산안을 시·군·구에 통지(전년도 11.15)
- 시·군·구에서 대상자 조정 및 최종확정(전년도 12.15)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일선 산림조합 및 농협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별 지원사업을 파악·종합하여 추진사업계획서와 함께 산림청에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안)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 최상위 조직으로 평가된 법인경영체
 - 친환경인증 임산물 생산·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임산물표준출하규격에 따른 공동출하 실적이 우수한 법인경영체
 - 주산단지내 회원이 다수인 법인경영체
 -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사업을 희망하는 법인경영체
 - 기타 법인경영체

산 립 청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다. 임산물 수출촉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세부사업별 사업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후 산림청에 승인 요청
 - 필요할 경우 사업별로 사업자 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수출촉진사업(균특)은 자치단체의 사업선정기준, 자격조건 등에 따름

산 립 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검토 및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사업은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하반기에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공고 및 심사평가 실시

사업자(생산자, 법인체 등)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 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시행
- ※ 사업추진은 특별한 사유(시기적 사업 등)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사업이 지연되어 연말에 급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철저)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사업시행자(법인경영체 등)

-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9.1.20까지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에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법인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09. 2.10까지 산조중앙회(도지회) 및 농협중앙회(도지회)에 제출
- 산조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법인경영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종합정리하여 품목별·사업종류별·지원예정 법인경영체별·지원예정시기별 내역을 작성하여 2009. 2월말까지 산림청에 제출하고 지원예정자에게 통보

산 립 청

- 지원예정시기별 자금배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하고, 자금배정 결정사항을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 통보

다. 임산물 수출촉진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산림청과 협의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은 사전 부지 및 자부담분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민간보조사업)
-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와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민간보조사업)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자치단체보조사업)
 - 시장·군수는 사업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시행 절차(참고)

- 민간보조사업(민간단체가 사업시행의 주체)
 - 사업계획수립 제출(산조중앙회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승인(산림청) → 국고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 협회 등) → 예산 및 자금 배정(산림청) → 사업시행(생산자 협회 등)
- 자치단체보조사업(시·군·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법인경영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군·구)

4. 자금배정단계

-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사업대상자

-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액을 우선집행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관련)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기타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공동선별비용을 지급하고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보조금 신청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월별로 관할 시·군에 보조금 신청(매월 5일까지)
 - 시·군은 산지유통조직에서 작성 제출한 공동선별비 지급신청서와 사업내용 일치여부 확인 후 공동선별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통장에 보조금 입금

[보조금 신청시 제출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관할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공동선별비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물량)(별지 제3호 서식)
 - 공동선별·공동계산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물량)(별지 제4호 서식)
 -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

[자체 보관자료]

- ※ 공동선별조직이 작성하여 자체보관 하여야 할 서류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별지 제5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및 관할 산림조합에 동시 통보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금의 경우 시장·군수가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융자계획을 통보하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대출 조치
- 임산물산지종합센터 사업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조경수 등 관상자원 및 산지 임산물의 수집·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비(공통 : 부지조성비·시설비 및 설계비, 조경수 : 전시포지 조성비, 임산물 : 저온저장고·선별장, 가공·포장기계 등. 단 부지구입비는 제외) 지원
- 산림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유통지원부) 및 농협중앙회(과수화훼과)의 분기별 배정 요청에 의하여 자금배정
-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생산하는 주생산 품목과 관계없이 일반적 필요에 의한 별도의 사업 하나만을 지원할 수 없음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다.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별로 분기별 자금계획에 의거 산림청에 자금신청
- 산림청은 분기별로 사업주관기관에 자금 배정

5. 이행점검단계

-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군)

- 시·군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군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 제34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
- 시·군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지원 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호, 제9호)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 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시장·군수 및 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및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대시설물	준공일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 시·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시·도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산 립 청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인센티브자금, 홍보사업비 등 자금내역별 적정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재무건전성 : 자산내역, 부채현황, 손익현황, 자금관리 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군)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 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해당 조직의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

- ① 대출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④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확인 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6조)

사 유	지원제한기간
○ 부당사용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금액의 비율이 50%이상인 때	5년 (비율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30% 이상 50%미만인 때	3년
○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이상 30%미만인 때	2년
○ 부당사용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 금액의 비율이 20%미만인 때	1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가 의무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미만일 경우는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지원자금의 연간 사용실적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미만일 경우는 총사업비와 실제 사용액의 차액 중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 ※ 농업법인의 경우는 연간 사용실적이 정부지원액의 125% 미만일 경우 실제 사용액에 대한 차액
 - 자금지원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위약금 징수
 - 사업의무 미 이행에 따른 위약금은 관련 규정에 의거 농안기금에 반납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사후관리》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시·군 산림조합 및 농업협동조합 : 융자금 적기 융자 및 회수 관리

- 산림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일선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을 배정하고 지도·감독 실시 및 융자금 사후관리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실행되었는 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채여부를 확인 후 정산
- 보고·기타
 -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담보물이 부족한 법인경영체에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법인경영체의 회원명으로 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대출금은 법인경영체의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며 대출기관은 이를 지도·감독
 - 임산물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 및 농협중앙회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융자금 지원시 우대금리, 인센티브 부여 및 감액지원 등의 조치

사업관리주체(산림청)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사업에 대하여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사업법인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농협중앙회 농협
 - 점검일정 : 상반기 및 하반기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유통자금 운영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배정 및 집행내역, 자금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정부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등

《제재》

산림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 사업대상자가 의무 사업량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금배정을 축소 검토

다. 임산물 수출촉진

《사후관리》

- 산림청 및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간담회·연찬회 등 개최, 지속적인 교육·홍보, 현장지도·점검 등 실시
- 산림청 사업담당부서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6. 성과측정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외부 전문컨설팅업체 또는 산림청
 - 평가지표 확정 : 전년도 평가지표 등을 감안하여 정함
 - 주요평가지표 : 사업추진 실적, 영업이익, 취급물량 및 규모, 경영성과 등
 - 평가일정 : 상·하반기 평가
 - 성과지표 측정 : 각 사업별 종합평가를 토대로 동 사업의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사업평가의 만족도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
 - 조사시기 : 연중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등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 성과지표 측정 : 매년 자금지원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청
 - 주요평가지표 : 자금지원 및 운영실적 등
 - 평가일정 : 상반기 및 하반기
- 만족도 조사 : 사업자 또는 전문조직의 운영실태, 운영자금 적정성 등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임정현장 중심으로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 등 관련 종사자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
 - 조사시기 : 연중
 - 조사대상 : 생산자, 생산자 단체, 법인 등 관련 종사자 등

다. 임산물 수출촉진

- 사업자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
 - 평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주요평가지표 : 수출계획 대비 수출실적, 전년도 실적대비 금년 성과 등
- 사업별 수출업체, 지원단체 및 협회 등 수출종사자들의 만족도를 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임산물표준출하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명품화 브랜드화

《사업평가》

1)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시·도 평가(협조기관 : 시·도)
- 평가기간 : 연중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3)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시·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

4) 평가 후 사후관리

- 시·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
 - 시·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시·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환 류》

-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 적용
 - 향후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 등을 통하여 상위조직으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 사업에 계속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신청
 - 인센티브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해당연도 평가결과 부진사업지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지원 시 잔액검토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나. 임산물생산자 조직육성(농안기금)

《사업평가》

1) 원 칙

- 운영자금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자금지원 확대 및 축소 검토를 통하여 자금운영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자금을 지원 받은 산림조합 및 농협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작성 마련

3)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평가기준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 산림조합 및 농협의 자금지원실적에 대한 평가실시(1월말까지)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평가서를 심사 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월 30까지)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자금지원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실시

4) 평가 후 사후관리

-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는 평가결과 자금지출이 부진한 산림조합 및 농협에 대하여 자금배정 독려
-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협중앙회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조직에 대하여 다음 사업의 배정 조정

《환 류》

- 자금의 사용 등을 감안하여 자금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
 - 향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조정 검토

- 공통사항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미달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다.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평가》

1) 원칙

- 수출촉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사업별 우대 또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과 극대화 도모

2) 사업평가 요령

- 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 평가기간 및 시기 : 사업 추진기간 동안, 11월
- 평가대상 : 수출활성화사업, 해외시장개척사업으로 구분 평가

《환 류》

- 사업성과 환류
 - 세부사업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 지원시기 : 평가완료 후 1월 이내
-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 우수조직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교육 등을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0년도 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법인단체 등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시·군 산림담당 부서에 제출(2010.1.20일까지)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한 200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9.3.31일까지)

- 산림청에서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를 기초로 200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6.30일)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의 경우 2010년도 사업집행기관은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009.3.31일까지)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7)
 - 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산수출팀(02-6300-1673)
 - 임산물 수출활성화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2)
 - 해외시장개척사업 : 농수산물유통공사 원예수출팀(02-6300-1354)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를 산림청에 제출(2009.3.31일까지)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임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은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할 계획임을 안내
 - 공모예정일 : 2009. 8~9월(2010년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모접수방법(예정) : 산림청 공모공고 →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사업계획성 검토 후 산림청 제출 →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소식의 숲 → 공고)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

○ 품목 :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조직명)				
		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조 직 결성일자			조직원수	명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동 평	동 평	동 평	동 평	조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주요출하처
		m ²	톤			
공동선별 출하계획 및 사업신청 내역	사업방식 (매취,수탁)	공동선별 계획물량	사업단가 (지원단가)	사업비 소요액	공동선별.계산 참여	
		톤	원	천원	조직수	인원
	상표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 번호	(출원시 출원번호)	
품질관리사 또는 자체검사원	성 명			직 위		
	주민번호			전화번호		
	교 육 이수과정					
보조금 입금의뢰처	예금주 성명	예금주 실명번호 (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위와 같이 공동선별 · 공동계산 출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 대표 ○○○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호	성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 1) 출하수량(A) :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수탁사업물량)에 작성된 출하자별 총 출하수량을 말함.

2)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 · 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매취사업 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_____ (품목 : _____)
 매입장부상 매입금액 및 물량 : _____ 원, _____ kg
 공동계산기간 : _____

일자	매입실적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농가수 (호)	매입량 (kg)			
계					

- 주 1) 출하수량(A) : 종합유통센터,공영도매시장,공관장,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 2) 매입장부의 물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출하자별 정산 영수(입금)증 보관 철저
- 3) 공동선별지원단가는 국고보조금(kg당 20원) 및 지방비(kg당 20원) 지원단가를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 매취분)

(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조직명(사무소) :
- 품 목 :
- 공동계산기간 : 200 년 월 일 ~ 월 일

순번	출하처	판매일자	원표번호	상표(성명)	품목	규격/등급	출하수량(kg)	단가(원)	판매금액(원)	상장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용기대여료	쓰레기유발금	출하처기타	손실보전금	현금지급액	계좌입금 (판매금액, 입체금+통장장려금)	거래구분	기산일
1	00유통																			
계																				

주 1) 출하수량 : 종합유통센터,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대형백화점 등 유통사업장으로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 받은 출하정산내역서에 명시된 물량
 2) 단가 : kg당 금액으로 등급별 가격 차이만 인정하며, 출하자별 차이는 불인정

【별지 제6호 서식】

() 공동선별 작업일지

(200 . . .)

조 장		품질관리사		책임자	
--------	--	-------	--	-----	--

작업 조장								
작업 장소		○○포장센터(또는 생산자조직 선별장 등)						
작업 내역		○○ 선별 및 포장						
금일 작업자 현황		총 : 20명						
차레	성명	출근 여부	차레	성명	출근 여부	차레	성명	출근 여부
1			11			21		
2			12			22		
3			13			23		
4			14			24		
5			15			25		
6			16			26		
7			17			27		
8			18			28		
9			19			29		
10			20			30		
공동작업 수량		총 : kg(본)						
인건비 소요 비용		1인당 원(총 원)						

주 1) 출근여부에 담당계원의 확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

2) 각 조직이 사용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과 비교하여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 양식을 계속 사용 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임산물 생산자단체육성 사업신청서

1. 조직 현황

법인경영체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설립일자			설립법적근거			
조합원수			출자금액	천원		
시설현황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수송차량			기타
	m ²	m ²	대			
재배현황	구분	품목				
		면적(ha, m ³) 생산량(톤)				
기타특기사항	공동출하실적 :		톤			

2.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부담	

200

신청인 법인경영체명

성명(대표자)

(인)

○○산림조합장 귀하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임산물 판매촉진비(200 . /4분기)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내역			비고
	물량(kg)	금액(\$)	수출기간	수출지역 (국가)	운송형태	

위와 같이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수출내역 1부
2. 수출 포장재 사양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개발품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포장표기언어	소요액(원)

※ 개발유형 : 캐릭터 개발, 용기형태 개발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3.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서(수출증빙서류포함)1부 (붙임)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분재표찰 제작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수출(생산)계획		소요액(원)
	물량(분)	금액(\$)	물량(분)	금액(\$)	

위와 같이 분재표찰 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 (인)

-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수출실적 및 수출(생산)계획서(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1)
3. 분재수출 양묘장 등록증(국립식물검역소)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비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 수출 기계장비						
- 수출 운송차량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기계장비, 운송차량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 붙임 : 1. 견적서(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수출활성화사업 지원신청서

- 밤 생산이력관리비 -

1. 신청인 현황

업체(단체)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공급자(생산자)현황

공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공급물량 (kg)	공급액 (원)	비고
계						

※ 간밤 가공용 밤 생산이력서 첨부 간밤 수출업체에 한함

위와 같이 수출 밤 생산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 붙임 : 1. 간밤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B/L)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급자(생산자)별 생산이력서 원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시장개척단 파견, 유망품목 개발사업 -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전화 :	FAX :	
주소				
대표자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직위	성명

2. 지원 신청내역

참가자 성명	(국문)	(영문)
참가 신청지역	유럽(), 일본(), 미국(), 기타()	
참가품목	(국문)	(영문)
	(한문)	(독문)
참가 희망시기	2008. . . ~ . . .	
통역 필요여부	필요(), 불필요()	

위와 같이 임산물 시장개척단(유망품목 개발사업자) 참가(선정)를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수출증빙서류 포함) 1부(붙임 1)
2.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붙임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m³,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07								
2008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m³,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 현황

(단위 : 톤·m³, 천\$)

품목 (HS번호)	신용장 내용					수출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별지 제14호 서식】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신청서

- 박람회(종합/개별) 참가 -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박 랑 회 명		참 가 품 목	
신 청 부 스(m ²)		기타 지원 신청	

위와 같이 박람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성과 보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카탈로그 국·영문 및 해당국 언어 각2부

4. 친환경품질인증(iso, HACCP, GMP, GAP 등)기업의 경우 지정서 및 사후관리 증빙서 사본 1부

5. 현지어 포장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라벨, 포장샘플 등) 1부

6.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외국환은행장 또는 무역협회 발행) 1부.

농수산물유통공사장 귀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소득과	과장 이종건 사무관 이상린	042-481-4200 042-481-4201

I. 사업개요

1. 목적

- 신고유가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농산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기후변화 협약 발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에 기여
-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바이오매스 자원 활용 촉진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산림바이오매스 시설지원
 -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 2017년까지 총 35천대 지원
 - 펠릿보일러 보급 : 2017년까지 총 30천대 지원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화목겸용보일러 보급	3,000대	-	740대	750대	2009.12	· 보급대수
· 펠릿보일러 보급	2,000대	-	-	24대	2009.12	· 보급대수

※ 펠릿제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공모에 의거 지자체가 선정(2개소)되어 지침에서 제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1,100	1,229	13,167	13,167
보 조	-	555	615	3,950	3,950
용 자	-	-	-	-	-
지방비	-	222	492	5,267	5,267
자부담	-	333	122	3,950	3,950
○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	1,100	1,125	4,500	4,500
- 보 조	-	555	563	1,350	1,350
- 용 자	-	-	-	-	-
- 지방비	-	222	450	1,800	1,800
- 자부담	-	333	112	1,350	1,350
○ 펠릿보일러 보급	-	-	104	8,667	8,667
- 보 조	-	-	52	2,600	2,6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42	3,467	3,467
- 자부담	-	-	10	2,600	2,600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불우이웃 또는 농가,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보일러 용량이 가정용으로 화훼시설단지 등 대용량 사용시 지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개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3. 지원대상

- 기 설치된 유류보일러를 화목겸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신규로 농가주택에 설치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화목겸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구입비로만 사용
 - 보일러 기종선정은 농가 임의로 선택
 - 지원되는 보조금 외 추가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본사업의 지원되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원
 - 지원규모 : 농가별로 1대
 - 지원비율 : 국고 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 지원비율 변경 : ('08)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09)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에서는 사업 기간내 보일러 설치 완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화목겸용보일러 : 1대당 총사업비 1,500천원(국비 450, 지방비 600, 자부담 450)
 - 펠릿보일러 : 1대당 총사업비 4,333천원(국비 1,300, 지방비 1,733, 자부담 1,3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청에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 자 체

- 대상자 선정
 -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시 이장, 부녀회장, 임업후계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시 가급적 부락단위 등 지원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및 홍보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 일반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임(농)업인
 - 산촌개발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 ※ 보일러에 소요되는 연료(화목, 펠릿)는 농가별로 자체구입·활용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농·산촌거주 여부
 - 자부담 능력 및 연료수집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계획 수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자율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권자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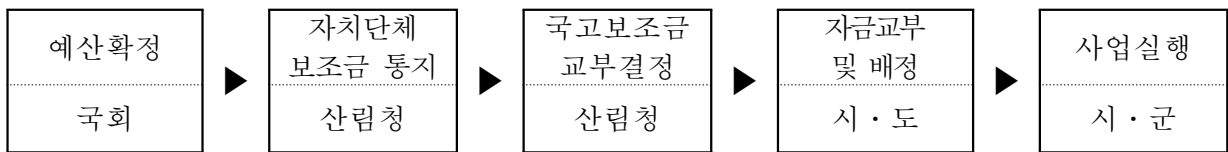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 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을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 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분기 1회 지도 방문 및 감독

산 립 청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 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6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여부 및 적정 자금집행 여부 등

6. 성과측정단계

- 보일러 설치 실적 확인
 - 사업담당자가 대상 농가를 방문한 후 보일러 설치 상태 확인
- 사업효과 측정
 - 가능한 11월 중에 실시한 후 미진한 부문은 보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인근농가 등에 홍보
 - 정부지원 물량이 한정되어 다수농가 혜택이 어렵기에 자체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유도(유류수입에 따른 외화절감 및 농산촌 주민 난방비 절감)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 제출(2009.3.30일까지)
- 산림청 사업담당자는 201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09.6.30일)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펠릿제조시설 지원사업의 산림청에서 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임을 안내
 - 공모예정일 : 2009. 8~9월(2010년 예산편성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모접수방법(예정) : 산림청 공모공고 →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군에 제출 → 시·군에서 사업계획 검토 후 시·도에 제출 → 시·도에서 사업계획성 검토 후 산림청 제출 → 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소식의 숲 → 공고)

67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 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목재소득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목재소득과	과장 이종건 사무관 정병걸	042-481-4200 042-481-4204
소속기관/단체	8개도 산림관련부서	목재수급사업담당	

I. 사업개요

1. 목적

- 벌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벌채(주벌)시 목재운송 장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간이운재로 시설지원으로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산목재 생산을 촉진
-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의 벌채 활성화로 조림지 확보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른 임지의 영급구조개선 촉진
- 벌채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소로 산주들의 벌채증가와 사유림경영 활성화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목재의 이용증진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제5차 산림기본계획기간(2008~2017)까지 국산목재 자급율을 15%로 확대 추진
- ('08년 전망) 2,770천m³(10.0%) → ('17년) 4,382m³(15.0%)

성과지표	2009 목표 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국산목재 자급율(%)	10.3	9.2	9.8	10.0	익년도 3월	$\frac{\text{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text{중 국내재수급량}} \times 100$ 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	-	3,000	3,000	6,000
보 조	-	-	2,100	1,500	3,000
용 자	-	-	-	-	-
지방비	-	-	600	600	1,200
자부담	-	-	300	900	1,800
○ 세부사업명	-	-	3,000	3,000	6,000
- 보 조	-	-	2,100	1,500	3,0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600	600	1,200
- 자부담	-	-	300	900	1,800

※ '08 신규사업으로 보조율 변경 : ('08) 70% : 20% : 10% → ('09) 50% : 20% : 3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별기령에 도달한 주별임지 중 영급이 높은 순으로 산주에게 우선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시·군에 소재한 산림의 소유자 또는 벌채를 할 수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

3. 지원대상

- 운재로 시설을 원하는 산림소유자에게 장비 대여 및 운반비 지원(450천원/ha)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시 제재조치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자금의 재원 : 농특회계
 - 수행주체 : 지자체 보조,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비용 부담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별채운재로 시설 사업관련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작성하여 시·도에 시달

지자체(시·도)

- 시·도 또는 산림청에서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된 예산을 취합하고, 입지여건,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림청에 신청

지자체(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

산 주

- 별기령에 도달한 입목의 별채 대상지의 산주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시·도)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 제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별기령에 도달한 임지의 산주가 신청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예산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립 청

- 사업주관 시·도에 별채운재로 시설 사업 세부지침 통보 및 사업시행 세부 계획을 수립·통지
- 사업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보고토록 조치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목재소득과(042-481-4204~5)

지자체(시·도)

- 사업완료시 국고보조금 정산실적 산림청에 보고
- 세부사업추진계획과 자금배정금액 범위안에서 사업을 시행·추진
- 사업담당부서
 - 시·도 산림(녹지) 관련부서

지자체(시·군·구)

- 별채운재로 시설 사업은 해당 시·군에 산림의 소유자 또는 별채를 할 수 있는 지상입목 소유자가 사업 추진
- 사업담당부서
 - 시·군·구 산림(녹지) 관련부서

산 주

-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자부담을 부담하여 사업추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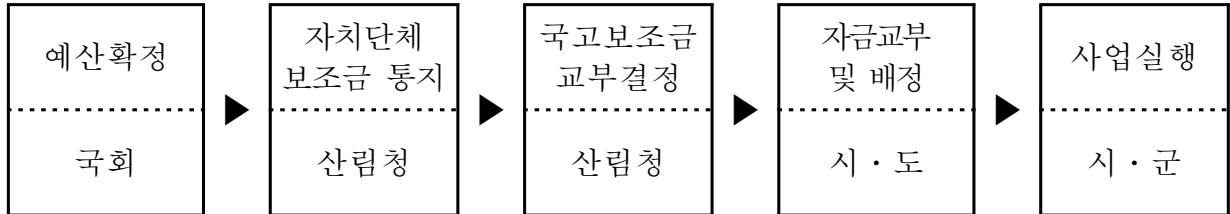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사업예산이 확정되고 자치단체별 보조금예산이 확정·통지 되면 해당사업 주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자금 배정

지 자 체

- 시·도는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해당 사업주관 시·군에 자금을 교부·배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산림청에 보고
 -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조치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산 립 청

- 산림청은 정기적인 시설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차단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규모,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 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
 - 점검대상 : 사업주관 시·도(시·군)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산림청(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 해당없음

6. 성과측정단계

<성과 목표 및 지표 측정>

- 별채운재로 시설사업은 국산재 자급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목표치 증가율을 지표로 설정

$$\text{국산목재 자급율(\%)} : \frac{\text{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중 국내재수급량}}{\text{국내 총목재(국내재+외재수급량)}} \times 100$$

- 매년 자급율 공표 : 임업통계연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원칙

- ‘산업용재 공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국산재 자급율 향상

나. 평가절차

- 평가주관기관 : 산림청(목재이용과)
- 평가기간 : 매년 11월 중
- 평가대상 : 8개도(경기~경남)

※ 2007년도 최초로 평가를 실시, 앞으로 타 시·도, 지방산림청으로 확대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은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시달
- 해당 시·도는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시·군에 시달
- 시·도는 자체평가서를 작성 산림청에 제출(10말까지)

※ 금년부터 행안부에서 평가관리를 통합·실시 계획이므로 별도 계획추진
라. 평가 사후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부여(상금 및 표창 실시)

《환 류》

- 우수·모범사례는 전국으로 전파하여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시·군)은 2010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 검토하여 예산부처에 제출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등의 사업부서

- 2009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나. 신청절차(농특)

- 별채운재로 시설 사업

예 산 신 청

- 지자체별 지원대상자 신청액을 감안 신청
- 부처(시장·군수 → 시·도지사 → 산림청장) 에 신청

예 산 안 검 토

- 산림청 : 사업계획 및 예산 신청액을 지자체별 안배 검토
- 기획재정부 : 중기재정계획 및 예산을 감안 검토

예 산 편 성

- 부처 예산요구와 검토 등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편성

예 산 집 행

- 예산집행은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후 정산

사 후 평 가

- 지자체의 사업추진 성과 평가

다. 지원대상지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전문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지를 요구하고,
- 산림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지원대상지를 확정

[별지 제1호 서식]

별채운재로 시설사업 추진상황보고

(○○○○년 ○반기말 현재)

총괄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사업진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획	실적

※ 굴삭기 대여, 장비운반으로 분리

세부 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포함)

사업추진상 문제점

대책 및 향후계획

68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 립 청	산림환경보호과	과 장 류광수 사무관 강변석	042-481-4240 042-481-8852
소속기관/단체			

I. 사업개요

1. 목 적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자원화·이용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립수목원 식물자원 평균 누적 확보량’은 국제적 수준 등을 반영하여 예년 평균 확보량에 대한 2% 상향 목표 설정
 - 성과목표 : '07) 3,456종 → '08) 3,500종 → '09) 3,550종 → '15) 5,000종
- 사립수목원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사립수목원의 식물 자원 평균 누적확보량(주지표)	3,550종	3,217	3,456	3,500	2009.12	○ 식물자원 총 누적확보량/사립수목원 개수
▪ 이용자만족도(부지표)	90점	-	85.3	90	2009.12	○ Likert 5점 척도기준으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5,200	900	1,100	1,000	1,000
보 조	2,600	450	550	500	500
용 자	-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2,600	450	550	500	500
○ 사립수목원 지원	5,200	900	700	600	600
- 보 조	2,600	450	350	300	3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600	450	350	300	300
○ 특성사업 지원	-	-	400	400	400
- 보 조	-	-	200	200	200
- 용 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200	200	200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으로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대상지(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3. 지원대상

- 사립수목원 지원
 - 수목원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식물·장비 구입비 등
- 특성사업 지원
 - 교육·전시·체험·탐방시설 등 운영활성화 시설 조성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목원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 등 자본적 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 등 경상적 지출 경비는 집행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사립수목원 지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사립수목원의 운영·관리로 연중 식물유전자원 구입비 등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함(국고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 특성사업 지원
 -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특성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전시·체험·탐방시설 조성비 등이 연중 2억원 이상이어야 함(국고 1억원, 자부담 1억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립수목원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1억원(국고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 보조기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 특성사업 지원
 - 사업규모 : 개소당 2억원(국고 1억원, 자부담 1억원)
 - 보조기간 :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 립 청

- 사립수목원 지원
 -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1월)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 지원
 - 사립수목원 지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월)
- 특성사업 지원
 - 특성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립 청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2월)

3.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월)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요청(3월)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산 립 청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지도·점검 실시(연 2회이상)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의 유지·관리와 식물유전자원을 체계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조직 확보

《제재》

산 립 청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 조치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사립수목원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자는 교부조건 등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의 금지)

5. 성과측정단계

- 사립수목원 식물유전자원 보유현황 파악(12월)
 - 보유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사립수목원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12월)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측정·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조정 및 예산편성에 환류
 - 평가원칙 : 산림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실시
 - 평가주체
 - 정책·현장평가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정성과부문 소위원회 위원(5명)
 - 만족도 조사 : 외부 전문기관용역
 -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최종 평가
 - 평가요소 : 정책추진역량 평가, 현장 추진사항 평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환 류》

- 평가결과 활용
 - 향후 Top-down 예산편성시 구조조정 자료로 활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낭비를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 도모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립수목원(특성사업) 지원 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2010. 1월~2월)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립수목원 지원
 - 사립수목원 지원 보조사업 추진계획 통보(2010. 1월)

69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과장 류광수 서기관 황의식	042-481-4240 042-481-4219
백두대간관할 6개도 (32개 시·군)	산림 관련부서	-	-

I. 사업개요

1. 목 적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부지원 추진
- 밤·표고·송이 등 주요 단기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산나물, 산약초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 및 지원으로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증대 기회로 활용
-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 생태축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산림보호 주체로 육성

2. 근거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주민을 백두대간보호지역(263천ha)에 대한 산림보호 참여 주체로 육성
 - 백두대간보호지역 관할 6개도, 32개 시·군(108개 읍·면·동)에 대해 주민 소득지원사업 추진
 -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품질 향상 도모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주민소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점수)	82점	-	78점	80점	2008.12	산림청 주관(지자체 협조) 으로 주민만족도 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주민소득지원사업	18,685	10,697	9,600	8,640	32,091
보 조	13,080	7,488	6,720	6,048	22,463
지방비	5,605	3,209	2,880	2,592	9,628

II.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의 마을공동체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
-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신청자는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가.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도 생산기반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지원
- ※ 지원제외 대상
 -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 트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
 - 묘목비,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 부지구입비

나. 세부 사업내용

(1)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

(가) 표고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표고재배 시설비 : 표고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건축물, 관수시설, 냉·난방 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등

○ 지원단가

- 표고재배 시설비

- 비닐하우스 시설 : m²당 20,300원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
- 철골온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기계·장비 :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함
- 배지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종균배양시설 :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함
- ※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는 지원할 수 없음

(나) 밤 생산기반 지원

1) 밤나무 작업로·방제장비

○ 사업내용

- 밤작업로 시설 :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작업로 시설)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기존시설 작업로의 보수에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함. 단,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밤작업로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장비임차, 투입계획 등에 의한 산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 방제장비 지원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 지원(차량은 제외)

○ 지원단가

- 밤작업로 시설 : km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 방제장비 지원 : 대당 12,000천원 이내

2)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 사업내용 : 토양개량제(입상소석회, 목탄, 목초액, 유기질비료 등)를 사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 밤 생산기반 조성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282천원
 - ※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사업내용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정지전정, 간벌 등의 사업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총사업비 1,292천원(간벌,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4) 친환경 밤생산 시설

- 사업내용 : 친환경 밤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ha당 10백만원

(다) 대추·호도·뽕은감 생산기반 지원

- 사업내용 : 건조기, 관수시설, 방제장비 등 지원

(2)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낙엽층 및 활엽관목제거, 간벌, 관수시설 등),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비, 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산과일(산머루 등)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지원단가(총사업비) :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 가능함
 -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 기반시설 : m²당 유리온실 242천원 이내, 단, 아크릴 시설은 303천원, 하우스 시설은 76천원 이내
- 송이산가꾸기 기반시설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행요령」에 의한 실소요액
 - ※ 생산기반(60%), 관수시설(40%)의 지원비율은 임내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실행 가능함

- 산과실(산머루 등)·산약초·산채류·오갈피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하여 실행
 - ※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작업로 시설 : km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미만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3)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지원

- 사업내용 : 단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장 및 건조시설비 지원
- 지원단가
 - 임산물 저장시설 : 개소당 300백만원(250m²)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 건조시설 : 개소당 122.5백만원 기준
- 지원내용 :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시설, 장비 등 일반 저장·건조시설 및 수액정제·저온저장시설
 - ※ 부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경우 건축비 대신 컨테이너 구입 등으로 대체 지원 가능

(4) 기타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 지원

- 위 신청 대상사업 외에 관수시설, 임산물 가공 등 농림업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단지 기반시설비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비, 저온저장고 시설비
- 산채·표고재배 시설비
- 임산물 직판장·집하장, 창고 등 시설비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등)
 - ※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비율 : 70%, 지방비 30%

- 3천만원 이상 지원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함
- 대추·호도·뽕은감 생산기반지원중 묘목비 지원과 표고재배(원목, 톱밥)단지사업 지원 사업은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2009년도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 2009년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한도액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 시행
 - 산림청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지자체(시·도)

- 해당 시·군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안내 및 시달, 사업신청요령 등의 공고 및 안내
 -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자체 공고문 형식으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등)
 - 공고내용(공문서)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명시

- 시·군 등 읍·면·동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시 주무부서 송부)
- 신청기한 :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리장→ 읍면동장 →시장, 군수(농림수산심의회 심의)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립 청

- 산림청은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6. 30일까지 예산요구(국회에서 예산확정)
- 산림청 → 기획재정부(회계년도개시 60일전) → 국회(회계년도개시 30일전)

지 자 체(시·도)

- 시군 예산신청 내용에 대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사(도 농림수산심의회)
- 예산요구내용 및 지원 우선순위 공개(도 총괄부서)
- 익년도 예산요구(전년도 3월 31일)

○ 선정절차(시·군)

-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사업부서, 산림조합 등)
- 신청서류 심사 및 우선순위안 작성(사업부서)
-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우선순위 등의 공개심의 선정(시·군 농정심의회)
- ※ 사업대상자 선정시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평가

○ 사업 우선순위

-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시·도)

- 농림사업 세부계획 수립 제출(전년도 1월 20일까지)
 - 작성주체 : 사업예정자(작목반, 개인 등)
 - 제출처 : 사업예정자 → 읍면동장 → 시장·군수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백두대간 관할 도에 농림사업 예산안 통지(전년도 10월 15일)
-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정부예산 확정 이후)

지자체(시·도)

- 주민소득지원사업 예산 통지(도)
 - 예산안 통지 : 전년도 11월 15일까지(도 → 시·군)
 - 예산배분 계획 확정통지 : 전년도 12월 31일까지(도 → 시·군)
-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지원 확정(시·군)
 - 사업지원대상자 조정 : 전년도 12월 15일까지
 - 사업예정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군 인터넷과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이용하여 공지
 - 자금지급 등
 - 사업비의 일부분을 자부담으로 집행시 자부담금 우선집행
 - 사업자금의 집행확인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객관적 사업실적 증거로 확인
 - 시·군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 실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자 선정 및 자금관리 관리 주체(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관리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타 사항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사업장 관리

-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관리는 지침에 정한 이외의 사항은 시장·군수가 관리
-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 시설 등에는 농림수산사업 안내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 시·군의 사업부서는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적정관리하고 있는지 분기 1회 확인·점검 실시
 - ※ 마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설물은 마을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 도에서는 주민소득사업에 대하여 종합점검(연간 2회이상) 및 자체평가 실시

산 립 청

- 산림청은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추진 상황 등을 현장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방지

《제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해당 시·군 사업담당자는 사업계획 및 일정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비 보조금 취소 및 반환 조치하고 도에 보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때
 -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보조금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하지 않은 때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표고·대추·호도 등 재배시설	2009	2013년	5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준용
대추검사장비	"	"	"	"
밤방제장비 밤생산장비	"	"	"	"
조경수관정시설	"	"	"	"
임산물 저장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	20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 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건축물은 40년간 사후관리

6. 성과측정단계

- 산림청 주관(지자체 협조)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추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주민소득지원사업 평가》

- 2008년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10년 예산 지원시 우수 도에게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예정
 - 백두대간 관할 전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실태조사 실시

《환 류》

- 산림청 : 주민소득지원사업 도별 평가결과 10% 반영하여 도별 사업비 차등 지원
- 도 : 주민소득지원사업 자체평가결과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차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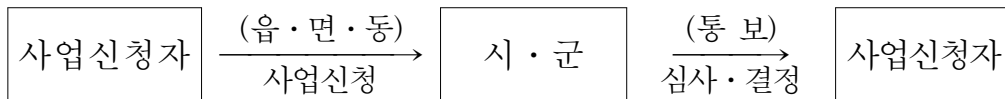
8.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 사업실시규정에 따른다.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동)
- 신청서 제출일자 : 2009. 1. 20일까지
- 신청자격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지원 대상자 선정
 - 자금지원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 대상자 선정시 고려할 사항
 -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사업경영 및 종사여부, 사업 실적 등
- 사업 우선순위
 - ①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단위로 실시하는 공동 사업
 - ②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된 마을(지역)의 작목반에서 특산품 생산을 위한 사업
 - ③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④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에 따른 자율사업

※ 반드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하되, 사업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우선 지원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임업 · 산촌분야】

Ⅲ. 산림자원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육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산림청	자원육성과	과장 전범권 사무관 권영록 사무관 이용권	042-481-4180 042-481-4185 042-481-4218

I. 사업개요

1. 목적

- 산불피해지, 병해충피해지, 벌채지 등에 경제·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이 발휘되는 나무심기 추진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으로 소득증대에 기여
- 숲가꾸기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목재생산, 소득증대,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환경적 가치 증진

2.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64조(자금지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경제수 등 조림 21천ha를 실시하고, 조림목의 활착률을 평균 92% 이상으로 제고하여 내실 있는 조림사업 실행
- 숲가꾸기, 수원함양림 조성·육성으로 산림의 물 저장능력 제고
 - 물 저장능력을 현재보다 32%이상 높이고 237억톤 이상의 맑은 물 공급
- 「숲가꾸기 5개년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2009~2013) : 125만ha
- 2009년 숲가꾸기 235천ha 추진

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 조림면적(ha) 및 활착률(%)	21천ha (92%)	19 (92)	20 (92)	21 (92)	2010.1.	• 조림사업 실적보고 • 활착률 조사 및 결과 보고
▪ 숲가꾸기 누적면적 비율(%)	28.2	18.7	22.3	24.5	2009.12.	• (숲가꾸기 누적면적(ha) /총산림면적(ha))×100 ※ '98이후 숲가꾸기 실 행면적 누적비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981,552	316,172	334,633	411,801	657,204
- 보조	548,859	165,846	177,109	214,931	355,694
- 지방비	357,864	122,998	127,959	160,472	249,548
- 자부담	74,829	27,328	29,565	36,398	51,962
○ 조림	812,138	107,660	96,015	102,909	308,727
- 보조	464,152	61,590	57,800	60,485	181,455
- 지방비	289,988	39,436	32,512	36,719	110,157
- 자부담	57,998	6,634	5,703	5,705	17,115
○ 숲가꾸기	169,414	208,512	238,618	308,892	348,477
- 보조	84,707	104,256	119,309	154,446	174,239
- 지방비	67,876	83,562	95,447	123,753	139,391
- 자부담	16,831	20,694	23,862	30,693	34,847

II. 200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립가, 산림경영능력이 있는 자

○ 사업 실행

- 사업실행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산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 대행
- 산림사업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조합에게 대행실행. 다만,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때에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2. 지원대상 및 요건

○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책정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국고보조 제외임지 :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림	○ 경제수조림(생태조림, 속성경제수조림 등),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 금강소나무육성사업,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산림특화시범사업 등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축아베기, 가지치기, 선목),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비, 부대비용 등
- 산림경영모델숲 등 산림특화사업 추진 사업비

○ 숲가꾸기 사업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조림 및 숲가꾸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금강소나무림 육성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산림특화시범사업 : 사업비의 100% (국비 20~70%)
 - 정책숲가꾸기 : 사업비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공공산림가꾸기 : 사업비의 100%(국비 60%, 지방비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조 립>

- 조림사업의 원가계산은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의 조림품셈적용기준에 따름

※ 조림설계·감리시행지침 : 산림자원팀-431(2007.1.24)호 및 산림자원팀-333(2008.2.4)호

- 조림예정지정리작업

가. 소요인력 (1ha당)

구 분	조림예정지 상태	소요인력(인)	인력구분
① 모든 벌채산물 임내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경지와 관목지 정리 ● 설해, 형질불량 소경재림 ● 산불피해지 	6 10 10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② 조재 산물만 임내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두부 직경 10cm 이하 ● 초두부 직경 10cm 이상 ● 임업기계장비 이용 정리 	10 12 9	
③ 전목집재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층식생 정리, 기계집재 	9	

나. 소요재료

기계명 (주재료)	주연료 (ℓ/일대)	잡품 (주연료비의 %)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 체인톱 (휘발유)	5.6	95%	50%	○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주》 적용기준

- o 주연료(잡품) 1인당 적용기준 : 1일1대당(2인1조) 소요량 5.6ℓ의 50% 적용
- o 주연료(잡품)의 적용은 기준 인력품과 현장소요 인력품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용
- o 잡품은 엔진유, 기어유, 그리스 등 기타소모품에 해당하며 주연료비에 대하여 금액비율로 적용
- o 사례) 6.0명/ha 소요 : (휘발유 : 5.6ℓ + 잡품 : 주연료비 95%)/인 × 6.0명/ha × 50%

다. 기계손료

규격	손료계수 (1일 1대당)	소요인력당 적용기준	
		적용 비율	적용내역
45CC(배기량기준)	0.0084	50%	o 1대당 2인1조 작업으로 소요인력별 50% 적용 o 손료계수×체인톱가격×인원×50%

《주》 적용기준

- o 손료는 1일 1인당 적용기준임 : 1일1대당 (2인1조) 손료계수 0.0084의 50% 적용
- o 손료는 감가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정함
- o 예) ha당 6명 인력소요 경우 : 0.0084 × 체인톱가격 × 6명/ha × 50%

라. 할인 · 할증요소

구 분	내 용	할인 · 증률(%)
ha당 벌채본수 (벌근직경 18cm 이상의 본수)	과밀(1,000본 이상)	1.30
	밀(800~1,000본)	1.15
	직정(600~800본)	1.00
	소(400~600본)	0.85
	과소(400본 이하)	0.70
수확벌채지 임상	침엽수림	1.10
	활엽수림	0.90
	혼 효 립	1.00
작업장의 산지경사	급경사(65% 이상)	1.10
	중경사(35~65%)	1.00
	완경사(35% 이하)	0.90
작업장까지의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분~1시간	1.05
	30분 이내	1.00
개별 작업장의 크기	개별지 크기가 700㎡(또는 벌채폭 30m) 이하	1.10
	개별지 크기가 3,000㎡(또는 벌채폭 60m) 이하	1.05
	개별지 크기가 3,000㎡ 이상	1.00
산불피해지	산불피해목 벌채 및 정리	1.25

- 식재작업

가. 1,000본당 소요인력

식재 방법	묘목의 규격	소요인력 (인/1,000본)	인력구분
식혈식재	소 묘	4.0	보통인부
각식재	소 묘	3.0	
식재봉식재	용기묘	2.0	
기계식재	대 묘	2.0	
치수이식	천연치수	5.0	
대묘식재	대 묘	5.0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토양상태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1.15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1.10
	식혈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산지경사	급경사(65% 이상)	1.10
	보통경사(35~65%)	1.00
	완경사(35% 이하)	0.9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분~1시간	1.05
	30분 이내	1.00

- 파종조립

가. 소요인력 (1ha당)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작업	인공식재조립의 예정지정리 품 적용		
파종상 만들기	40cm×40cm×5,000개	6인/ha	보통인부
	80cm×80cm×5,000개	11인/ha	
파종상에 점파	5,000판×3립	7.2인/ha	
파종상 없이	조 파	9.2인/ha	
	점 파	7.2인/ha	

나. 할인·할증요소

구분	내 용	할인·증률(%)
토양상태	돌함량이 30% 이상이고, 나무뿌리가 밀 하게 분포할 경우	1.15
	돌함량이 10~30%이고, 나무뿌리가 보통정도로 분포	1.10
	식철시 장애물이 거의 없음	1.00
산지경사	급경사(65% 이상)	1.10
	보통경사(35~65%)	1.00
	완경사(35% 이하)	0.90
작업장까지 이동거리	1시간 이상	1.10
	30분~1시간	1.05
	30분 이내	1.00

- 생태조립

가. 소요인력 (1ha당)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작업	보완조립에 필요한 정리작업	3.0인/ha	보통인부
맹아본수조절		5.5인/ha	
보완조립		3.0인/ha	

※ 생태보완조립은 벌채지의 조립여부를 결정할 때, 토양조건은 양호하나 움푹발생이 ha당 1,200 그루터기 이하인 임지에 적용한다. 빈 공간에 ha당 500본을 기준으로 인공식재 한다.

- 천연하종갱신

가. 소요인력 (1ha당)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작업	인공식재조립의 예정지정리 품 적용		
토층 긁기작업	폭 30~4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15~20%)	8인/ha	보통인부
	폭 80cm × 열간거리 2m (전면적의 40%)	15인/ha	보통인부

- 움푹갱신

가. 소요인력 (1ha당)

구 분	내 용	소요인력	인력구분
예정지정리작업	인공식재조립의 예정지정리 품 적용		특별인부 50%
맹아근주 정리작업	ha당 1,000본 기준	5.5인/ha	보통인부 50%

<숲가꾸기>

○ 숲가꾸기 사업 원가 작성 기준에 따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 훈령 제907호 : 2007.4.17)

○ 직접노무비

사업종별	기준품셈 (ha당)	적용노임단가	품셈 적용범위
풀베기	6.0명	보통인부	○ 보육대상목의 1/2이상 식별가능
덩굴제거	7.0명	보통인부	○ 지상부제거 및 약제처리
	(뿌리굴취시 10.5명)		○ 지상부제거 및 지하부 굴취
어린나무 가꾸기	10.0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벌 채 : 6.0명(평균경급 6cm)
		보통인부	○ 가지치기 : 4.0명 - 0.4명/100본(잣나무, 0~1m), 가지치기본수 1,000본
숙아베기	6.6명	특별인부 50% 보통인부 50%	○ 벌목조제 : 6.6명 - 1.2명/100본(평균경급 14cm), 제거본수 550본
	(선목포함시 7.6명)	(보통인부)	○ 선목 : 1.0명 - 미래목선목 200~250본/ha 기준
가지치기	2.5명	보통인부	○ 1.0명/100본(잣나무, 2~4m), 제거본수 250본
산물수집 (인공림)	9.65명	보통인부	○ 생산재적 19.3m ³ /ha, 2.0m ³ /인(평균경급 10cm)
산물수집 (천연림)	7.55명	보통인부	○ 생산재적 15.1m ³ /ha, 2.0m ³ /인(평균경급 10cm)
선목(미래목)	1.0명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 1조/ha당, 미래목 200본 선목 - 1조 : 초급기술자, 보통인부 각 1명
	1.0명		
선목(제거목)	1.8명	초급기술자	○ 0.4명/100본당, 제거대상목 450본 선목

- 할인·할증요소

사업종별	비 고
풀베기	경사도(+,-10%), 활엽수·용기묘조림지(+10%)
덩굴제거	덩굴류피복밀도(+, -20%), 경사도(+,-10%)
어린나무가꾸기	임상(+,-10%), 경사도(+,-10%), 제거대상식생량(+,-10%)
숙아베기(간벌)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가지치기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산물수집(인공림, 천연림)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선목(미래목, 제거목)	선목시기(+,-10%), 경사도(+,-10%), 장애물 정도(+,-10%)

- 인자별 세부 할인·할증 적용기준

사 업 별	적용인자	+20%	+10%	기준공정	-10%	-20%	차등 범위	
1. 풀 베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기 타	-	활엽수, 용기묘 조림지	-	-	-	+10%	
2. 덩굴제거	덩굴류 피복밀도	과밀 (80%초과 피복)	밀 (61%~80%피복)	보통 (41%~60%피복)	소 (21~40% 피복)	과소 (20%이하 피복)	+, -2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3. 어린나무 가꾸기	임상	-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	-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제거대상 식 생 량	-	밀 (1,200본이상)	중 (800~1,200본)	소 (800본이하)	-	+, -10%	
3. 숲아베기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 -10%)	
	※ () : 선목을 포함하여 시행시 적용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 -10%	
4. 가지치기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 -10%	
8. 산 물 수 집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 -10%	
9. 선 목 사 업	선목시기		5~9월	12~2월	10~1월, 3월~4월	-	+, -10%	
	경 사 도	-	30° 초과	15°~30°	15°미만	-	+, -10%	
	장애물의 정도	-	가슴높이 이상 초본·관목	가슴높이 미만 초본·관목	무릎높이 이하 초본·관목	-	+, -1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산림청

- 국가재정법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 요구(전년도 6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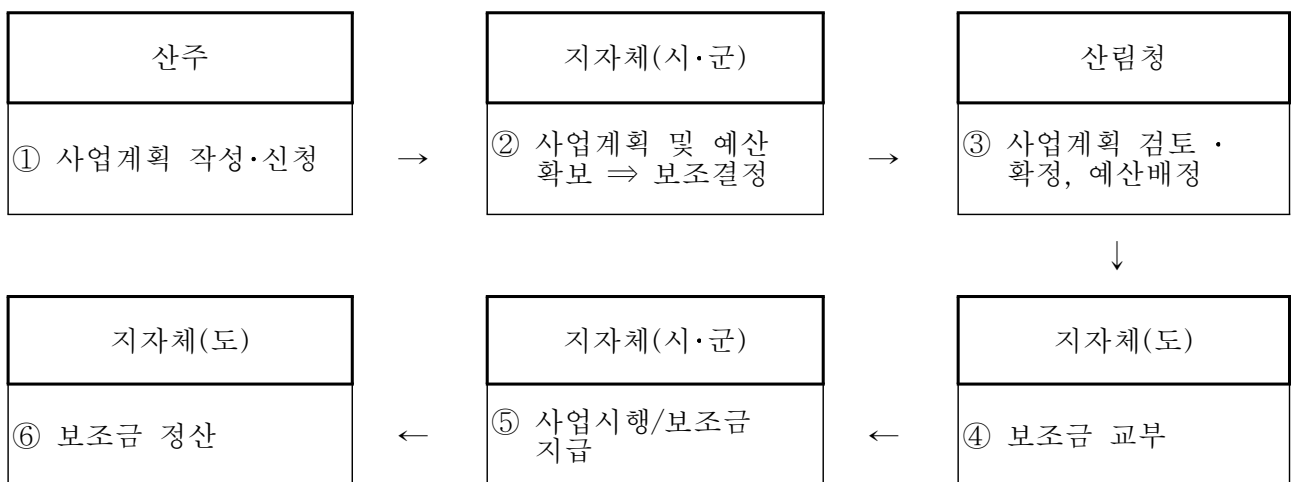
시·도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중앙부처(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경영모델숲은 산림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신청

시·군·구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산림소유자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를 제출 받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3월말)
 - 국고보조사업 제외임지
 - 국유림, 국유림중 대부(사용허가), 분수림
 - 민유림 중 타용도로 전용할 산림 등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흐름도>



2. 사업자 선정단계

산 립 청

- 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보조금 가내시)
- 산림경영모델 숲 등 산림특화사업 해당 사업 선정(전년도 11월)

시 · 도

- 기초지자체의 사업 소요량 수용 여부 결정
- 산림경영모델 숲 등 특화사업 해당 시·군·구 및 사업자 선정(전년도 11월)

시 · 군 · 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가내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 선정(수혜자) 및 필요한 조치(전년도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소유자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산 립 청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 시·도에 시달(1월)
 - 사업량 및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시달(1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 시·도별로 가내시(전년도 11월)
 -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준비토록 조치

시 · 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계획 시달(1월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안)을 시·군·구별로 가내시하여 시·군비 확보 및 사업 준비(전년도 12월)

시 · 군 · 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 ~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산림경영모델숲 등 특화사업은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

4. 자금배정단계

산 립 청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정하여 시·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확정 통지(1월말)
 - 사업별, 월별,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통보

시 · 도

- 산림청에서 보조금 확정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시·군·구별 보조금 확정 통지(2월)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시 · 군 · 구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계획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구(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5. 이행점검단계

산 립 청

- 봄철 및 가을철 나무심기 기간 동안 조림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조림사업의 적정성 및 문제점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조림사업지 일제 지도 점검 실시(5월)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실시

시 · 도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행 기간 중 시·군·구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
 -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예산 전입결정(도비) 및 자금배정 통지
 - 시·군·구 사업시행결과 취합하여 산림청으로 종합보고

시·군·구

-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출장·복명을 통한 준공검사 실시
 - 조림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지침에 따라 감리자를 선정하여 책임감리 실시
 - 사업실행 후 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유지

<사업추진 실적 보고>

- 조림실적보고 : 춘기조림 완료 및 익년도 1월(일반통계승인번호 13611)
- 조림·활착상황보고 : 8.31(일반통계승인번호 13612)
- 산림경영모델숲 등 실적보고 : 단위사업별로 추진상황 기록 및 보고
- 보조사업 실적보고 : 회계연도 종료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7조)

6. 성과측정단계

산 립 청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 지시(6~9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재정성과평가에 의한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12월)
- NGO에 의한 숲가꾸기 사업 대상 모니터링(3~12월)

시·도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시·군·구에 지시(6~9월)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숲가꾸기 자체평가 계획수립과 상·하반기 평가 보고

시·군·구

- 봄철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8월)
 - 당해연도 조림 전 개소에 대한 표준지 조사 실시(5% 이상)
 - 개소별, 수종별 활착율 조사 실시(생육본수/식재본수)
- 숲가꾸기 실시지역 수시 점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산 립 청

- 시·도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3~5월)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배부(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도 6월 이전)

시·도

- 시·군·구로부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익년도 2~4월)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실적 보고서 취합 보고(익년도 1월)
 - 사업비 정산 및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 조치(익년 5월 이전)

시·군·구

- 시·도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 작성 보고
 - 계획 대비 사업량 및 사업비 집행 상황 등
 - 사업부진 사유 등 각 사업별 평가 실시

IV. 201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0년도 사업수요조사

- 5차 산림기본계획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전년도 3월전까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국비보조 사업 신청·접수
- 산림경영모델숲은 사업지 조사 등 별도의 행정지시에 의거 수요조사
 - 신청대상 : 지방자치단체
 - 추진절차 : 지방자치단체(사업주체) → 시·도(타당성 검토) → 산림청

2.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0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산림경영모델숲 사업선정은 신청된 건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림사업평가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등 사업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붙임 1>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조림·숲가꾸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m ²)
	산림경영계획 편성내용	
기타 특이사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세부 사업명	계획 면적 (ha)	조림 수종	단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부담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단체 또는 회 사									

